

平

한반도 전쟁위기 저지와
일본평화헌법수호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협력방안

한반도 평화와 일본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시민평화회의

2018년 3월 13일(화)
09:30-18:00
서울시청 지하 2층 태평홀

주최 (한국)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주권자전국회의,
2017민주평화포럼
(일본) 九条の会,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
주관 사단법인 국민주권연구원
후원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和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시민평화운동의
역할과 국제협력방안

한반도 평화와 일본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시민평화회의

개회식 (오전 9시40분 - 11시)

사회- 김하범 (주권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환영사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인사

다카다 켄 (제3회 리영희상 수상, 총걸집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일본 - 고모리 요이치 (도쿄대 교수, 일본9조회 사무국장)

“9조회의 행보와 역할, 그리고 전망”

한국 - 이삼열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체”

제1세션 <한일시민운동의 현황> 11시-12시

주제발표

후쿠야마 신고 (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부대표)

“일본 시민운동의 전개 - 안보법제 반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촛불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점심 오후 12시-1시

제2세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방안> 오후1시 - 3시

사회: 오다가와 코우 (전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주제발표

가와사키 아키라 (핵폐기 국제캠페인 운영위원, 피스보트 공동대표)

“핵무기금지 조약의 의의와 비핵화 과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토론

한국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본 - 시미즈 마사히코 (민주법률가협회 상임이사)

도이 토미에 (탈원전을 목표로하는 여자들의 모임)

제3세션 <한일시민평화운동의 과제와 협력방안> 3시-6시

사회: 서우영 (국민주권연구원 사무처장)

주제발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 총연합회 의장)

“일본 평화운동의 현황과 한일연대”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한일평화연대의 중요성”

토론

한국: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길윤형 (한겨레21 편집국장)

일본: 우치다 마사토시 (일본 변호사연합회 헌법위원회 간사)

아리미즈 켄 (전후보상네트워크 간사 대표)

히시야마 나호코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활동가)

다카다 켄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 한일시민평화선언 채택

목차

‘9조회’의 행보와 역할, 그리고 전망 코모리 요우이치.....1	
「九条の会」の歩みと役割、そして展望 小森 陽一6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체 이삼열.....11	
朝鮮半島の平和と東北アジア共同体 イ・サムヨル.....19	
일본의 시민운동의 현상과 과제 후쿠야마 신고.....27	
日本の市民運動の現状と課題 福山 真劫.....34	
촛불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안진걸.....41	
キャンドル市民革命の意義と課題 安珍傑(アン・ジンゴル) 63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서보혁.....69	
朝鮮半島非核化と東北アジア平和体制 ソ・ボヒョク.....74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의 세계사적 의의와 과제 시미즈 마사히코.....79	
日本国憲法の平和主義の世界史的意義と課題 清水雅彦.....85	
일본 평화 운동의 현재와 한일 시민 연대의 과제 오다가와 요시카즈.....91	
日本平和運動の今と日韓市民の連帯の課題 小田川義和.....97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한일 평화연대의 중요성 박석진.....102	
韓国の平和運動の課題と韓日平和連帯の重要性 پاک・ソクチン	
일한/한일 시민평화선언.....113	
日韓/韓日市民の平和宣言.....126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시민 평화심포지엄 기조 연설

‘9조회’의 행보와 역할, 그리고 전망

‘9조회’ 사무국장 고모리 요이치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 시민 평화회의'를 주최하고 지금까지 힘든 준비를 해 온 '주권자전국회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과 병행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이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단번에 진행되어, 지난 3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다가오는 4월 말 판문점 남측 시설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축적해 온 시민운동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매우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남북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국 헌법9조 개악을 노리고 있는 아베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야말로’라는 개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개헌 세력이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기간에서 보면 개헌 발의는 2018년 중의 국회 또는 2019년 정기국회 시작이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자민당은 ‘헌법 개정’에 관한 논점 정리를 발표하고, 3월 25일 당대회에서 자민당안을 결정해, 헌법심사회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베 개헌을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2018년은 중대 국면입니다. 시민운동과 입헌 야당과의 공동 투쟁을 벌여, 전례 없는 시민 공동의 운동을 펼쳐 개헌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9조 개헌 NO! 전국시민행동’의 호소에 ‘3000 만명 서명’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시민행동’ ‘9조회’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단체로 참여할 것을 2017년 여름에 결정하고 전국에서 일제히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민행동’은 2015년 전쟁법인 안보 법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9조를 파괴하지마!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가 기반이 된 운동체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저는 학자로서 전문 분야는 일본 근대 문학인데, 이렇게 비문학인 조직 이름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름 중간에 ‘가운데 점’과 강조 부호가 들어간 것도 일본어로는 이례적이지만, 이 비문학적 명칭 속에 2014년 말에 생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의 공투 조직의 특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다른 단체의 명칭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형태의 일본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인위원회’로 일교조와 자치노 등 ‘연합좌파’와 지식인, 문화인이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그 대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하는 후쿠야마 신고 씨입니다. 또 하나는 정당으로 일본 공산당이 들어있는 ‘헌법공동센터’로 그 대표가 세 번째 세션에서 발언하실 전로런 의장의 오다가와 요시카즈 씨입니다. 1989년에 1960년 안보 투쟁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을 결합해서 큰 운동을 일으킨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연합으로 흡수된 이후 분열되어 온 일본의 노동조합 운동의 두 조류가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이 수도권에서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시민당과 공산당 당수가 참여해서 진행한 헌법 집회를 담당해온 시민운동의 여러 그룹에서 만든 '해석으로 헌법 9 조를 파괴하자! 실행위원회'로, 그 대표가 방금 인사를 한 '허용하자! 헌법개약·시민연락 회'의 다카다 켄씨입니다.

이 세 조직이 2015년 안보법제 반대의 큰 공동행동을 조직했지만, 9월 19일에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와 함께 행동한 '엄마 모임', '학자 모임' 등이 '정치 단체'로 참석해 '시민연합'이 결성되어 직접 선거에서 시민과 관련된 운동을 조직, 2017년의 총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거쳐, 아베 정권이 '9조 개헌'을 어떻게 해서든 추진하려는 가운데, 이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와 함께 '아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행동'에 '9조회'가 조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행동'의 운동이 '9조회'를 2004년 6월 10일에 결성했을 때, 호소한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9조회'를 호소한 것은 극작가이자 소설가이기도 한 이노우에 히사시 씨, 철학자이자 일본 문화 연구자의 우메하라 다케시 씨, 노벨 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씨,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을 조직한 소설가 오다 마코토 씨, 헌법 학자 오키다이라 야스히로 씨, 전후 일본의 사상계를 견인한 평론가 가토 슈이치 씨, 논픽션 작가 사와치 히사에 씨, 오다 마코토 씨와 함께 베헤렌(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운동을 조직한 철학자 츠루미 슌스케 씨, 그리고 이 시기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할머니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운동의 선두에 선 사회운동가로 미키 다케오 총리의 배우자였던 미키 무츠미 씨 9인입니다.

'9조회의 호소'는 9조를 가진 일본국 헌법을 다시 주권자로서 선택하여 매일 운동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홉 명의 발기인은 세 명씩 분담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강연하고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해 갔습니다. 9인과 어떤 식으로든 함께 일이나 활동을 해 드린 적이 있어, 제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9조회'가 발족한 2004년 6월 단계에서는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국의 부시 정권에 추종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아래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전쟁터인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동시 테러'의 주모자를 오사마 빈 라덴으로 단정한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붕괴했지만, 오사마 빈 라덴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1월의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영국의 블레어 총리를 끌어들여 유엔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라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4월 9일에 바그다드를 미군이 함락시킨 후 점령 통치에 해당하는 미군과 영국군 등의 후방 지원을 위해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는 법률이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조치법'입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국제 공헌'이라고 칭해 부시 행정부의 불법 전쟁에 협력하기 위해 2003년 6월 안전보장회의법과 자위대법을 개약해 '무력공격사태법'을 제정하고, 나아가 2004년 6월 14일에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7법을 성립시켜 나가는 상황 속에서 '9조회'는 출범했습니다.

개헌 정당이 자유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이 된 1993년 이후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 신문」은 전사적으로 개헌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매년 '개헌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헌법을 바꾸는 것이 좋다"가 65%

에 비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불과 22%였습니다. ‘9조회’ 운동은 개헌 여론이 60%를 넘은 상황 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9조회’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지역, 직장, 학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9조회’가 속속 결성되어 갔습니다. 2005년 헌법기념일인 5월 3일에는 전국에서 3천의 ‘9조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9조회’ 학습회를 해온 성과를 토대로, 2005년 7월말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1만 명 강연회를 개최했을 때, 나는 사무국장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 직장, 학교에서 ‘9조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9조회의 유일한 운동 방침이었습니다. 이 풀뿌리 운동의 싹을 뽑기 위해 고이즈미 정권은 우정 민영화 선거를 실시하여 295석을 획득,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군을 보유한다’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9월 아베 신조가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합니다.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그 전에 “전후 체제를 전환한다” 하여 1947년의 「교육기본법」 개악을 표명했습니다. 이때 9조회는 전국에서 4500개였습니다. 이 힘으로는 「교육기본법」의 개악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2007년에 9조회는 전국에서 6천개가 되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개헌 절차법으로서의 「국민투표법」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해 봄 요미우리신문의 헌법 여론 조사에서는 3년에 걸쳐 “헌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이 늘어나 ‘바꾸는 편이 좋다’가 여전히 많았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민당과 같은 개헌 정당으로 출발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아베 정권에서 개헌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날치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승리하여,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이지만,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다수파가 되는 ‘파베기(ねじれ, 중의원은 여대야소, 참의원은 여소야대인 상황-역자 주)국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2일, 제1차 아베 정권은 붕괴에 몰리게 됩니다.

2008년 요미우리신문의 헌법 여론 조사에서는 ‘15년만’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이 다수파가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5년만’이라는 것은 개헌 정당이 다수가 된 1993년 이후를 말합니다. 9조회가 전국 각지에 조직을 만듦으로써 거기서 여론을 바꿔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국 헌법 9조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임을 풀뿌리사회에 호소해 여론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 요미우리신문의 헌법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바그다드로 수송 활동을 하고 있던 항공자위대에 대해 4월 17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헌법위반이라는 위헌 판결을 낸 것입니다. 9조회의 활동은 여론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으로, 처음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 권력의 헌법 위반에 대해 사법 권력이 위헌 판결을 내게 한 것입니다.

9조회의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국민이 주권자이며 주권자가 헌법이라는 최고 법규에 의해 국가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헌 정치의 기본적인 태도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실현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다음해 2009년 9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민주·사민·국민신당에 의한 하토야마 유키오 연립 정권이 탄생합니다. 일본에서 총선에서 야당이 단독 과반수를 얻어 정권 교체가 실현된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로 사민당이 2010년 5월에 연립을 이탈하여 다음달 내각은 붕괴됩니다.

2010년 6월 8일 간 나오토 내각이 성립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감이 증대해 그해 9월 2일에 퇴진합니다. 지진 발생 후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 일본의 원자력 안전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탈원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대규모 전국대회가 개최됨은 물론, 2012년 3월 29일 이후 매주 금요일 총리 관저 앞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0년 안보투쟁의 통일된 운동이 분열해 간 하나의 계기가 원수폭 금지운동의 분열에 있었지만, 탈원전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에 의해 운동의 전국적인 통일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 정보 교환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북을 소셜미디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으며, 탈원전의 국회 앞 행동도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이십 만 가까운 시민이 국회를 포위해 2012년 6월 29일 행동에서 하나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트위터나 웹으로 관저 앞 시위를 알고 참가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2012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사퇴한 노다 민주당 정권은 총선에서 참패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 정권을 넘겼습니다. 전국의 9조회는 탈원전 운동과 연계하면서 제2차 아베 정권이 하시모토 토오루의 일본유신회를 끌어들이려 헌법 개정 발의에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일본국 헌법 96조를 선행 개헌하겠다는 책동에 대해 즉시 반격 했습니다. 9조회 사무국으로서 2010년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9조회를 일일이 세어 7258개까지 계산했지만, 늘어나거나 활동을 중지한 9조회도 있어 이후 정확한 9조회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전국 약 7천개 9조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변질시키기 위해 2013년 가을에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비밀이 필요한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누설 등'을 처벌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많은 일본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12월에 결의·공포한 뒤, 2014년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역대 자민당 정권이 헌법 위반이라고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을 아베 정권이 각의 결정만으로 추진한 것이 2014년 7월 1일. '자위대'라는 조직이 1954년 7월 1일에 만들어진지 60년 되는 출범일 이었습니다. 각의 결정만으로 일본국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여 통일된 집회를 시민운동의 진영에 호소해서 수도권에서 실현한 것이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마! 실행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14년 말에 처음에 말씀드린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9조 부수지마!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가 결성된 것입니다.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는 그때까지 민주당계와 사민·공산당 계열로 분열 개최된 5월 31일의 '헌법집회'를 2015년 통일시켜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각의결정된 전쟁 법제로서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역사적인 운동이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에 의해 대규모 국회 포위 운동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60년 안보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 것은 중앙의 국회 앞 행동과 호응하여 전국에서 말 그대로 '총결집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요 도시의 역전은 물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전쟁법인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집회 홍보 행동, 스탠딩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동형태에 의한 거리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 전국 각지의 9조회가 관계했습니다.

전쟁법인 '안보법제'는 2015년 9월 19일 날치기되었습니다만, 시민운동은 헌법 위반인 '안보법제'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갖고 전쟁법을 폐지하기 위한 야당과의 공동 투

쟁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2016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시민연합’이 지지하는 야당 통일 후보가 11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소인 중 여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9조회는 새롭게 ‘대표자’를 정하고 새로운 운동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발언자 중 한 분인 시미즈 마사히코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목표하는 운동은 ‘아베 9조 개헌 NO!’의 ‘3000만 명 서명’을 모으는 것입니다. 목표수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정도의 목표를 내건 운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운동, 즉 최초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이 실현시킨 정권 교체 운동에서 우리도 제대로 배우면서 아베 정권의 헌법 개악을 저지하고, 9조를 가진 일본 정부야말로 한국전쟁의 강화조약을 체결해서 동아시아에 제대로 된 평화체제를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의가 그 전제를 만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九条の会」の歩みと役割、そして展望

「九条の会」事務局長 小森 陽一

まず「韓半島の平和と日本の平和憲法守護のための韓日市民平和会議」を主催し、これまで大変な準備を積み重ねて来られた「主権者全国会議」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様に心から御礼し感謝いたします。

今回の会議は平昌冬季パラリンピックと並行して開催されていますが、この冬季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南北の対話が一気に進み、去る三月六日に文在寅韓国大統領と北朝鮮の金正恩労働党委員長とが、来たる四月末、板門店の韓国側施設「平和の家」で南北首脳会談が開催され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皆さんが積み重ねられて来た市民としての運動が東アジアの平和にとってきわめて重要な成果をもたらしていること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

こうした状況の中、日本の安倍晋三政権が南北の対話にきわめて否定的な態度を取っていることは許せません。ここに日本国憲法九条の改悪をねらっている安倍政権の本質があらわれていると私は判断しています。

年頭の会見で安倍首相は、「今年こそ」と改憲の意欲を表明しました。改憲勢力が衆参両院で三分の二以上の議席を確保している期間から考えると、改憲発議は二〇一八年中の国会か、二〇一九年通常国会冒頭がりミットになるからです。昨年十二月二十日に自民党は「憲法改正に関する論点取りまとめ」を発表し、三月二十五日日の党大会で自民党案を決定し、憲法審査会にかけようとしています。

安倍改憲を許すか否かをめぐって二〇一八年は正念場となります。市民の運動と立憲野党との共闘を広げ、かつてない市民の共同の運動を広げ、改憲発議ができない状況をつくっていくために、今日本においては「安倍9条改憲NO！全国市民アクション」の呼びかけで「3000万人署名」の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ます。この「全国市民アクション」に、「九条の会」は創設以来はじめて組織として参加することを二〇一七年の夏に決め、全国で一斉に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全国市民アクション」は、二〇一五年の戦争法としての安保法制に反対する運動を主導した「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が基盤となった運動体です。申し遅れましたが、私の学者としての専門領域は日本近代文学ですが、これほど非文学的な組織の名前は出会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名称の途中に「ナカグロ」や強調符が入ることも日本語としては異例ですが、この非文学的な名称の中に、二〇一四年末にできたこの恒常的で継続的な市民の共闘組織の特質が刻まれています。

実は三つの異なる組織体の名称を一つにしたことによって、この異形の日本語が生じたのです。一つは「戦争させない1000人委員会」で、日教組や自治労など「連合左派」と知識人、文化人が一緒につくった組織です。その代表が第一セッションで発言される福山真劫さんです。もう一つは、政党として日本共産党が入っている「憲法共同センター」で、その代表が第三セッションで発言なさる全労連議長の小田川義和さんです。一九八九年に、一九六〇年安保闘争で社会党と共産党を結んで大きな運動を形成した、日本労働組合総評議会が連合に吸収

されて以後、分裂してきた日本の労働組合運動の二つの潮流が一つになったのです。それをつなぐ役割を担ったのが、首都圏で五月三日の憲法記念日に社民党と共産党の党首が参加して行われて来た憲法集会を担って来た市民運動の複数のグループでつくられた「解釈で憲法9条壊すな！実行委員会」で、その代表が先ほど挨拶をされた「許すな！憲法改悪・市民連絡会」の高田健さんです。

この三つの組織が二〇一五年の安保法制反対の大きな共同行動を組織しましたが、九月一九日に強行採決されました。「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と一緒に行動した「ママの会」、「学者の会」などが、「政治団体」として参加して「市民連合」が結成され、直接選挙に市民としてかかわる運動が組織され、二〇一七年の総選挙で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そうした運動を経て、安倍政権が「九条改憲」を何としても押し進めようとする中で、この「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と共に、「安倍改憲」を阻止するための「安倍9条改憲NO！全国市民アクション」に、「九条の会」が組織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それは「安倍9条改憲NO！全国市民アクション」の運動が「九条の会」を二〇〇四年六月十日に結成したときの、呼びかけの内容と一致したからです。

「九条の会」を呼びかけたのは、劇作家であり小説家でもある井上（いのうえ）ひさしさん、哲学者であり日本文化研究者の梅原猛（うめはら・たけし）さん、ノーベル文学賞作家の大江健三郎（おおえ・けんざぶろう）さん、「ベトナムに平和を市民連合」を組織された小説家の小田実（おだ・まこと）さん、憲法学者の奥平康弘（おくだいら・やすひろ）さん、戦後日本の思想界を牽引した評論家の加藤周一（かとう・しゅういち）さん、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の澤地久枝（さわち・ひさえ）さん、小田実さんと一緒にベ平連の運動を組織した哲学者の鶴見俊輔（つるみ・しゅんすけ）さん、そしてこの時期、日本軍の性奴隷にされたハルモニたちに対して、国としてきちんと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運動の先頭に立っていらした社会運動家で三木武夫首相のお連れ合いであった三木睦子（みき・むつこ）さんの九人です。

「九条の会の呼びかけ」では、九条を持つ日本国憲法を、改めて主権者として選び直し、日々行使していくことを訴えていました。九人の呼びかけ人は、三人ずつ分担しながら全国主要都市で講演をして、運動に参加することを呼びかけて行きました。九人と何らかの形で一緒にお仕事や活動を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で、私が事務局長をつと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九条の会」が発足した二〇〇四年六月の段階では、「イラク復興支援特別措置法」に基づいて、アメリカのブッシュ政権に追従する小泉純一郎政権の下で、日本の自衛隊が戦場であるイラクに派遣されていました。

二〇〇一年九月一日の「アメリカ同時テロ」の首謀者をウサマ・ビン・ラディンと断定したアメリカのジョージ・ブッシュ政権は、アフガニスタンへの軍事攻撃を行った。タリバン政権は崩壊したが、ウサマ・ビン・ラディンは逮捕できなかった。二〇〇二年一月の一般教書演説で、ブッシュ大統領はイラク、イラン、北朝鮮を「悪の枢軸」と名指し、「テロ支援国家」と指定し、イラクが大量破壊兵器を保有していると主張し、二〇〇三年三月二〇日、イギリスのブレア首相を巻き込み国連の合意のないままイラク攻撃を開始した。四月九日にバグダードをアメリカ軍が陥落させた後、占領統治にあたるアメリカ軍やイギリス軍などの後方支援のために日本の自衛隊を派遣するための法律が「イラク復興支援特別措置法」です。

小泉政権は「国際貢献」と称して、ブッシュ政権の無法な戦争に協力していくために、二〇〇三年六月に安全保障会議法と自衛隊法を改悪し、「武力攻撃事態法」を制定し、さらに二〇〇

四年六月一四日には「武力攻撃事態等における国民の保護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をはじめとする関連七法を成立させていくという状況の中で「九条の会」は発足したのです。

改憲政党が自由民主党だけでなく、複数政党となった一九九三年以後、「読売新聞」と「サンケイ新聞」は、社をあげて改憲キャンペーンを繰り広げつづけています。「読売新聞」は毎年「改憲世論調査」を行っていますが、二〇〇四年においては、「憲法を変えた方が良い」が六五パーセントに対し、「変えない方が良い」はわずか二二パーセントでした。「九条の会」の運動は、改憲世論が六割をこえた状況の中から始まったのです。

「九条の会」の呼びかけに応じて、全国の地域、職場、学園で自然発生的に「九条の会」が続々と結成されていきました。二〇〇五年の憲法記念日五月三日には、全国で三千の「九条の会」が結成されていました。全国主要都市で「九条の会」勉強会を行って来た成果をふまえて、二〇〇五年七月末東京の有明コロシアムで一万人講演会を開催した際、私は事務局長として、全国のあらゆる地域、職場、学園で、「九条の会」をつくって下さいと、呼びかけました。これが「九条の会」の唯一の運動方針でした。この草の根運動を芽のうちに摘み取るために小泉政権は「郵政民営化選挙」を行い、二九五議席を獲得し、「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という九条二項を削除し、「自衛軍を保持する」という改憲案を発表しました。

二〇〇六年九月安倍晋三が小泉政権を受け継ぎます。自らの任期中に改憲を行うと公約し、その前に「戦後レジームを転換する」として一九四七年の「教育基本法」の改悪を表明しました。この時「九条の会」は全国で四五〇〇でした。この力では「教育基本法」の改悪を阻止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でした。

二〇〇七年に「九条の会」は全国で六千になりました。安倍政権は改憲手続き法としての「国民投票法」を国会に上程しました。この年の春の「読売新聞」の憲法世論調査では三年つづけて「憲法を変えない方が良い」という人が増えて、「変えた方が良い」がまだ多いが、拮抗しているという結果でした。自民党と同じ改憲政党として出発した民主党の小沢一郎代表は、安倍政権の下での改憲には協力しない、と表明しました。「国民投票法」は強行採決されましたが、その後の参院選で民主党をはじめとする野党が勝利し、衆議院では与党が多数派だが、参議院では野党が多数派という「ねじれ国会」となりました。

そして二〇〇七年九月一二日、第一次安倍政権は崩壊に追い込まれたのです。

二〇〇八年の「読売新聞」の憲法世論調査では、「十五年ぶり」に「憲法を変えない方が良い」という人が多数派になった、という結果を発表せ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十五年ぶり」ということは、改憲政党が複数になった一九九三年以来ということです。「九条の会」は全国各地に組織をつくることによって、そこでの世論を変え、戦争の放棄、戦力の不保持と交戦権の否認を宣言しました。日本国憲法九条を守ることこそが、日本という国の未来を切り拓くことを草の根で訴えて、世論にしていったのです。

この「読売新聞」の憲法世論調査の結果が発表された後に、クエートからイラクのバクダットへの輸送活動を行っていた航空自衛隊に対して、四月一七日名古屋高等裁判所は、憲法に違反する、という違憲判決を出したのです。「九条の会」の活動は、世論を草の根から変えることで、はじめて三権分立の原則に基づいて、行政権力の憲法違反に対して、司法権力が違憲判決を出すにいたったのです。

「九条の会」の活動によって、一人ひとりの国民が主権者であり、その主権者が憲法という最高法規によって、国家権力に縛りをかけ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立憲政治の基本的在り方が、

日本という国で実現したのが二〇〇八年でした。

翌二〇〇九年九月の総選挙で民主党が圧勝し、民主・社民・国民新党による鳩山由紀夫連立政権が誕生します。日本において総選挙で野党が単独過半数を得て政権交代が実現したのは戦後初めてのことでした。しかし普天間基地移設問題で社民党が二〇一〇年五月に連立を離脱して、翌月内閣は崩壊します。

二〇一〇年六月八日に菅直人内閣が組閣。二〇一一年三月一日の東日本大震災への対応に国民の不信感が増大し、同年九月二日に退陣する。地震発生後の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で重大事故が発生し、日本における原子力安全神話は完全に崩壊した。脱原発を求める市民運動が全国に広がり、大きな全国集会の開催はもとより、二〇一二年三月二九日以後、毎週金曜日首相官邸前で脱原発を求める市民の抗議行動が持続的に行われ、今日にいたっている。

一九六〇年安保闘争における統一した運動が分裂していく一つの契機は、原水爆禁止運動の分裂にあったが、脱原発を求める多くの市民の声により、運動の全国的な統一が、急速に進められていくことになる。また東日本大震災の被災情報の交換に、「ツイッター」や「フェイスブック」がソーシャルメディアとして多くの人たちに利用されるようになり、脱原発の国会前行動も、野田佳彦政権による原発再稼働に反対する二十万近い市民が国会を包囲して二〇一二年六月二九日の行動で一つのピークに達する。ツイッターやウェブで官邸前デモを知った参加者が半分以上でした。

二〇一二年に衆議院を解散し総辞職した野田民主党政権は、総選挙で大敗し、第二次安倍晋三内閣に政権を明け渡しました。全国の「九条の会」は脱原発の運動と関係しながら、第二次安倍政権が橋本徹の日本維新の会を巻き込んで、憲法改正発議に衆参両院で「三分の二以上の賛成」が必要だという日本国憲法九十六条を先行改憲する、という策動に対してただちに反撃して阻止しました。「九条の会」事務局としては二〇一〇年までは、新たにつくられた「九条の会」を一つひとつ数え、七千二百五十八まで数えましたが、増えるだけでなく活動を停止する「九条の会」もあられ、以来正確な「九条の会」の数は把握出来ないでいます。したがってこのときから、「全国約七千の九条の会」という言い方をして来ています。

第二次安倍晋三政権は、日本を「戦争をする国」に変質させるため、二〇一三年秋に、日本の安全保障に関する情報の中で「特に秘匿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もの」を「特定秘密」に指定し、その「漏えい等」を罰する「特定秘密保護法」を国会に上程し、多くの日本国民の反対を押し切って一二月に成立、公布し、二〇一四年一二月から施行しました。

また歴代自民政権が憲法違反としてきた「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することを安倍政権が閣議決定だけで行ったのが二〇一四年七月一日、「自衛隊」という組織が一九五四年七月一日につくられてから、ちょうど六十歳の誕生日を迎える日でした。この閣議決定だけで日本国憲法九条の解釈を変えることに反対して、統一した集会を市民運動の側から呼びかけて首都圏で実現して来たのが、「解釈で憲法9条壊すな！実行委員会」です。そして、この二〇一四年の年末に、最初に申し上げた「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が結成されたのです。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は、それまで民主党系と、社民・共産党系に分裂して開催されていた五月三日の「憲法集会」を二〇一五年に統一し、大きく成功させました。そして五月一四日に閣議決定された戦争法制としての「安保法制」に反対する歴史的な運動が、「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によって、大規模な国会包囲運動として行なわれていきます。

この運動が、六〇年安保闘争をさらに発展させることになったのは、中央の国会前行動と呼応

して、全国で文字通りの「総がかり行動」が行われたことです。主要都市の駅頭はもとより、人々が集まることの出来るあらゆる空間で戦争法としての「安保法制」に反対する集会、宣伝行動、スタンディング等、考えることの出来るあらゆる行動形態による街頭行動が実践されました。そのすべての行動に全国各地の「九条の会」がかかわって来ました。

戦争法としての「安保法制」は二〇一五年九月一九日に強行採決されましたが、市民の運動は、憲法違反の「安保法制」は廃止するしかないという方針で、この戦争法を廃止するための野党共闘を実現させたのです。二〇一六年の参議院選挙では「市民連合」が支持した野党統一候補が、十一の選挙区で勝利しました。

こうした中で、呼びかけ人のうち六人が亡くなっていた「九条の会」は、新たに「世話人」を設定して、新しい運動に踏み出しました。今日の発言者の一人である清水雅彦さんも、その一人です。

今私たちの目指している運動は、「安倍9条改憲NO!」の「3000万人署名」を集め切ることです。目標数は有権者の三人に一人です。それほどの目標をかかげた運動を、私たちは今までや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その意味で、現時点で日本で行われている運動は、過去において行われなかった運動、つまりはじめての運動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韓国のみなさんが実現した政権交代運動に、私たちもしっかりと学びながら、安倍政権の憲法改悪を阻止し、九条を持つ日本の政府こそが、朝鮮戦争の講和条約を結び、東アジアにしっかりと平和の体制をつくる責任を負っていることを明確にしたいと思います。

今回の会議が、その前提をつくることにな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시민 평화심포지엄 기조 연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체

이삼열

1. 한반도의 전쟁위기

지금 우리가 사는 한반도엔 원치 않는 전쟁의 위기가 엄습 해 오고 있다. 단순한 전쟁도 아니고, 핵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 뿐 아니라, 일본과 괌도 태평양에 까지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한반도에서의 엄청난 무력충돌과 피투성이의 전쟁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한때 북한이 핵개발 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수천수만 개의 핵무기 앞에 어린이 작란감 같은 폭탄 몇 개 가지고 상대나 되겠어? 괜히 공갈 협박이지! 안심 했다 우리는 미국의 엄청난 핵무기와 핵 전략자산의 보호를 믿으며 안심해 왔고, 한미-동맹만 공고히 하면 된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작년 (2017)에 와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 (90년대, 2000년대) 1천 Km를 날아가는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을 쏘았을 때만 해도, 한미 군사력과는 상대도 되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 핵폭탄 실험을 여러번 했지만, 북한이 위세를 떨치기 위한 술책으로 여기고, 막상 핵무기 제작이나, 운반 수단까지는 개발하지 못한다고 안심해 왔다.

그런데 2016년 1월과 9월에 터트린 제 4차, 5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10 kiloton, 25 kiloton으로 히로시마 원폭에 버금가는 폭탄을 만들어 실험했고, 금년 9월 2일 제6차 핵실험은 풍계리 지하 핵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커 150 kiloton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6배나 큰 폭발력을 실증해 보였다.

정말 큰 걱정은 핵폭탄의 크기보다 이를 운반해 쓸수 있는 미사일 능력인데, 이제까지 기껏 1천, 2천 Km의 미사일을 쏘더니, 작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아침 화성 14호로 쏜 미사일은 ICBM (대륙간 탄도탄) 1만 Km까지 날라 갈 수 있고, 최근에 쏘아 올린 화성 15호는 수직으로 4700 km, 직선거리로 13000 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어서 미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임을 실증 해 보였다는데 있다. Bush 대통령과 Obama 대통령 시절까지의 미국의 대 북한전략은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로서 북한의 핵무기전략을 지켜보면서도, 경제제재 (Sanction)만 하면서 묵인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도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정도 3000 km 사정거리일 때 까지였고, 이제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 까지 미 대륙을 겨냥해/만 Km 이상을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개발한 이상, 이제는 미국의 본토와 자국

민 보호를 위해 가만있을 수 없고, 대항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여론이 되었고, 마침 등단한 Donald Trump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위기 제거와 한반도 전략이 되었다

군사적 Option이 table에 있다는 말이 매일 미국과 전 세계 신문에 오르내리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적인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영변, 신포의 핵시설이나 동창리 풍계리 핵실험장이 파괴 되겠지만, 북한은 동시에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 (Cannon) 3천여기를 동시에 발사해, 서울과 수도권 주변의 2500 만 남한시민들을 폭파 시키겠다고 수백 번 공언했고, 실전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선제공격이 시작되는 경우, 하루 동안에 남한인구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예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선제공격이나 전쟁행위를 해선 않 된다고 사정하고 있지만, 미국이 예측 못할 Trump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지, 미국 민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는 모험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의 필요성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된 한반도는, 이미 냉전체제가 세계적으로 청산된 21세기에 와서도, 아직 분단의 장벽을 헐지 못하고,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냉전의 그늘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냉전으로 분단되었던 독일과 베트남은 벌써 통일이 되었고,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과 공산권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 되었는데, 유독 한반도에서는 분단의 장벽이 더 두터워지고, 핵전쟁과 같은 뜨거운 열전의 위협마저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는 적대적인 분단체제는 크게 완화되었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대폭 증대되어, 화해와 공존의 시대가 열린 듯이 보였다. 특히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 번이나 남북정상들이 만나고 통일을 향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발표되어 이제는 곧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올 것 같은 환상마저 갖게 되었다. 수백 명 단위지만 반세기동안 헤어졌던 이산가족의 재회상봉은 감격적이었고, 금강산 관광 객 1백만 명, 개성공단의 합영 생산,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다는 꿈은 분단의 장벽을 곧 허물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남북합의서를 채택해놓고도 25년이 넘도록 그 합의된 내용들은 실천 되지 않았고, 더구나 남북정상들이 만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 합의 했는데,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은 간헐적으로 시행되다 중단되고 드디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남과 북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을 약속했고 조속히 공고한 평화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합의 했는데, 왜 간첩선이 내려오고, 서해교전 사태가 벌어지며, 선군정치와 핵무기 개발, 핵전쟁 위협까지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공존과 교류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할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적어도 소극적 의미의 평화, 즉 전쟁과 폭력이 제거된 상태가 보장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적대적 대결상태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 전쟁상태는 아니더라도 1953년 휴전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번 제기되었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화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그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이로써 남북한은 제9조의 불가침 약속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남북한 간에만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이 함께 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 남북기본합의서 수준의 협정을 맺지도 않았다.

흔히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서독 관계의 개선과정을 비교하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은, 72년도의 동서독 기본조약은 확실한 평화체제위에서 성립된 것이었는데 92년의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평화체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맺어져, 그 내용이 실천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73년부터 75년 사이에 이루어진 헬싱키 회의를 통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상설화 되어, 동서의 35개 국가가 보장하는 유럽의 공동안보체제가 밑받침되어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1950년-53년에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남한, 북한, 중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인 일본, 소련 등과도 어떤 식의 안보 협력이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90년대 초 동서독의 흡수통일과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해체, 경제난과 고립으로 체제유지의 불안을 느낀 북한이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에 관심을 가지며 평화협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이해할만 하다. 체제안보의 보장이 없이는 군비증강과 교류개방의 억제를 풀지 않겠다는 태도다. 서해안의 도발사건이나 미사일발사, 핵개발 등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연발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92년 남북합의서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좌절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일으킨 요인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불신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그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해주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봉쇄를 풀어주는 등의 대가를 주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강경파의 주장대로 미국이 무력으로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동족살상은 뻔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한반도의 위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소련과 남북한 6자 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어차피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한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며, 주변 강대국들의 참여와 보장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6자 회담의 성립은 북핵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의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동서독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유럽안보협력체제가 필수적 요소였듯이,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진정한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 혹은 소련과 일본까지 포함되는 안보협력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3.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가능성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안보와 협력을 보장해 줄 동북아시아 공동체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와 무역거래량의 22%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다른 지역처럼 어떤 형태의 공동체(community)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 유럽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안보협력체가 있든지, 경제협력체가 있든지 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에는 그런 것이 없다.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동맹국간의 유대관계는 있지만, 냉전시대가 지난 때인데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처럼, 양 진영을 아우르는 협력공동체는 아직 없다. 동맹국간에도 NATO 같은 지역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일 안보조약이라던가, 한·미 안보조약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양자 간의 협력을 약속한 정도의 동맹관계가 있을 뿐이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미·일 삼자간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관계만 있을 뿐, 소련의 해체로 러시아와는 동맹관계가 훨씬 취약한 상태에 있다.

차라리 미·소의 군사균형을 통한 소극적 평화유지가 관건이었던 냉전시대가 지속되었다면, 동북아시아에도 유럽을 모방하여, 동북아시아 안보협력 회의나 동북아 평화공동체 같은 것을 협상해 볼 가능성이 훨씬 농후했을지 모른다. 남한, 미국, 일본의 군사력과 북한, 소련, 중국의 군사력이 대등한(symmetrie)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안보나 안보협력체의 구상이 훨씬 먹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남북한의 대립 갈등은, 동서독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첨예한 긴장관계였기 때문에, 유럽에서와 같은 평화공존, 공동안보의 개념이나 발상이 나오질 못했다.

이제 소련과 공산권의 해체로 미국과 NATO의 적이 없어진 불균형의 상태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헬싱키 모델을 동북아시아에 심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안보조약을

맺자고 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주변 강대국 일본과 중국의 미묘한 경쟁의식과 긴장관계이다. 경제대국 일본은 지금 평화 헌법을 고쳐 군사 대국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militarism)의 부활을 경계하는 중국은 지금 반일감정의 폭발로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자칫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생길 경우 미국과 일본은 대만 안보를 위해 무기를 제공하는 등 중국과의 갈등을 노골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중국해의 영토분쟁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오늘의 상황은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지만, 냉전시대의 그늘이 걷히지 않은 채,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움틀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정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수립하지 못해 불안 할 뿐 아니라, 2차 대전 후 소련과 일본 사이에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쿠릴열도의 반환 등 영토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는 외형적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아시아에서의 패권과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등관계에 빠질 잠재적 적대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계대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와 남아시아 까지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단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생기면 미국과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태를 안전하게 묶어두려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어떤 도발도 견제하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다하려 할 것이다. 북핵 위기의 해소를 위해 북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려 애 쓰는 것도 이런 목적 때문일 것이다.

경제대국이면서 군사력이 약한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면서 아시아에서의 역할분담을 증대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남북한이 접근하고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으로 일본은 불안해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간부들은 오래전부터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일본의 열배가 넘는다.」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이 된다.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Francis Fukuyama, Re-Envisioning Asia. Foreign Affairs. 2005년 1,2월)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 압도적이며, 통일한국이 또한 경쟁대상이 될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의 유대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실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ASEAN+3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체를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명분은 이상적이지만, 관련당사국(stakeholders)들이 관심과 이해관계를 적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동북아의 협의체나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력과 교역량이 세계경제를 좌우할 만큼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과 무역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의 형성에는 이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이 한 예이다.

이미 한국의 교역 상대국 1순위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중국의 교역상대국으로서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양국 간의 관계일 뿐 지역협의체는 못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일본에서 한반도를 거쳐 중국과 소련 유럽까지 잇는 철도와 육지교통로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 남한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의 구상도 이런 필요성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포함된 아태 경제협력체(APEC)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범위가 너무 넓고, 느슨한 협의체에 불과한 APEC에 이런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에는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체를 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이해관심과,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결합해서, 6자 회담은 어떤 형태의 연결고리나 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유럽의 안보협력체(OSCE)도 처음엔 헬싱키에 핀란드 정부가 소집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회의에 불과했다. 73년부터 3년간 회의를 계속하고 나서 결의문을 작성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정례화 되었을 뿐이며, 그 뒤로 자주 모이면서 유럽의 공동안보와 협력을 주관하는 지역협의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vision을 갖고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연다면 머지않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보장해 주는 동북아시아의 협력공동체가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정부차원에서만이 아니고, 학계, 언론계, NGO 등 시민사회 각계의 교류와 협력, 대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4. 동북아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연대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수립은 과연 가능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경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외교나 군사안보 면에서만 다루어 왔지만, 사실상 평화체제의 수립은 외교적, 군사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 전체의 가슴속에서 평화공존의 마음(mind)이 생겨야한다.

사실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일은 남북한의 국민과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시민들의 가슴속에 공존과 평화의 마음을 심는 노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정부나 정책 당국자들이 자국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평화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있을 때, 이를 깨우치며 대결정책에서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 등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동서독의 평화통일 과정을 보아도 분명하다.

1969년 서독의 사민당 수상 빌리 브란트(Billy Brandt)가 동방정책(Ostpolitik)을 수행했을 때도 서독 국민들의 반 동독, 반 동유럽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서독 기독교연합회(EKD)의 1965년 동방각서(Ostdenkschrift)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적인 적대 국가들과 국민적인 차원에서 화해와 공존, 협력을 지향하는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적대정책에서 평화공존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남미의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정부로 변혁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피 흘리지 않고 평화와 공존체제로 전환시킨 현대사의 드라마 가운데는 항상 지식인, 종교인, 여성, 노동자 등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운동이 전제되어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존과 협력, 공동안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시민사회협의체’ 같은 연대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동경대 평화학 교수인 사카모토가 오래 전부터 역설했다.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는 지역 내의 공동안보와 경제협력 등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의 모순과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과 다국적 투기금융자본의 횡포에 맞서 경제적 세계화의 모순된 구조와 틀을 시정하려는 반세계화 운동이 199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시민사회의 세계적 연대를 대단한 힘과 영향력으로 강화시켰다.

날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정보통신과 인적 교류의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이나 금융자본의 세계화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같은 서민층의 국제적 연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글로벌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와 펜타곤이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테러 참사로 인한 미국인들의 분노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사회와 평화운동단체들의 반전 여론이다. 오늘날 세계 여론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것은 CNN만이 아니라 수억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통제 없이 순식간에 전달되는 인터넷과 이메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할을 철학자 칸트는 이미 2백 년 전에 내다보았다. 그는 1795년 『영구평화론』에서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세계평화는 결국 국경의 제약을 넘어서 세계시민적인 의도와 이성애 따른 공동체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예언했다. 오늘의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는 종족과 문화, 종교와 집단들의 갈등과 유혈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시민적 이성을 가진 시민사회의 세계화,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있어야 평화정착과 화해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국경과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공존과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적 이성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오늘의 세계는 냉전체제 이후 세계화의 시대로 전환되었지만,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는 아직 냉전체제가 종결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중국과 북한, 베트남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아직 지배이념으로 살아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공존, 한반도에서 한민족 평화공동체의 실현문제는 동아시아의 장래와 평화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다행스럽게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북대화를 열고 평화 올림픽을 만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를 중개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2년 뒤 이어질 동경 올림픽(2020)과 북경 동계올림픽(2022)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의 길을 열게 되길 기대해본다.

朝鮮半島の平和と東北アジア共同体

李三悦(イ・サムヨル)

1. 朝鮮半島の戦争危機

いま私たちが住んでいる朝鮮半島には、望んでない戦争の危機に襲われている。単純な戦争でもなく、核戦争という凄じい恐怖の戦争の影が、朝鮮半島だけでなく、日本とグアム、太平洋にまでにのびている。アメリカの軍事専門家や外交安保専門家らも、朝鮮半島でのおびただしい武力衝突と血だらけの戦争の可能性が現実化されていると警告している。

私たちは、一時期北朝鮮が核開発を行うといったが、アメリカの数千数万個の核兵器の前に、子どものおもちゃのような爆弾いくつかを持って相手になるのか?ただの恐喝脅迫だよ!と安心した。私たちはアメリカのおびただしい核兵器と核戦略資産の保護を信じ、安心してきて、韓米-同盟だけ強固にすれば良いと考え、北朝鮮の核問題を別に心配しなかった。

しかし、北朝鮮の核兵器の威嚇は、昨年(2017)にきて事情が大きく変わった。過去(90年代、2000年代)1千Kmを飛んで行くノドンミサイル、テポドンミサイルを撃った時は、韓米軍事力とは相手にならないので心配をしなかった。2006年から核爆弾実験を何度も行ったが、北朝鮮が威勢をふるうための術策と思い、実際に核兵器の製作や運搬手段までは開発できないだろうと安心してきた。

ところで、2016年1月と9月に行った第4次、5次核実験は、爆発力が10 kiloton、25 kilotonと、広島原爆に次ぐ爆弾を作って実験を行った。2017年の9月2日、第6次核実験は、プンゲリの地下核実験の中で最も爆発力が大きく、150 kilotonと測定されるが、これは広島原爆の6倍も大きい爆発力を実証した。

本当に大きく危惧されるのは、核爆弾の大きさより、これを運んで使えるミサイル能力であるが、今までわずか1千,2千Kmのミサイルを撃ったが、昨年の7月4日、アメリカの独立記念日の朝には、ファソン14号として撃ったミサイルは、ICBM(大陸間弾道弾)1万Kmまで運んで行くことができ、最近打ち上げたファソン15号は、垂直で4700km、直線距離で13,000kmを飛んで行くミサイルなので、米大陸に届くことができるミサイルであることを実証したのである。Bush大統領とObama大統領の時代までのアメリカの対北朝鮮戦略は、戦略的忍耐(Strategic Patience)として北朝鮮の核兵器戦略を見守りながらも、経済制裁(Sanction)だけ行い黙認する戦略だった。

しかし、それは北朝鮮の核兵器が日本や沖縄、グアム島の米軍基地を狙った程度の3,000km射程距離までであって、もうハワイやサンフランシスコまでの米大陸を狙って1万Km以

上を撃つことができる大陸間弾道弾(ICBM)を開発した以上、もうアメリカの本土と自国民の保護のために、じっとしていることができなくて、対抗措置をとるべきだということが、アメリカの朝野の世論になって、ちょうど登壇したDonald Trump大統領の最優先課題が、北核危機の除去と朝鮮半島戦略になった。

軍事的Optionがtableにあるという言葉が毎日アメリカと全世界の新聞に載せられ、朝鮮半島において戦争の可能性がますます現実化されている。アメリカが北朝鮮のICBM開発を防ぐために軍事的な先制攻撃をすることになれば、寧辺(ヨンピョン)、新浦(シンポ)の核施設や東倉里(トンチャンリ)、豊溪里(ブンゲリ)の核実験場が破壊されるだろうが、北朝鮮は同時に休戦線に配置された長射程砲(Cannon)3千機余りを同時に発射し、ソウルと首都圏周辺の2、500万韓国市民を爆破させると数百回公言し、実戦準備を終わらせた状態だ。アメリカの軍事専門家らは、先制攻撃が始まる場合、一日の間に韓国の人口100万人以上が死ぬことができると予断した。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韓国の同意なしでアメリカが先制攻撃や戦争行為をしてはいけないと頼んでいるが、アメリカの予測できないTrump大統領が果たしてそのようにするのか、アメリカ国民の安全のために朝鮮半島を犠牲にさせる冒険をするのか、誰も大言壮語できない危機が今日の私たちの現実だ。

2.朝鮮半島平和体制の必要性

冷戦時代に強大国の利害関係により分断された朝鮮半島は、すでに冷戦体制が世界的に清算された21世紀にきて、まだ分断の壁を壊すことができなく、戦争の危険と恐怖から抜け出せないまま、冷戦の陰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状態である。

冷戦によって分断されたドイツとベトナムはすでに統一され、冷戦の一つの軸だったソ連と共産圏はすでに崩壊され長い時間が経ったが、唯一朝鮮半島では分断の壁がさらに厚くなって、核戦争のような熱い熱戦の威嚇までかくれている理由はどこにあるのだろうか？

もちろん、1992年南北基本合意書が採択された以後には、敵対的な分離体制は大きく緩和され、南北間の交流や協力事業が大幅増大し、和解と共存の時代が開かれたように見えた。特に、2000年6月と2007年10月、二回も南北首脳が会って統一に向かった6.15共同宣言と10.4宣言が発表され、もうまもなく平和と統一の時代がきそうな幻想まで持つようになった。数百人単位であるが、半世紀の間に別れた離散家族の再会対面は感激的であった。金剛山(クムガンサン)観光客1百万人、開城(ケソン)工業団地の合営生産、南北の鉄道と道路が繋がれるという夢は、分断の壁をまもなく崩しそうだった。

しかし、とても素晴らしい南北合意書を採択し25年が過ぎるまで、その合意された内容は実践されなかった。しかも南北首脳が会って、低いレベルの連邦制まで合意したが、南北の交流協力事業は、間けつ的に施行されて中断され、結局金剛山(クムガンサン)観光、開城(ケソン)工業団地の閉鎖という最悪の状態まで至った。

南と北は互いの体制を認め、不可侵を約束した。早く強固な平和の状態をつくることに合意

したが、なぜスパイ用の船舶がきて、西海交戦事態が起き、先軍政治と核兵器開発、核戦争の威嚇まで起きるのだろうか？

それは南北関係が多く改善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南北の共存と交流協力のために必ず前提条件でなければならない平和体制が確立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ためだ。

平和体制は、少なくとも消極的意味での平和、すなわち戦争と暴力が除去された状態が保障されるべきなのに、そのためには、朝鮮半島において敵対的対決状態や武力衝突の可能性が除去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いまは戦争状態でもなく1953年の休戦協定状態が持続していて、何度も提起された平和協定への代替までにはなれなかつた状態では平和体制が成立された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

1991年12月に締結された南北基本合意書の第5条は、停戦状態を強固な平和状態へと転換させるために、共同で努力し、その時まで軍事停戦協定を遵守するとなっている。これで韓国、北朝鮮は第9条の不可侵の約束とともに平和協定を結ぶことを約束した状態だ。しかし、平和協定は韓国、北朝鮮だけ締結できるのではなく、休戦協定の当事者であるアメリカがともに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まだ進展させられずにいる。しかも、北朝鮮はアメリカと南北基本合意書のレベルの協定を結ぶこともなかつた。

よく南北関係の改善と東西ドイツの関係改善の過程を比較するが、色々な共通点にもかかわらず明らかな差異点は、72年度の東西ドイツの基本条約は、確実な平和体制の上で成立したが、92年の韓国、北朝鮮の基本合意書は平和体制が確かでない中で結ばれて、その内容が実践されるのが難しい条件であったという点だ。特にドイツの場合は、73年から75年の間に行われたヘルシンキ会議を通じて、「ヨーロッパ安保協力会議(CSCE)」が常設化され、東西の35ヶ国が保障するヨーロッパ共同安保体制が支えとなり強固な平和体制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朝鮮半島は1950年-53年に戦争したアメリカと韓国、北朝鮮、中国の間に平和協定が締結されなかつただけではなく、周辺強大国である日本、ソ連などとも、どんな方法の安保協力や共同体が成り立つことが出来なかつた状態にあった。

特に、90年代初めの東西ドイツの吸収統一とソ連および東欧共産圏の解体、経済難と孤立で体制維持の不安を感じた北朝鮮が、何より自国の安保に関心を持って平和協定を強力に求めてきたことは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体制安保の保障なくては軍備増強と交流開放の抑制を解かないという姿勢だ。西海岸の挑発事件やミサイル発射、核開発などによって南北和解と協力に水を差す事態が連発するのは、このような状況から把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92年の南北合意書以後、朝鮮半島で平和体制を樹立しようとする努力が挫折し、南北関係の改善に障がいを起こした要因を調べれば、アメリカと北朝鮮の間の相互不信と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での利害関係の衝突がその核心だということがわかる。北朝鮮の核開発を防ぐためには、周辺国が北朝鮮の体制と安全を保障し、外交的孤立と経済封鎖を解くなどの代価を与えずには、解決策がないようだ。強硬派の主張のとおりアメリカが武力で先制攻撃をすることにな

ると、朝鮮半島の戦争は避けられなく、数十万、あるいは数百万の同族殺傷は明らかな結果であろう。

このように深刻な状況になった朝鮮半島の危機、北朝鮮の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アメリカ、中国、日本、ソ連と韓国、北朝鮮の6者会談が再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が高まっている。どうせ朝鮮半島の平和体制は、韓国、北朝鮮だけが作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はなく、周辺強大国の参加と保障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だけに、6者会談の成立は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だけではなく、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の樹立のためにも非常に良い機会を与えると見る事ができる。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が朝鮮半島の平和体制の構築はもちろん、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の必須条件となった。

東西ドイツの和解と交流協力の過程において、ヨーロッパ安保協力体制が必須要素であったように、朝鮮半島の南北関係を真の協力と共存の関係へと発展させるためには、これを保障できるアメリカと中国あるいはソ連と日本まで含まれる安保協力共同体が切実に必要だ。

3. 東北アジア平和共同体の可能性

朝鮮半島の平和だけでなく、東北アジア諸国の安保と協力を保障する東北アジア共同体は、果たして可能であろうか?望ましいことではあるが現実的にどのように実現されるだろうか?

東北アジアは、世界経済と貿易取引量の22%を占める重要な地域でありながらも、他の地域のようになんらかの形の共同体(community)も組織されていない。ヨーロッパはもちろん、他の地域にも安保協力体や、経済協力体があるのに、私たちが生きる東北アジアにはそのようなものがない。冷戦時代の遺産として同盟国のつながりはあるが、冷戦時代が過ぎたのにヨーロッパ安保協力会議(CSCE)のように、両陣営を合わせる協力共同体はまだない。同盟国間にもNATOのような地域共同体があるのではなく、日米安保条約や韓米安保条約など、強大国を中心に両者間の協力を約束した程度の同盟関係があるだけだ。韓国がアメリカの核の傘の保護を受けて日本と友好関係を結んでいて、韓米日三者間の同盟関係を維持しているのに比べて、北朝鮮は中国との同盟関係があるだけで、ソ連の解体でロシアとは同盟関係がはるかに脆弱な状態にある。

むしろ米ソの軍事均衡を通じた消極的な平和維持がカギだった冷戦時代が持続したとすれば、東北アジアにもヨーロッパを模倣して、東北アジア安保協力会議や東北アジア平和共同体のようなものを交渉してみる可能性が、はるかに濃厚だったかもしれない。韓国、アメリカ、日本の軍事力と北朝鮮、ソ連、中国の軍事力が、対等な(symmetrie)関係にあるので、共同安保や安保協力体の構想がはるかに効き目があることができただろう。しかし、冷戦時代の韓国、北朝鮮の対立と葛藤は、東西ドイツのそれ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尖鋭な緊張関係だったために、ヨーロッパでのような平和共存、共同安保の概念や発想が出てこれなかった。

もうソ連と共産圏の解体でアメリカとNATOの敵がなくなった不均衡の状態、ヨーロッパ

安保協力会議のようなヘルシンキモデルを東北アジアに植えるということは可能性があまりないように見える。世界唯一の超強大国となったアメリカが中国やロシアを向けて対等な関係で共同安保条約を結ぼうというはずはないためだ。

他の一つ難しい点は、周辺強大国日本と中国の微妙な競争意識と緊張関係だ。経済大国日本は、いま平和憲法を改正し、軍事大国へと変貌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ていて、日本の軍国主義(militarism)の復活を警戒する中国は、いま反日感情の爆発で日本の外交的、軍事的進出を警戒している。もしかして台湾海峡で中国と台湾の衝突が生じる場合、米国と日本は台湾の安保のために武器を提供するなど、中国との葛藤を露骨化することになるかも知れない。南シナ海の領土紛争も軍事的衝突の可能性を内包している。

このように東北アジアの今日の状況は、冷戦体制は解体されたが、冷戦時代の陰が晴れないまま、新しい葛藤と対立が芽生えることができる非常に不安な情勢に置かれていることが事実だ。朝鮮半島の南北関係が平和体制を樹立できなくて不安であるだけでなく、第2次大戦後にソ連と日本の間にも平和協定を結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に千島列島の返還など領土紛争の余地が残っている。アメリカと中国の間は、外形的には平穏なようだが、アジアでの覇権と影響力をめぐる競争する関係にあるので、いつかには葛藤関係に陥る潜在的敵対性が今なお残っている。

中国は、核兵器と強大な軍事力を持っている世界大国として東北アジアの平和にだけに関心を持ったのではなく、東アジア全体と南アジアまで影響力を拡大させようとしている。ただ、朝鮮半島において戦争や武力衝突が起きると、アメリカとぶつかるほかはないので、韓国、北朝鮮の平和共存状態を安全に縛っておくのに関心がある。したがって、北朝鮮の核開発やどんな挑発も牽制し、保護者としての役割をつくそうとするだろう。北朝鮮の核危機を解消するために、北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に参加し、アメリカとの共助を維持しようと努力するのもこのような目的のためであろう。

経済大国でありながら軍事力は弱い日本は、アメリカの軍事力と核の傘の保護を受けているので、アメリカの影響力を強化させながらアジアでの役割分担を増大させるのに関心がある。韓国、北朝鮮が接近して平和統一に向かって進む姿を見て、内心では日本は不安に思っている。日本の自衛隊の幹部らは、かなり以前から「もし韓国が統一されるのであれば、韓国、北朝鮮の軍事力は日本の十倍を越える」といい、日本の軍事力の強化を主張してきた。しかも北朝鮮が核武装までするのであれば、統一韓国は核保有国になる。日本も核兵器を保有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世論が高まっている。(Francis Fukuyama, Re-Envisioning Asia, Foreign Affairs, 2005年1、2月)

日本は、アメリカと中国の影響が圧倒的であり、統一韓国がまた、競争の対象になる東北アジアで、主導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東北アジア共同体の形成に特別に関心を見せないでいる。かえって、東南アジア連合(ASEAN)とのきずなを通じて東アジア共同体を成し遂げることが、経済的でも国際政治的でも実利があると見るので、ASEAN+3により多くの関心と努力を注げるようだ。

このように、東北アジアの安保協力体をつくる作業は、現実的にあまり可能性がないように見える。名分は理想的だが、関連当事国(stakeholders)が関心と利害関係を少なく持っているためだ。ただ、日本と中国は、経済的目的で、東北アジア協議体や共同体をつくることには相当関心があるようだ。日本、韓国、中国など、東北アジアの経済力と交易量が、世界経済を左右する程に増大しているので、経済協力と貿易関係を円滑にする地域経済協力体の形成には理解関心を持っているためだ。最近、中国が主導した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の設立がその一例である。

すでに韓国の交易相手国1順位はアメリカを抜いて中国が占めることになった。中国の交易相手国としてもアメリカ日本の次に韓国が3位を占めることになった。

自由貿易協定(FTA)は役に立つが、これは両国間の関係であるだけ地域協議体まではできない。したがって、東北アジアにおいて、経済協力と交流を発展させるためには、何より日本から朝鮮半島を経て中国とソ連、ヨーロッパまでつなぐ鉄道と陸地交通路が開発されることが必要だ。日本と韓国を結ぶ海底トンネルの構想もこのような必要性があるためだ。こうしたことは、諸国がともに含まれた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を通じても考えてみるができるが、範囲がととても広くて、緩い協議体に過ぎないAPECに、このようなプロジェクトを任せるとはできない。また、東北アジア経済協力体には、北朝鮮とロシア、ウクライナ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東北アジアの経済協力体を別につくることが望ましいだろう。

このような点から見ると、東北アジアで北朝鮮の核開発を阻止するための諸国の共通した理解関心と、北朝鮮を経済的に生かすために、地域経済協力体に含ませる目的を結合し、6者会談はなんらかの形態の連結の輪や協議体をつくることのできることであり、これを土台に東北アジアの安保協力共同体を徐々に追求して行けるはずだ。

事実上ヨーロッパの安保協力体(OSCE)も、最初にはヘルシンキにフィンランド政府が招集したヨーロッパ諸国の会議に過ぎなかった。73年から3年間、会議を継続し、決議文を作成しながらヨーロッパ安保協力会議(CSCE)が定例化されただけであり、その後しばしば集まってヨーロッパの共同安保と協力を主管する地域協議体に発展することになったのだ。

今は夢みたいな話になるか知らないが、このようなvisionを持って東北アジア諸国が円滑な対話と協力の道を開くならば、遠からず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保障する東北アジアの協力共同体が生まれ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

このために東北アジア諸国は、政府レベルだけではなく、学界、マスコミ、NGOなど、市民社会の各界の交流と協力、対話を通じて、東北アジアの共同体を形成するための持続的で、体系的な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東北アジア共同体と市民社会の連帯

南北朝鮮の平和共存を保障することができる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の樹立は、果たして可能であり、可能ならばどんな条件と経路を通じて実現されることができようか？

今まで、このような問題は、政治外交や軍事安保の面だけで扱ってきたが、実は平和体制の樹立は外交的、軍事的だけで解決されるのではなく、国民全体の胸の中から平和共存の心(mind)が生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

事実上に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で平和体制を樹立することは、韓国、北朝鮮の国民と東北アジア諸国の市民の胸の中に、共存と平和の心を植える努力がなくては、実現することはできない。また、政府や政策当局者が自国の政治外交的な利害関係にだけにこだわり平和と共存の道を度外視しているとき、これを悟って対決政策から平和政策へと切り替えられるようにするのも、市民社会や学界、宗教界など、市民運動が活発に動く際に可能だろう。これは東西ドイツの平和統一過程を見ても明らかだ。

1969年西ドイツの社民党の首相ウイリー・ブランド(Billy Brandt)が東方政策(Ostpolitik)を遂行した際にも、西ドイツの国民の反東ドイツ、反東ヨーロッパ意識を転換させることができた市民社会の運動があった。そこには西ドイツキリスト教連合会(EKD)の1965年東方覚書(Ostdenkschrift)が主要な役割を果たした。

歴史的に敵対国家と国民的な次元で和解と共存、協力を指向する意識の変化がなくては、敵対政策から平和共存政策への転換は不可能である。南アフリカ共和国の白人政権から黒人政権への転換される過程でもそうであり、南米の軍事独裁政権から民主政部へと変革される過程でもそうであった。血を流さなくて平和と共存体制へと転換させた現代史のドラマの中には、常に知識人、宗教者、女性、労働者など、市民社会の活発な参加と運動が前提となっていた。

東北アジアにおいて共存と協力、共同安保と平和の共同体をつくるためには、国家間の連帯だけではなく、市民社会の連帯が必要であり、そのためには「東北アジア市民社会協議体」のような連帯機構が必要だという主張を、東京大学の平和学教授である坂本さんが以前から力説した。

市民社会の国際的連帯は、地域内の共同安保と経済協力など、平和体制を作るためにも必要だが、今日に世界化の矛盾と逆機能を是正するためにも必須的に要求されているといえる。すでに新自由主義的な市場開放と多国籍投機金融資本の横暴に対抗して、経済的世界化の矛盾した構造と枠組みを是正しようとする反世界化運動が1990年代末から活発に展開され、市民社会の世界的連帯を大きい力と影響力で強化させた。

日増しに深刻化されて発展する情報通信と人的交流の世界化は、多国籍企業や金融資本の世界化だけではなく、労働者、農民のような庶民層の国際的連帯や市民社会団体のグローバル共同体形成にも大きく寄与していることを私たちは目撃している。いまアメリカ政府とペンタゴンが明確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テロ惨事によるアメリカ人の怒りだけではなく、全世界各地で起きている市民社会や平和運動団体の反戦世論だ。今日世界の世論を支配し、左

右するのはCNNだけではなく、数億の人々に何の統制なしであつという間に伝えられるインターネットとEメールだという点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

このような市民社会の影響力と役割を、哲学者カントは、すでに2百年前に見通した。彼は、1795年『永久平和論』で、「恒久的に持続することができる世界平和は、結局国境の制約を越えて世界市民的な意図と理性にともなう共同体が形成されるとき可能だ」と予言した。今日の世界各地で展開する種族や文化、宗教や集団の葛藤と流血戦争を見て、私たちは世界市民的理性を持った市民社会の世界化、市民運動の国際的連帯があつてこそ平和の定着と和解共存が成り立つ可能性があることを、より切実に感じるのである。

国境と人種、宗教、イデオロギーを越える、共存と平和のための世界市民的理性が、最も切実に要求される所が、まさに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地域である。今日の世界は、冷戦体制以後に世界化の時代へと転換されたが、東北アジアと朝鮮半島は、まだ冷戦体制が終結しなかった唯一の地域である。社会主義体制は、中国と北朝鮮、ベトナムにおいて、大きい変化を経ているが、まだ支配理念として生きている。社会主義と資本主義の理念的共存、朝鮮半島における朝鮮民族平和共同体の実現の問題は、東アジアの将来と平和を左右できる決定的な要素である。

幸いに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が、南北対話を開き、平和オリンピックになって、南北関係の改善と米朝対話を仲介し、朝鮮半島での平和の道を摸索できる機会を持ってきた。2年後に続く東京オリンピック(2020)と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2022)が、東北アジアで平和共同体の道を開くこと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

제1세션

한일시민운동의 현황

일본의 시민운동의 현상과 과제

-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마!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의 대처를 중심으로 -

전쟁할 수 없다 · 9조 부수지마! 총결집행동실행위원회
아베 개헌NO! 전국시민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후쿠야마 신고(福山真劫)

I. 들어가며

2017년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박근혜 퇴진운동은 저희들 일본에서 평화·민주주의 운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저런 투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교류하면서 많을 것을 배워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협박 체제가 강화되고 그 대응으로 공화국의 핵무기개발·보유라는 결과로 이어져 조선반도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일 시민에 의한 이러한 집회의 개최는 동아시아의 비핵·평화를 추구하는 큰 흐름에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① 일본의 헌법과 평화의 역사, ② 분열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민주주의 운동의 현상, ③ 2014년에 발족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마!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총결집」으로 약칭)의 출발·대응·과제에 대해서 발제해 보겠습니다.

노동운동에서 노동과제로서의 공동투쟁, 정당의 재편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II. 간단한 헌법과 평화의 역사

1945년 8월 15일, 동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이어온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후 연합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1947년 5월 3일 평화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 헌법에는, 「전문(前文)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발췌)

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미일안전보장조약 조인, 1952년 미일행정협정 체결 · 발효로 이어집니다.

또 세계는 동서의 냉전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미국 1극체제, 미국 주도의 아프간 · 이라크 전쟁, BRICS의 대두와 미국 1극체제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정세의 추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미일안보조약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정부의 군사전략 하에 「전쟁포기와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은 공동화(空洞化)가 지속되어 자위대 · 군사력의 확대와 법정비가 진행, 현재 실질적으로 세계유수

의 「군사대국」이 되어, 「전수방위(專守防衛)」의 범주를 넘어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로 나가 시작하여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50년 경찰예비대 발족, 1952년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개조, 1954년 보안대를 개조하여 자위대발족,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미일지위협정의 제정, 1972년 오키나와 반환, 1978년 미일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 라인), 1997년 신(新)가이드 라인 제정,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PKO),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러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법제, 이라크 특별조치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도 방위예산은, 약 5조2,000억엔입니다.

또 일본의 전후 역사는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2개의 조류, 즉 헌법을 중심으로 일본사회당·일본공산당으로 대표되는 혁신파(헌법이념실현·옹호파)와 자유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파(미일안보체제·헌법공동화(空洞化)·개악파)와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일본사회당은 1996년의 정계재편 과정에서 민주당과 분열) 미국정부의 압력과 일본 보수파의 움직임 속에서 헌법이념실현·옹호파는 계속 후퇴했지만, 최저한의 저지로서, 「전수방위·필요 최소한의 실력」,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위반」, 「비핵 3원칙」, 「무기 수출금지 3원칙」등은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전후체제로 부터의 탈각」을 내세운 제1차 아베정권의 탄생 이후, 교육기본법의 개악, 방위청의 성(省) 승격 등 헌법의 공동화가 더욱 진행되었습니다. 또 2012년 12월 제2차 아베정권이 탄생,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 2014년 도청법 개악, 2015년, 안전보장 관련법(이후 그 본질을 나타내는 「전쟁법」으로 기재), 2017년 공모죄 강행채결로 이어졌고 「전수방위」·「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정부해석이 변경되어 「헌법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아베정권은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개헌세력 3분의 2의 의석수 확보라는 정세에서 다음으로 앞에 설명한 9조의 조문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총리는 2017년 5·3의 개헌과 집회에서 「9조 1항, 2항은 남기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개헌안을 제기했습니다. 자민당은 원칙적으로 「헌법 조문개악」을 정치일정의 시작으로 최단기간, 연내에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민주주의·헌법」이라는 전후의 일본 기본노선의 해체이며,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나라」·군사대국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또 장기정권으로부터 오는 권력의 사유화·남용,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한 빈곤과 격차의 심각화 등 아베 정권의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정치에 대하여,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마! 총결집행동」이나 야당 등의 반격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Ⅲ. 일본의 평화·민주주의운동의 현상

앞서 설명한 일본의 혁신파·헌법이념실현·옹호파의 투쟁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각각의 운동마다 경과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운동은 모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분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평화운동, 원수금(原水爆禁止)운동, 부락해방운동, 장애인운동, 학생운동 그 외에 민주주의운동, 시민운동도 기본적으로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 자유당, 희망의 당, 민진당 등 각각의 지지정당의 차이에 의해, 또 지지정당 없이 정당과는 일정정도 거리를 둔 중립적 입장에 의해, 분기·분열해 왔습니다. 물론 노선상의 대립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본공산당과 그 지지단체·세력인가,

비공산당계인가 라는 관계로 분기·분열해 왔습니다.

노동운동은 1889년에, 연합, 전노련, 전노협으로 분열했고, 원수금 운동은 1965년에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와 ‘원수폭금지 일본국민회의’로 분열, 부락해방운동은 1976년 ‘부락해방 동맹’과 ‘전해련(全解連)’으로 분열, 학생운동은 1960년 안보투쟁 때부터, 4분 5열 했습니다.

평화·헌법옹호의 투쟁도, 분기·분열되면서 변해왔고, 2014년 단계에는 주로 입헌민주당(당시 민주당)·사민당과 관계가 깊은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포럼 평화·인권·환경(약칭 평화포럼)계, 일본 공산당과 관계가 깊은 「전쟁국가 만들기 중단! 헌법을 지켜 사는 공동센터」(‘헌법공동센터’로 약칭)계, 정당과 일정 거리를 두는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마 실행위원회」(‘9조를 부수지마 실행위원회’로 약칭)계의 3단체로 분열되어 투쟁이 있었습니다. 탈원전 운동도, 이라크전쟁 반대운동도, 각각으로 분열되어서 투쟁해왔습니다. 이 3단체 아래에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계의 「9조를 부수지마 실행위원회」의 시민단체 호소에 의해 일정 공동투쟁, 과제에 대한 1일 공동투쟁은 있었습니다만, 각각 따로따로 운동을 만들어가고, 각자 투쟁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각각의 운동이 분열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중견층, 청년층은 분열의 계기나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정(國政)수준의 선거투쟁에서도 야당의 공동투쟁 없이 뿔뿔이 흩어진 선거투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의원 선거구, 참의원 1인구에서는 자민당, 공명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 야당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예외적으로 야당연립 정권이 있었지만 전후 정권을 잡아온 것은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정당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대중운동, 뿔뿔이 흩어진 선거투쟁, 이래서는 「전쟁하는 나라·군사대국」으로 돌진하는 아베정권의 정책전환, 타도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열되어 있는 조직의 통일, 공동투쟁 조직 형성이 운동을 담당해온 사람들의 바람이며 최대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2012년 이후 아베정권에 의한 오키나와의 민주주의를 파괴와 기지건설 강행,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행사 각의 결정 등, 일본의 평화·민주주의·탈원전 운동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충격이었고 동시에 각각의 분열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이 있다고 해도 분열하여 운동을 약화시킨 책임을 통감하여, 운동의 통일과 공동조직 형성으로 일거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앞서 설명한 3단체를 중심으로 약 30개 단체에서 「전쟁법 폐기」를 목표로 공동투쟁 조직·「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마!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립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헌민주당(당시는 민주당)·사회민주당계의 「평화포럼」과 일본공산당계의 전노련이 공동투쟁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분열을 지속해온 전후평화·민주주의 운동진영에는 첫 경험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분열해 온 운동경과에 관한 상호비판은 하지 않고 우선 앞에 있는 「전쟁법 폐기」라는 하나의 목표로 공동투쟁에 나섰습니다. 평화·민주주의·헌법옹호를 목적으로 해온 시민, 운동단체는 운동이 크게 진전할 것을 예상했고, 뜨거운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항 투쟁형의 싸움방식에서 승리를 향하는 형식의 운동으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기반한 재출발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종래의 경과를 가져오거나, 각각의 단체별로 이해의 수준도 다양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도쿄 정도의 공동투쟁조직이 만들어지는 곳,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다양합니다만 각각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도 공동투쟁의 체제와 운동의 충실이라는 면에서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도 노동운동에서 연대·공동투쟁은 어려운 점이 많고 연합, 전노련, 전노협으로 분기·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합 내 평화포럼 가맹조합원은 약150만이며, 전노련, 전노협과 함께 총결집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 참가조합원의 다수도 시민으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옹호 운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9조의 모임」도 이 시점에는 아직 조직적으로는 미가맹 상태이지만 2017년 9월에 결집합니다.

IV. 총결집 운동의 출발·대응·과제

1) 전쟁법 폐안운동

① 전쟁법 폐안 운동은, 2014년12월 결성된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가 몰두하여 일본의 평화·민주주의운동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운동의 확대라는 점에서 운동 풍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셀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학자의 모임으로 약칭),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엄마의 모임(엄마의 모임으로 약칭), 입헌 데모크라시 모임, 종교자 모임, 탈원전 관련단체, 법률가 단체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소속이 없는 시민세력이, 각각 자립적하면서 총결집을 제기하는 행동에 참가했습니다.

② 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자유당이 총결집에 대응·집회에 연대하며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야당 제1당인 민주당과 공산당이 공동 투쟁하는 것도 획기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기세가, 47개의 도도부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도쿄에서의 주요활동은 국회의원 회관 앞 집회와 국회포위 행동, 히비야(日比谷) 야외 음악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집회였습니다. 최초의 집회는, 2015년 1월26일 2500명, 그 후 의원회관 앞 집회는, 전쟁법 강행채결까지, 19회를 2,000~5,000여이 참가자했습니다. 또 국회포위 행동 등 대집회도 5월3일 도쿄에서 300,000 명, 5월24일 15,000명, 6월14일 25,000명, 6월24일 30,000명, 7월14일 20,000명, 7월26일 25,000명, 8월30일 120,000명, 참의원에서 강행채결 진행을 시작한 9월은, 9월 9일 5,500명, 12일 22,000명, 14일 45,000명, 15일 10,000명, 16일 35,000명, 17일 30,000명, 18일 40,000명 이상, 24일 5,000명이 참가했습니다.

④ 2015년 9월 19일 강행채결로 전쟁법이 성립되었습니다. 폐안을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새로운 전망을 만들었습니다.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는, 공동투쟁 체제에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다음 공동투쟁의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전쟁법 폐안운동 그 후의 전개

전쟁법 성립 이후에도 전쟁법의 폐기와 공모죄(共謀罪)의 폐기를 목표로 하여,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의 지속과 투쟁 방침을 결하여 대응했습니다. 구체적 방침은 ① 정세에 대응한 대처, ② 매월 19일에 「19일의 행동」을 정례화하고, 국회 앞·전국에서 행동한다. 도쿄에서는 매달 약 2,0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③ 전국에서, 5·3 헌법집회 및 정세에 대응하여 대행동을 전개한다. 2016년 5월 3일 약 6만명, 2017년 5월 3일 6만명, 11월 3일 6만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④ 전쟁법 폐안의 서명운동 시작, 전국에서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2016년 6월, 1,630만부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⑤ 전국에서 전쟁법은 헌법위반이라는 「위헌소송」진행 ⑥ 운동과제를 확대해서 대응. 오키나와의 기지건설 강행, 공모죄의 신설은 전쟁하는 국가·군사대국화로의 일환이라는 것으로, 오키나와와 연대해서의 대응, 대집회, 국회포위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⑦ 공모죄 폐안운동에서는 2017년 6월 15일 강행채 결되었지만, 반대 서명운동(181만부), 각종집회를 진행했습니다.

V, 시민연합의 결성과 전개

1) 시민연합의 결성

2014년 12월 선거결과, 당시 아베자공(安倍自公) 정권의 자유민주당, 공명당 여당이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 2를 획득하였고 제1야당은 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유신 의당, 기타였습니다.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자유당 4당은, 2015년 총집결과 연대하여 「전쟁법」 폐안을 목표로 싸워왔습니다.

전쟁법에서 시민운동과 야당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도 전쟁법 폐안운동을 담당할 중심 5단체(총결집, 쉐즈, 엄마의 모임, 학자의 모임,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5년 12월 「안보법제의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추구하는 시민연합」(시민연합으로 약칭)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선거 투쟁, 2017년 중의원선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선자가 1명밖에 없는 선거구에서 야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경쟁했습니다. 특히 다른 야당과 공산당의 후보조정, 후보단일화는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자민당·공명당에 이길 수 없습니다.

2) 2016년 참의원선거

참의원선거에서는 전쟁법에서 야당공동투쟁의 경과에 기반 하여, 시민연합이 민주당, 공산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야 4당과 「야당의 정책협정」을 맺고, 1인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유도하여, 45개 선거구 중 32개 1인구 전체에서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고, 11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참의원에서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해서, 여야당 역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선거에서도 야당이 공동투쟁하여 싸우면 반드시 전진한다는 전망은 확실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2017년 10월 중의원선거

중의원선거의 싸움은 아베수상이 야당의 임시국회개최 요구를 물리치고 「국난돌파해산,

북한위기 충격,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산을 단행했습니다. 야당은 민진당이 입헌 민주당과 희망의 당으로 분열된 가운데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베 수상의 목적은 지지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가계학원(加計学園) 문제 등 학교법인의 국유지매입이나 학부시설 인가를 둘러싼 권력의 사유화를 감추고 북한 핵문제의 위기를 부채질 하여 야당 특히 민진당, 희망의 당의 준비부족을 기회로 삼아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9월 25일 지역정당이었던 「도민 퍼스트의모임」 중심으로 「희망의 당」이 결성되었고 9월 28일 민진당이 희망의 당으로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져, 야당공동투쟁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참의원 단계에서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자유당의 사이에 형성된 야당공동투쟁이 깨졌습니다. 선거고시 10일, 투표 22일이라는 빠듯한 시점에 노선상 희망의 당에 입당할 수 없는 의원을 중심으로 10월 3일 입헌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창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연합은 입헌 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에 3당과 정책협정을 체결하고, 289개의 소선거구에서 후보자의 단일화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이 혼란한 가운데 후보자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89개의 소선거구에서 입헌 민주당의 후보자는 63명, 여러 사정 중에서 공산당과 경합은 21개 선거구, 희망의 당과는 39개 선거구, 유신의 당과는 12선거구에서 경합했습니다. 공산당은, 67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철회했지만 22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냈습니다. 또 단일후보가 된 선거구에서 공동투쟁 체제도 대부분은 불충분한 가운데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결과 당선자 465명 가운데, 자민 284, 입헌 55, 희망 50, 공명 29, 공산 12, 유신 11, 사회민주 2, 기타 22로, 중의원에서도 결과적으로 자공(自公)에 3분의 2의석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획득투표수는 자민당 1,855만, 공명 697만, 자공(自公) 합해 2,554만표. 다른 쪽 야당은 입헌 민주당 1,100만, 공산당 440만, 사회민주당 94만, 희망의 당 968만을 합쳐서 2610만 표로, 민진당의 분열이 없었으면 야당이 투표수에서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또 비례구에서 자민당은 33%(유권자비17.3%)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또 「전쟁법 폐안」, 「9조 개악반대」, 「오키나와와의 연대」, 「탈원전」을 명확히 한 입헌 민주당이 야당 제1당의 위치를 획득하고, 헌법 9조 옹호세력의 강화·재생에 관한 전망을 확실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선거후의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수상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지지는 적고, 야당의 분열과 야당공동투쟁의 불충분성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연합도 야당의 체제강화를 기대하면서, 2019년 참의원선거를 향해, 체제를 강화하고, 야당공동투쟁의 재구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VI, 이후 과제의 정리

저희들의 기본전략은 아베의 폭주를 막고, 평화·민주주의·헌법이 실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총집결과 야당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싸움으로, 아베자공(安倍自公)정권을 포위하고, 정책전환·타도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총집결과 야당공동투쟁에서 획기적인 공동투쟁 조직을 만들고, 운동을 크게 고양시켰습니다만, 아베 정권을 타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개혁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1) 총집결 과제의 정리

총집결은, 총집결을 넘는 총집결 운동을 목표로 하여 몇 가지의 과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① 총집결의 체제강화와 만들어 온 운동을 지속·강화하는 것, ② 전국적으로 불균등한 점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 것, ③ 반대운동에서 실현운동으로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 하는 것, ④ 헤노코(辺野古) 매립 공사의 본격화에 대항하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대의 투쟁과 더욱 강하게 연대하는 것, ③ 년 200만 엔 이하의 저소득층 1,000만 명, 비정규노동자가 2,000만 명을 넘고,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한 가운데 생활이 심각화하고 있는 격차·빈곤사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 ④ 연대의 고리를 확대하고 운동 참가자를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것. 특히 학생, 청년, 생활 곤란 층의 연합 등으로 확대하는 것, ⑤ 아베의 9조 개헌에 대항하기 위해 9조의 모임과 함께, 아베 9조 개헌NO! 전국시민 행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 3,000만 서명운동을 성공시키는 것, ⑥ 정보발신 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2) 야당공동투쟁 시민운동과 야당의 연대강화

현재 정계재편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시민연합은 정당이 아니고, 「입헌야당의 지원조직」이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각각 정당의 주체성 강화를 기대합니다. 특히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자유당과 제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9조의 개정 반대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민진당, 희망의 당에 대한 활동을 강화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 과제는, ① 시민연합의 체제를 강화하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② 당면 과제로 시민연합과 야당공동투쟁의 정책협정을 검토·합의하는 것, ③ 참의원 선거 때까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거듭하는 것, ④ 참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정당 간 정책협정, 선거태세의 제휴강화, 후보자 단일화 등 본격적인 야당 공동투쟁을 위해서, 전국의 시민연합 활동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VII 나오며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평화확립 노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부채질 하고 헌법 9조의 개악·군사대국으로 돌진하는 아베 정권타도를 목표로 하여, 저희들도 총집결, 전국시민행동, 시민연합, 야당공동투쟁으로 싸움의 전진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第1セッション

韓日市民運動の現状

日本の市民運動の現状と課題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の取り組みを中心に—

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
安倍改憲NO！全国市民アクション実行委員会
共同代表 福山 真 劫

I、はじめに

2017年を中心に闘われた韓国のパククネ退陣運動は、私たち日本の平和・民主主義運動を担ってきたものにとっては、憧れであり、あのような闘いを作りたいというのが目標でした。今回シンポジウムで交流する中で、多くのものを学んで帰りたいと思います。

また米韓日を中心とする勢力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の軍事的・経済的脅迫体制が強化され、対抗しての共和国の核兵器開発・保有という結果、朝鮮半島の危機は深刻となっています。こうした時期、日韓の市民によるこうした集会の開催は、東アジアでの非核・平和をめざしての大きな流れに貢献します。

私は、簡単に①日本の憲法と平和の歴史、②分裂している日本の平和・民主主義運動の現状、③2014年に発足した「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総がかり」と略称）の発足・取り組み・課題について提起させていただきます。

労働運動の労働課題での共闘、政党の再編成については、ここでは触れません。

II 簡単な憲法と平和の歴史

1945年8月15日、東アジアで侵略戦争を続けた日本は、連合国に無条件降伏し、連合国による占領という事態を受け、1947年5月3日、平和憲法を公布しました。その憲法には、「前文 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こ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抜粋）

9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とあります。その後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米安全保障条約調印、1952年日米行政協定の締結・発効と続きます。

また世界は、東西の冷戦体制、ソビエト社会主義体制の崩壊、米国一極体制、米国主導のアフガン・イラク戦争、BRICSの台頭と米国一極体制の動揺と続いています。そうした国際情勢の推移の中で、日本では、日米安保条約体制を基本とする米政府の軍事戦略の下で、「戦争放棄と戦力の不保持、交戦権は認めない」とする日本国憲法は空洞化をつづけ、自衛隊・軍事力の拡大と法整備は進み、現在実質的に世界有数の「軍事大国」になり、「専守防衛」の範疇を超え、「自衛隊の海外派兵」への道を進み始め、東アジアにおける軍事的脅威を作り出しています。

具体的には、1950年警察予備隊発足、1952年警察予備隊を保安隊に改組、1954年保安隊を改組し、自衛隊発足、1960年日米安保条約の改定、日米地位協定の制定、1972年沖繩返還、1978年日米防衛協力の指針（ガイドライン）、1997年新ガイドライン制定、1992年国際平和協力法（PKO）、1999年周辺事態法、2001年テロ特措法、2003年有事法制、イラク特措法と続きます。2018年度の防衛予算は、約5兆2000億円です。

また日本の戦後の歴史は、そうした情勢を背景に、2つの潮流、つまり憲法を中心に、日本社会党・日本共産党に代表される革新派（憲法理念実現・擁護派）と自由民主党に代表される保守派（日米安保体制・憲法空洞化・改悪派）との闘いの歴史でした（日本社会党は1996年の政界再編成のなかで民主党と分裂）。米国政府の圧力と日本の保守派の動きの中で、憲法理念実現・擁護派は後退を続けましたが、最低限の歯止めとして、「専守防衛・必要最小限の実力」、「集团的自衛権の行使は違憲」、「非核3原則」、「武器輸出禁止3原則」等は確保してきました。

しかし、2006年、「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を掲げた第1次安倍政権の誕生以降、教育基本法の改悪、防衛庁の省への昇格等憲法の空洞化がさらに進みました。また2012年12月第2次安倍政権が誕生し、2013年、特定秘密保護法、2014年盗聴法の改悪、2015年、安全保障関連法（以降その本質をあらわす「戦争法」と記載）、2017年、共謀罪強行採決と続き、「専守防衛」・「集团的自衛権行使は違憲」という政府の解釈が変更され、「憲法の空洞化」がさらに加速しました。

現在、安倍政権は衆・参両院における改憲勢力3分の2の議席数確保という情勢の中で、次は前述した9条の条文改正を狙っています。そして安倍首相は、2017年5・3の改憲派の集会で「9条1項、2項は残し、憲法に自衛隊を明記する。2020年から施行する。」という改憲案を提起しました。自民党は、建前としての「憲法の条文改悪」を初めて政治日程に乗せ、最短で年内にも、実現し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平和・民主主義・憲法」という戦後の日本の基本路線の解体であり、本格的に「戦争する国」・軍事大国へと突き進むことです。また長期政権からくる権力の私物化・乱用、アベノミクス政策を原因とする貧困と格差の深刻化など安倍政権の矛盾が深刻となっています。こうした安倍政治に対して、「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や野党などの反撃の闘いが高揚しようとしています。

Ⅲ日本の平和・民主主義運動の現状

① 前述した日本の革新派・憲法理念実現・擁護派の闘いの歴史は分裂の歴史でした。それぞれの運動ごとに経過はありますが、主要な運動はすべてと言っていいほど分裂して、現在に至っています。労働運動、平和運動、原水禁運動、部落解放運動、障害者運動、学生運動その他民主主義運動、市民運動も基本的に、立憲民主党、社会民主党、日本共産党、自由党、希望の党、民進党などそれぞれの支持政党の違いによって、また支持政党を持たずに、政党とは一定の距離をおく中立的立場によって、分岐・分裂をしてきました。もちろん路線上の対立はあるのですが、基本的には、わかりやすく言えば、日本共産党とその支持団体・勢力なのか、非共産党系なのかという関係で分裂・分岐してきました。

② 労働運動は1889年に、連合、全労連、全労協に分裂、原水禁運動は1965年に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と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に分裂、部落解放運動は、1976年部落解放同盟と全解連に分裂、学生運動は1960年安保闘争のころから、4分5裂しました。

平和・憲法擁護の闘いも、分岐・分裂しながら推移し、2014年段階では、主には、立憲民主党（当時は民主党）・社民党と関係の深い「戦争させない1000人委員会」・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略称平和フォーラム）系、日本共産党と関係の深い「戦争する国づくりストップ！憲法を守り生かす共同センター」（憲法共同センターと略称）系、政党と一定の距離を置く「解釈で憲法9条を壊すな実行委員会」（9条を壊すな実行委員会と略称）系の3団体による分裂した闘いとなっていました。脱原発運動も、イラク戦争反対運動も、それぞれで分裂して闘われてきました。この3団体のもとに多くの市民団体、労働団体等が結集しています。

そして中立系の「9条壊すな実行委員会」の市民団体の呼びかけによる一定の共闘、課題ごとの一日共闘はありましたが、それぞれが別々に運動を組み立て、それぞれで闘うというのが基本でした。それぞれの運動は分裂して長い年月を経過し、中堅層、青年層には、分裂の契機や理由も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す。

③ もちろん国政レベルでの選挙闘争においても、野党の共闘はなくてバラバラの選挙闘争でした。とりわけ小選挙区制を基本とする衆議院選挙区、参議院の1人区では、自民党、公明党が候補者を一本化して選挙戦を闘っているのに、野党勢力がバラバラで闘ったのでは勝てるはずはなく、例外的に野党連立政権はありましたが、戦後政権を担ってきたのは、自由民主党を中心とする保守政党です。バラバラの大衆運動、バラバラの選挙闘争、これでは「戦争する国・軍事大国」へ突き進む安倍政権の政策転換、打倒を勝ち取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故に分裂している組織の統一、共闘組織の形成は、運動を担ってきたものの願いであり、最大目標の一つでした。

④ そうした中で、2011年3月の東京電力福島原発事故の発生、2012年以降の安倍政権による沖縄の民主主義を破壊しての基地建設の強行、2014年7月、集団的自衛権行使の閣議決定など、日本の平和・民主主義・脱原発運動にとって、かつてない深刻な事態が進行しました。このことは運動に責任を持っている者たちと市民に衝撃を与えると同時にそれぞれの分裂を正当化するための言い分はあったとしても、分裂して運動を低めている責任を痛感させ、運動の統一と共闘組織の形成へと一挙に動き出させました。2014年12月、前述の3団体を中心に、約30団体で、「戦争法廃案」めざしての共闘組織・「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を結成しました。

これは、結果として、中立系の市民団体を中心としながら、立憲民主党（当時は民主党）・社民党系の「平和フォーラム」と日本共産党系の全労連が共闘組織を作るであり、分裂を重ねてきた戦後平和・民主主義運動では、初めての経験であり、画期的な事件です。過去の分裂をしてきた運動経過にかかわる相互批判はせずに、とりあえず横において、「戦争法廃案」の1点で共闘に踏みだしました。平和・民主主義・憲法擁護をめざしてきた市民、運動団体は、運動が大きく前進する可能性を予感し、熱い期待が集まりました。それは、抵抗闘争型の闘争から、勝ちに行く型の運動へ転換するのだという新しい問題意識のもとと再出発でもあります。こうした事態に対して、従来の経過を引きづり、それぞれの団体ごとで、理解の水準も多様であり、全国的に見て東京並みの共闘組織ができているところ、全然進んでいないところと多様ですが、それぞれ試行錯誤を繰り返しながらも、共闘体制と運動の充実へと確実に前に進んでいます。

⑤ 残念ながら現在も労働運動における連携・共闘は困難が多く、連合、全労連、全労協と分岐・分裂したままの状態です。しかし連合の内の平和フォーラム加盟組合員は約150万人であり、全労連、全労協とともに、総がかり運動に参加しています。また連合参加組合員の多くも、市民として参加しています。

また憲法擁護運動では、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九条の会」もこの時点では、まだ組織としては未加盟のままですが2017年9月に結集します。

IV総がかり運動の出発・取り組み・課題

1) 戦争法廃案運動

①「戦争法廃案」運動は、2014年12月結成された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によって生まれ、日本の平和・民主主義運動の新しい出発点となりました。

運動の広がりという点で運動風景が一変しました。シールズ（SEALDs=自由と民主主義のための学生緊急行動）、安全保障関連法案に反対する学者の会（学者の会と略称）、安保関連法案に反対するママの会（ママの会と略称）、立憲デモクラシーの会、宗教者の会、脱原発関連団体、法律家団体などの諸団体と合わせて、かつてない勢いで市民が、それぞれ自立しながら、総がかりの提起する行動に参加しました。

②民主党、共産党、社民党、自由党が総がかりの取り組み・集会に連携して運動参加をしました。野党第1党の民主党と共産党が共闘することも画期的です。

こうした運動の勢いが、47の都道府県、全国へ拡大しました。

③東京における主要な取り組みは、国会議員会館前集会と国会包囲行動、日比谷野外音楽堂を中心とする大集会でした。最初の集会は、2015年1月26日2500人、その後議員会館前集会は、戦争法強行採決まで、19回を数え2000人から5000人の範囲で参加者がありました。また国会包囲行動など大集会も5月3日東京で3万人、5月24日15000人、6月14日25000人、6月24日30000人、7月14日20000人、7月26日25000人、8月30日120000人、参議院での強行採決に進みだした9月は、9月9日5500人、12日22000人、14日45000人、15日10000人、16日35000人、17日30000人、18日40000人以上、

24日5000人の参加でした。

③2015年9月19日強行採決され、戦争法が成立しました。廃案を勝ち取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が、確実に新しい展望をつくりました。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は、共闘体制に確信を持つと同時に次の共闘の方針を明確にしました

2) 戦争法廃案運動のその後の展開

戦争法成立以降も、戦争法の廃案と共謀罪の廃案をめざすとして、「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の継続と闘う方針を決定し、取り組みました。具体的方針は、①情勢に対応した取り組み、②毎月19日に「19日の日の行動」として定例化し、国会前・全国で行動をする。東京では、毎月約2000人が参加しています。③全国で、5・3憲法集会及び情勢に対応して大

行動を展開する。2016年5月3日約6万人、2017年5月3日6万人、11月3日6万人が参加しています。④戦争法廃案の署名運動を開始する。全国で国会請願署名運動を展開し、2016年6月、1630万筆を国会に提出しました。⑤戦争法は違憲だと全国から、「違憲訴訟」に取り組む。⑤運動課題を拡大して取り組む。沖縄への基地建設強行、共謀罪の創設は、戦争する国・軍事大国化への一環であるとして、沖縄と連帯しての取り組み、大集会、国会包囲運動に取り組みました。⑥共謀罪廃案運動の取り組みでは、2017年6月15日強行採決されましたが、反対署名運動（181万筆）、各種集会に取り組みました。

V、市民連合の結成と展開

1) 市民連合の結成

2014年12月選挙結果、当時の安倍自公政権は、自由民主党、公明党の与党で衆議院の議席数の3分の2を獲得し、野党第一党は民主党で、共産党、社民党、自由党、維新の党、その他です。民主党、共産党、社民党、自由党の4党は、2015年、総がかりと連携して「戦争法」廃案めざして闘ってきました。

戦争法における市民運動と野党共闘の成果を踏まえて、続く2016年参議院選挙においても、戦争法廃案運動を担った中心5団体（総がかり、シールズ、ママの会、学者の会、立憲デモクラシーの会、）で闘うことをめざし、2015年12月「安保法制の廃止と立憲主義の回復を求める市民連合」（市民連合と略称）以降を結成しました。

そして、2016年参議院選挙闘争、2017年衆議院選挙闘争を闘いました。

従来当選者1人しかいない選挙区で、野党がそれぞれ候補者を出し、闘っていました。とりわけ、他の野党と共産党の候補者調整、候補者の一本化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では、自民党・公明党に勝てません。

2) 2016年参議院選挙

参議院選挙では、戦争法における野党共闘の経過を踏まえて、市民連合が民主党、共産党、自由党、社民党の野党4党で、「野党との間で政策協定」を結び、1人区での候補者の一本化の後押しし、45選挙区中32の1人区すべてで統一候補をつくりあげ、11選挙区で勝利しました。画期的なことでした。

結果として、与党に参議院でも、3分の2の議席を与え、与野党逆転は勝ち取れませんでした。次の選挙も野党共闘で闘えば必ず前進するという展望は確実につくることができました。

3) 2017年10月衆議院選挙

衆議院選挙闘争は、安倍首相が野党の臨時国会開催要求をはねのけ、「国難突破解散 北朝鮮の危機ありと少子高齢化の危機」として、突然の解散に踏み切りました。野党は民進党が立憲民主党と希望の党に分裂する中で闘われました。

安倍首相の狙いは、支持率が低下する中で、森友（もりとも）学園・加計（かけ）学園問題

など学校法人の国有地買取りや学部新設認可をめぐる権力の私物化を隠し、北朝鮮核問題の危機をあおり、野党とりわけ民進党、希望の党の準備不足につけ込み勝利するという戦略でした。9月25日、地域政党であった「都民ファーストの会」が中心となり、「希望の党」が結成され、9月28日、民進党が希望の党に合流するという事態となり、野党共闘が迷走し、参議院段階で、民進党、共産党、社民党、自由党の間で形成された野党共闘がつぶれました。選挙の告示が10日、投票22日というぎりぎりの段階で、路線上で希望の党に入党できない議員を中心に10月3日立憲民主党が急遽立ち上がりました。

そうした事態の中で、市民連合は、立憲民主党、共産党、社民党の3党と政策協定を結び可能な限り、289の小選挙区で候補者の一本化をめざしましたが、野党の混乱の中で、不十分な候補者調整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結果として、289の小選挙区で、立憲民主党の候補者は63人で、様々な事情の中で、共産党との競合は21選挙区、希望の党とは39選挙区、維新の党とは12選挙区で競合しました。共産党は、67選挙区で候補者を取り下げましたが、222選挙区で候補者を擁立しました。また統一候補となった選挙区での共闘体制も多くは不十分なまま選挙戦に突入しました。

選挙結果は、当選者465のうち、自民284、立憲55、希望50、公明29、共産12、維新11、社民2、その他22で、衆議院でも結果として、自公で3分2の確保を許してしまいました。

しかし、獲得投票数は、自民党1855万、公明697万、自公あわせて2554万票。他方、野党は立憲民主党1100万、共産党440万、社民党94万、希望の党968万を合わせて2610万票で、民進の分裂がなければ、野党が投票数では勝利しています。また比例区では、自民党は33%（有権者比17・3%）しか勝ち取れていません。

また「戦争法廃案」、「9条改悪反対」、「沖縄との連帯」、「脱原発」を明確にした立憲民主党が野党第1党の位置を獲得し、憲法9条擁護勢力が強化・再生への展望を確実に作り上げました。選挙後の世論調査でも、安倍首相や個別政策への支持は少なく、野党の分岐と野党共闘の不十分性が敗北の原因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

市民連合も野党の体制強化を期待しながら、2019年の参議院選挙に向け、体制を強化し、野党共闘の再構築へ動き出しています。

VI、今後の課題の整理

私たちの基本戦略は、安倍の暴走をとめ、平和・民主主義・憲法の実現する時代を作り出すために、総がかりと野党共闘を中心とする闘いで、安倍自公政権を包囲し、政策転換・打倒を勝ち取ることです。総がかりと野党共闘で画期的な共闘組織をつくり、運動を大きく高揚させました、安倍政権を打倒できていません。不断の改革と闘いが求められています。

1) 総がかりの課題の整理

総がかりは、総がかりを超える総がかり運動をめざして、いくつかの課題が見えています。①総がかりの体制強化と作り上げてきた運動の継続・強化すること、②全国の取り組みがアンバランスであり、この克服がもとめられていること。③反対運動から実現運動へのさらなる運動の転換をすること、④辺野古（へのこ）埋め立て工事の本格化に対抗する沖縄の基地反対の

闘いにさらに強く連帯すること、③年200万円以下の低所得層が1000万人を超え、非正規労働者が2000万人を超え、社会保障制度が不十分な中で、生活が深刻化している格差・貧困社会への取り組みを強化すること、④連帯の輪を拡大し、運動参加者を爆発的に拡大すること。とりわけ、学生、若者、生活困難層の連合などへ拡大すること、⑤安倍の9条改憲に対抗するために、九条の会とともに、安倍9条改憲NO!全国市民アクションをさらに活性化すること、3000万署名運動を成功させること、⑥情報発信体制を強化すること等です。

2) 野党共闘 市民運動と野党の連携強化

市民連合は、現在政界再編成の動きがありますが、政党ではなく、「立憲野党の支援組織」という原則を踏まえ、それぞれの政党の主体性強化を期待します。とりわけ、立憲民主党、共産党、社民党、自由党と連携を強めようとしています。また憲法9条の改正に反対する政党になるよう民進党、希望の党にも働きかけを強化します。

今後の具体的課題は、①市民連合の体制を強化し全国のネットワークを強化すること。②当面の市民連合と野党共闘の政策協定を検討・合意すること、③参議院選挙までの間、政策を実現するための共同行動を重ねること、④参議院選挙は、政党間政策協定、選挙態勢の連携強化、候補者一本化など本格的野党共闘とするため、全国の市民連合で働きかけを強化すること等です。

VII) おわりに

朝鮮半島では、大韓民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間で、平和確立への努力が重ねられています。

朝鮮半島での危機をあおり、憲法9条の改悪・軍事大国へ突き進む安倍政権打倒めざして、私たちも、総がかり、全国市民アクション、市民連合、野党共闘で闘いの前進を勝ち取ります。

제1세션

한일시민운동의 현황

촛불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안진걸(참여연대 시민위원장/전 퇴진행동 대변인/상지대 초빙교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총체적으로 불법·부도덕한 정권에 재벌·기득권 특혜 정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매우 철저하게 차별적인 모습과 민주성·개혁성·진보성 보여주어야 합니다.”

- 촛불시민혁명 이어 노동과 민생이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 숨 쉬며, 평화와 화해가 넘치는 좋은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1. 잘못된 정치권력에 대한 주권자 국민들의 대응의 가장 모범적이고 역동적인 형태 : 2016~2017년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1) 5.18에서 6월 항쟁으로, 6월 항쟁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6월 항쟁의 노래, <6월의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5.18광주민중항쟁과 고 백남기 농민의 투혼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들은 일어섰다, 오직 맨주먹!” 5.18 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최근의 촛불시민혁명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뜻 깊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고 백남기 어르신 또한 이 땅의 민중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 맨몸으로 일해오고 맨몸으로 일어선 분이고 맨몸으로 투쟁한 분이라는 점에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5.18 정신과 6월 항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고 백남기 어르신의 삶과 억울한 죽음이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우리들은 일어섰다 오직 맨주먹
피눈물로 동지를 불렀다
독재타도 민주쟁취 하나된 소리
민주와 해방의 나라 이뤘다
아 우리들의 수난 우리들의 투쟁
우리들의 사랑 우리의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은 너와 나
손 맞잡은 우리 진진하는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은 너와 나
투쟁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 해방 통일의 우리 되살아오는 유월에

아 해방 통일의 우리 되살아오는 유월에
 아 우리들의 수난 우리들의 투쟁
 우리들의 사랑 우리의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은 너와 나
 손 맞잡은 우리 전진하는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은 너와 나
 투쟁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 해방 통일의 우리 되살아오는 유월에
 아 해방 통일의 우리 되살아오는 유월에”

2)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된 박근혜 정권 퇴진 범국민운동

한국의 대작가 조정래는 위대한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민초들의 신산한 삶을 ‘한의 모닥불’로 집약해 표현한 적이 있다. 그렇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초들의 한이 한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한의 물줄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의 모닥불과 한의 물줄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 한땀 한 세월을 뒤집기 위해 저항하고 부딪혔던 우리 국민들의 ‘저항의 모닥불’과 ‘투쟁의 물줄기’가 있었기에 지금만큼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핏빛 5월과 뜨거운 6월이 오면 가슴이 한없이 부풀어 오르기만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처절한 투혼과 87년 6월 항쟁의 그 뜨거웠던 함성이 동시에 되살아나 역사의 조율증을 겪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촛불시민혁명과 국민들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5.18 추모식에서 현 정부는 5.18 민중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촛불시민혁명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4.19에서 부산-마산 민주항쟁(부마항쟁)과 5.18로, 5.18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6월 민주항쟁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그렇게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 민초들의 투쟁과 저항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놀라운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국민들의 공유가 있었기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2016년을 살았고, 2017년을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는 지난 여섯 달 동안(2017년 10.29일~2017년 4.25일까지 총 23차례 범국민촛불행동 진행 : 2016년 10.27일 처음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평일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10.29일 1차 범국민행동부터 4월 25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무려 1700여만명이 참여했다. 평일 촛불집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참여자들까지 합산하면 연인원 2천만명이 족히 넘을 것이다) 타올랐던 촛불 집회를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는 그만큼 커다란 사건이었고, 한국 국민들 모두가 촛불집회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과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의 광장에서의 촛불집회를 전후해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모임과 지인들과의 만남 약속을 병행해서 잡기도 했으니, 개인의 삶과 역사적 격변이 조화를 이룬 그 경이로운 시절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던 것이다. 그 여섯 달 동안 계속되었던 촛불집회는 그 열기와 규모, 성과와 변혁의 정도가 촛불시민혁

명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촛불시민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의 악행과 실정에 대한 깊은 실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들과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희망과, 재벌·대기업·특권층·부동산 부자들만의 한국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범 국민적인 항쟁으로 승화되었기에 세계가 깜짝 놀란 주권자혁명(=촛불시민혁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작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헬(hell)조선’이라는 한국에서 극심한 민생고·불평등·양극화·불공정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은 비참하게도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지, 노동시간은 최장, 산업재해도 최악의 수준이라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이 엉뚱하게 재벌총수 집단과 최순실·정유라 일당 등에게만 부당한 특혜와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악용되었고,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한국 국민들이 ‘대폭발(big bang)’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5.18과 6월 항쟁을 계승한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도 하고 대충 끝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촛불시민혁명은 다섯 가지 의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1)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넘어 박근혜 정권에서 온갖 불법행위와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며, 2) 이번 사태의 공범이고 주범이자 박근혜 정권의 최고 적폐 중 하나인 재벌의 뇌물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 역시 끝나지 않았으며, 3)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 행태 등으로 헬조선·민생고·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4) 한국 사회의 안정성·공공성의 확보와 제고, 일하는 국민들이(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존중받는 민주주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5) 마지막으로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예방하고 거부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원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감사원개혁·공직사회개혁 등)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번 촛불시민혁명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 문제로만 좁혀서 봐도 지금 한국 국민들은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라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월급여 및 월 소득은 지금보다 더욱 오르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갑을 문제가 사라지기를 염원하고 있고, 세계최악의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이자비 등으로 모두 사라져서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버거운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갈구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도 각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에게 큰 근심이 되고 있는 교육·주거·의료·교통·통신 등 공공분야의 공공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즉, 한국 사회와 국민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공부분 전반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적으로(선진 외국들처럼 무상의료·무상교육·주거권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선진 민주사회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확대와 확장(공공부분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황폐해지고 있는 지역문제, 농민생존권과 농촌공동체 문제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부터는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농민·농업·농촌 문제를 국토의 균형적 발전,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거해 전향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환경·생태적 가치의 전국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농민·농업·농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적 전망에서도 향후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지금보다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미 한국사회만 해도 여러 파동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집단인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발전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을 보면 농민·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발전 모도는 국가의 중대한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123조

-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4)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

스스로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고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나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슴기살균제 참사, 온갖 산업재해,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의 소외 문제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안전한 나라, 일하는 민초들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긴장과 불필요한 대결로 한반도와 한반도를 살아가는 남북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것이 한국의 국민들이 절실하게 발현한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 평화 올림픽과 최근의 남북 대화의 급진전은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반드시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부디 자유한국당 세력도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만큼은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0.29일 발발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완벽했지만, 과거로 보자면 그동안 한국의 민주항쟁의 역사로부터 기인하였고, 미래로 보자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닐 것이다. 촛불시민혁명과 이번 한국 국민들의 승리는 과거의 항쟁과 희생에 빚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한, 촛불시민혁명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그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만 그 험난한 역할을 모두 수행해라고 떠넘겨서도 안 되기에 우리 국민들이 저항과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탄핵과 구속 수감 이후에도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제와 그동안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 참정권 확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민소송제 도입, 국민의 국회 감시 확대, 국민의 국정 전반에 대한 참여 활성화 등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뇌물 범죄와 정경유착, 그리고 온갖 재벌특혜 체제를 청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풀뿌리NGO, 농민회, 중소기업, 청년회, 학생회 등이 활성화되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강화될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한국사회는 꾸준히 민주적 정당과 정치세력의 활성화, 시민사회 및 풀뿌리NGO들의 발전, 노동조합·농민회·상인회·청년회·학생회 등의 조직력·활동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강한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이 주인 되는 사회, 우리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투쟁 경과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활동을 중심으로(퇴진행동 2017년 5.24일 발표자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전국의 수백여 곳에서 진행된 지역 촛불시민혁명 집회는 다 담지 못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이 개최됐고,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집회(2017년 3월 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도 진행했었다.

<2016년>

10.27.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집회 시작(10.27일 목요일 저녁 동화면세점 앞과 파이낸스빌딩 앞 두 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 10.28일 금요일까지 평일 집회 진행)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퇴진행동 결성 전 집회로 10월 29일 토요일 대규모 집회가 제 1차 박근혜 정권 퇴진 범국민행동이 됨)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5.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 주최).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집회로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 개최. 11월 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전국 동시다발 박근혜정권 퇴진 범국민행동 진행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대표자회의 및 공식 출범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시국회의 및 전국적 공동투쟁 연대기구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 시민사회단체·풀뿌리단체 참가로 확대(2016. 11. 21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연대기구)

11.12.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 명 참여

11.19.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서울행정법원, 11.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 말 것 결정

11.26.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만,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이전까지 사상 최대규모 집회였던 11.26 범국민행동을 뛰어넘는 규모로서, 23차 범국민행동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집회 및 행진 기록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09.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만, 지역 10만4천, 총 110만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년>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대해 항의공문 전달. 이후 적극 대응한 결과 1월 13일 경찰측에서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범플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개최(장충체육관). 시민 총 2000명 참석, 1500명이 토론에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렵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현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현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달, 당일 집회 등)

03.10. 현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 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3. 2016년 10.27일부터 이어오던 평일 촛불집회 종료. 박근혜 정권이 현재에서 정식으로 탄핵되었기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를 끝으로 평일집회 마무리함.

03.15. ‘촛불시민의 기적’.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5일 동안 약 12억원의 소액다수 시민후원이 이뤄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제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5월 9일 촛불대선 전, 퇴진행동의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05.09. 촛불대선의 날

05.10. 촛불대선 결과와 정권교체에 대한 퇴진행동의 공식 성명 발표 : "새 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05.24 퇴진행동 공식 해산 선언

※ 참조 : 촛불시민혁명 참가 인원 추계(2016년 10.29~2017년 4.25/2017년 5.24일 퇴진행동 발표자료)

1) 촛불시민혁명 참여 인원 개요

- 서울 광화문과 각 지역마다 광장의 넓이와 밀도를 바탕으로 현장 인원을 추산하되 장시간 집집회가 진행되기에 '연인원'으로 집회인원을 최종 집계하고, 역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집회 인원과 비교·추정, 광화문광장 등 집회장 부근의 지하철 하차인원과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감안한 인원 추산 등을 병행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원추산을 위해 노력함.
- 2016년 10월 29일 1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시작되어,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 집회로 마무리 될 때까지 총 23회의 집회를 개최하고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여명, 최종 23차까지 총 16,852,000여명 참여함.
- 10월 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헌재 앞 등에서의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되지 않았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기초지자체 집회 중 일부 지역집회는 미취합된 경우도 있음. 또,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촛불시민혁명 참여인원을 모두 합산한다면 1700만 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2) 퇴진행동 발표 박근혜정권 퇴진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 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6차 12월 3일 : 전국 2,321,000여명 참여. 촛불시민혁명 기간 중 최대 규모 집회 진행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0,233,000여명)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 19차 3월 04일 : 전국 1,050,890여명 참여. 헌재 탄핵판결 앞두고 대규모 집회 진행.
- 23차 4월 29일 : 5만여명 참여(서울에서만 범국민행동 열림. 퇴진행동 마지막 집회)

[표] 서울 광화문 및 전국 촛불 집회 참여 인원(단위 : 명)

구분	1차 10.29	2차 11.5	3차 11.12	4차 11.19	5차 11.26	6차 12.3	7차 12.10	8차 12.17	9차 12.24	10차 12.31	11차 1.7	12차 1.14
광화문	30,000	200,000	1,000,000	600,000	1,500,000	1,700,000	800,000	650,000	600,000	1,000,000	600,000	130,000
지역	미집계	100,000	100,000	360,000	400,000	621,000	243,400	122,500	101,800	104,000	43,880	16,700
최종 집계	30,000	300,000	1,100,000	960,000	1,900,000	2,321,000	1,043,400	772,500	701,800	1,104,000	643,880	146,700
구분	13차 1.21	14차 2.4	15차 2.11	16차 2.18	17차 2.25	18차 3.1	19차 3.4	20차 3.11	21차 3.25	22차 4.11	23차 4.29	계
광화문	320,000	400,000	750,000	800,000	1,000,000	300,000	950,000	650,000	100,000	105,000	50,000	14,235,000
지역	33,400	25,500	56,000	45,000	78,130	미집계	100,890	58,160	2,400	4,600	미집계	2,617,360
최종 집계	353,400	425,500	806,000	845,000	1,078,130	300,000	1,050,890	708,160	102,400	109,600	50,000	16,852,360

- 일부 지역 참여 인원은 누락되기도 했음.
- 평일집회 참가자는 아예 합산되지 않았음.

3) 촛불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¹⁾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또,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보수적인 국민들도 상당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정확하게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추정치는 실제 퇴진행동이 23차 범국민행동까지 참여한 것으로 추정한 인원 총 16,852,000여명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시민사회, 시민운동, NGO들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① 한국 시민사회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기 개혁정부의 개혁을 추동하는 것을 넘어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평화체제를 위한 진전된 좌표를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

1) [신년 여론조사] 보수성향 7명 중 1명 “촛불 들었다”…진보는 34% “동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2002007>

로는 온건하게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늘 염두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방식과 좌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② 시민사회운동의 방향과 기조 : 시민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와 국민들의 더 낮은 곳으로, 더 생활 속으로, 더 피부가까이로 가야 한다. 또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참여민주주의와 민생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신(新) 브나로드 (시민속으로!)” 노선도 꼭 필요하다. 꼭 사민주의 등 특정 사회적 지향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민생 존중 평화복지국가론이면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운동을 멀리 있는 것이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다.

③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물질 토대 강화 : 그를 위해서는 특히,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정당, 정치세력,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엔지오, 지역의 시민자치역량, 크고 작은 시민모임의 확대도 꾸준히 꾀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확대와 함께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확립되는 것이다.

④ 생활협동조합, 동물권, 채식, 생명존중, 풀뿌리복지, 동네NGO, 사회적 경제 블록·사회적 기업 등 다채로운 비정부·비영리섹터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다종다양하고, 실제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사와 의제 설정도 훨씬 더 다채로워져야 할 것이다.

⑤ 온라인과 SNS 상에서 시민들과의 만남, 교류, 의견교화,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또 다른 배경에는 SNS 민주주의가 있고, 크고작은 온라인 모임의 힘이 있었고, 갈수록 온라인과 SNS 세계는 확대·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사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⑥ 한편, 촛불시민혁명의 참다운 계승을 위해서라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강하고 효과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그 힘이 보태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조합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풀뿌리NGO, 크고작은 시민들의 공익적인 모임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뜻있는 정치세력, 시민사회 모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좋은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도 매우 절실하다.

1) 개혁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개혁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개혁,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강화되는 개혁, 성평등이 실질화 되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동

시에 개헌이 졸속적으로, 권력 야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견제해야 한다.

2) 헌법의 중요성

- 독일기본법1조 :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제1조의 2항 : 법률은 여성과 남성이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장려한다.

- 이탈리아 헌법 제1조 :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이다.

-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3) 헌법 전문부터 개정 필요

- 아래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그리고 6월 항쟁과 최근의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민주주의, 인권국가, 국민주권의 국가라는 점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

- 국가는 성평등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존엄성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으면 한다(독일 기본법 1조의 취지를 살려서. 아래 예시를 해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그리고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과 2016~2017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특히, 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와 인권·생명권·생존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별첨 1 :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촛불대개혁 과제(촛불시민혁명 당시 발표했던 퇴진행동과 촛불국민들의 10대 분야 100대 과제 및 6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개혁과제)

- 2017년 2월,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여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선기간에 후보들에게도 제안한 바 있으며, 촛불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받아 안고 한국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퇴진행동은 해산을 선언하지만 새 정부는 이 개혁과제들이 촛불광장의 엄중한 요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사회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실천들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6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

- ① 세월호 진상규명
- ②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 ③ 미국 사드 한국배치 중단
- ④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 ⑥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 향후 꼭 추진되어야 할 100대 개혁과제

100대 개혁과제	세부 개혁 과제
재벌체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 법인세 인상 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00대 개혁과제	세부 개혁 과제
공안통치기구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②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③ [국정원 개혁]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④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⑥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⑦ [검찰 개혁]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⑧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⑨ [검찰 개혁]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⑩ [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⑪ [경찰 개혁]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⑫ [경찰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⑬ [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⑭ [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⑮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정치·선거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8세 선거권 보장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 도입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② 상사·지속업무 정규직화 ③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 기압류 금지 ⑧ 해고요건 강화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100대 개혁과제	세부 개혁 과제
<p>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③ 주거권 보장 ④ 아동 권리보장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⑦ 건강보험후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⑫ 밥쌀수입중단 쌀값 보장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p>성평등 포함 평등 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권 실현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 ③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④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⑤ 성소수자 차별 해소
<p>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의 이행 ④ 사드 배치 철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100대 개혁과제	세부 개혁 과제
위험사회 구조개혁: 안전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⑩ GMO(유전자변형식품) 원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⑪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단계 (연 평균 15μg/m³)으로 강화 ⑫ 인간 동물 자연에 고도의 위험을 부과하는 공장식 축산정책 폐지
교육불평등개혁·교육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 · 학벌폐지(학교평준화)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⑤ 입시 폐지 · 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⑧ 교수 · 교사확보를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언론개혁과 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④ 국가보안법 폐지 ⑤ 테러방지법 폐지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⑦ 양심수 전원 석방

※ 별첨 2 :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시대를 위한 한국 국회의 역할 평가

1) 정부와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

- 문재인 정부에서 각 정부부처, 권력기관 마다 적폐청산 관련 위원회나 TF가 가동 중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거나, 실제로는 각 정부부처, 권력기관마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인 적폐청산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흥내내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자원외교 문제, 검찰 및 사법 적폐 청산(이번에 이재용 항소심 석방 판결이나, 갑질왕 미스터피자 회장의 집유 석방 판결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매우 큼), 감사원 문제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견제 권한을 통해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임.

-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적폐청산특위를 가동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특위설치를 넘어 적폐청산특위 활동 자체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재벌적폐-검찰적폐 등 그동안 적폐와 모순이 커져이 쌓여있고, 국민적 공분과 피해가 큰 사건들이 많았던 권력기관, 공공기관일수록 그 적폐청산 작업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감시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2) 제빵 프렌차이즈 대기업 파riba게트 사태 해결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 2017년 노동부가 파riba게트 제빵기사 5천여명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하고, 직접 고용시정명령 발동

- 그 전에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킴.

- 이후 국회 차원에서 정의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노력하고, 제빵기사 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결국 새로운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음.

- 향후에도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3)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

- 국회는 2017년 12.5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음.

- 또,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음.

-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표결에도 불참함. 사사건건 개혁과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임.

4)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도 개정되어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됨.

- 2017년 10.3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어, 2018년 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졌음.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 것임. 앞으로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 됨.

-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폭리 근절을 매우 중요한 민생문제가 되어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것은 의미있는 조치임. 다만, 최고금리는 세계 각국 상황을 봐도, 사회적 용납수준을 봐도 20%미만으로 더 인하되어야 할 것임.

- 학자금 대출이자도 2.2%로까지 인하되었으나 무이자 수준으로 더욱 인하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폭넓고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개혁되어야 할 것임.

5) 가맹사업법, 대리점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계속 통과는 되고 있으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대리점협회·참여연대 공동 성명

- 2017년 9월에는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 :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의 수취 여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했음.

- 3.1일 [논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p>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집단적 대응권 강화· 필수물품강매금지·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오너리스크 문제 개정 시급- 대리점 현안인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 조속히 도입해야 <p>1.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동기능 복원을 위해 조정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의 많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직 심사조차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국회는 조속히 나머지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p> <p>2.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기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하고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하나의 기관·제한된 인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인력에 의해 실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많은 현안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p> <p>3.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불합리한 수익귀속의 원천이 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p>
--

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이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사와 대리점주 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4.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행위 등 범위만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분쟁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조정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반민생적 행보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5.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대리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많은 점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낙장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해 붕괴직전인 민생을 살피야 할 것이다. 끝

6)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적폐청산 사례와 과제

- 마사회가 주택가, 학교 앞에서도 버섯이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에 따라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도 많은 연대를 진행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용산 화상도박장이 전격 폐쇄되고,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것임.
- 얼마 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혈세탕진 사업 관련 문건을 무단 폐기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적폐세력들의 이같은 행태를 국회와 정치권, 언론과 시민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임.
- 도곡동땅, 다스, BBK와 관련한 이명박의 비리를 범국민적인 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 뜻있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협력으로 상당히 밝혀낸 것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 가능할 것임.
- 한편, 뭐 하나 시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적폐 청산의 과제가 없지만, 최근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은 공공부문, 금융권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격분하고 있음. 절대 다수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채용비리 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상태와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간호사 태움 문화로 인한 자살 사례,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품권 폐이 문제, 직장내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적 차별행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내 갑질 및 노동인권 침해, 평등권 침해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임.

7) 최근 입법촉구 정책 자료 : 2월-3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①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영세업체는 매출액 기준 2억에서 3억, 중소기업체는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적은 5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2.5%→1.5%)가 필요함.

-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상 단체 설립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③ 복합쇼핑몰 규제, 골목상권, 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

평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 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⑤ 본사의 갑질 불공정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

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관측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리점보호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만을 담았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신빙성 담보를 위한 과태료 도입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가맹사업법과 비교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⑦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キャンドル市民革命の意義と課題

安珍傑(アン・ジンゴル)

参与連帯 市民委員長/ 元 朴槿恵政権退陣非常国民行動 スポークスパーソン/ 尚志
(サンジ)大学 招聘教授

「李明博(イ・ミョンバ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総体的に不法・不道德な政権であり、財閥・既得権に特惠を与える政権でした。キャンドル市民革命によって誕生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と執権与党民主党は、徹底的に差別化された姿と民主性・改革性・進歩性を示す必要があります。」

－ キャンドル市民革命に続いて、労働と民生が尊重され、人間の尊厳性が活かされ、平和と和解に満ちた良い社会を一緒につくっていきましょう。

1. 誤った政治権力に対して主権者国民の対応が最も模範的でダイナミックな形で現れた：2016～2017年の韓国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

1) 5. 18から6月抗争へ、6月抗争からキャンドル市民革命へ

6月抗争をテーマとする<6月の歌>を浮かべるたびに、5. 18光州民衆抗争と故・白南基(ペク・ナムギ)農民の闘魂が思い出される。「私たちは立ち上がった、握りこぶしだけで！」 5. 18光州民衆抗争がなかったとすれば、6月抗争もなかっただろうし、最近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もあり得なかっただろうという点で、私たちの歴史の中で5. 18光州民衆抗争がどれだけ意義深く偉大なことだったのか、改めて気づかされる。

故・白南基さんもまた、この国の民衆の生存権問題を解決し不正義に立ち向かうために、体一つで働き、体一つで立ち上がり、体一つで闘った方だという点で、彼の生と死を通じて5. 18の精神と6月抗争を思い浮かべずにはいられない。実際、故・白南基さんの生と無念の死が、キャンドル市民革命が巻き起こる上で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言える。

「私たちは立ち上がった、握りこぶしだけで
血涙で同志を呼んだ
独裁打倒 民主獲得 一つになった声
民主と解放の国を勝ち取った
ああ 私たちの受難 私たちの闘争
私たちの愛 私たちの国
この世の主人は君と私
手を取り合った私たち 前進する私たち

この世の主人は君と私
闘う私たち 愛する私たち

ああ 解放 統一の私たち 蘇る六月に
ああ 解放 統一の私たち 蘇る六月に
ああ 私たちの受難 私たちの闘争
私たちの愛 私たちの国
この世の主人は君と私
手を取り合った私たち 前進する私たち
この世の主人は君と私
闘う私たち 愛する私たち
ああ 解放 統一の私たち 蘇る六月に
ああ 解放 統一の私たち 蘇る六月に」

2) 2016～2017年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へと昇華された朴槿恵政権退陣汎国民運動

韓国の大作家である趙廷来(チョ・ジョンレ)は、偉大な小説『太白(テベク)山脈』を通じて朝鮮半島の歴史とその歴史の中での民草(たみくさ)たちの辛酸な生き様を「ハン(恨)の焚き火」と集約的に表現したことがある。そうだ。朝鮮半島の歴史は、民草のハンが漢江(ハンガン)となり、海となった、「ハンの水脈」の歴史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だろう。しかし、より重要なのは、ハン(恨)の焚き火とハン(恨)の水脈ではあるまい。ハンにまみれた歳月を覆すために抵抗し体当たりした私たち国民の「抵抗の焚き火」と「闘争の水脈」があったからこそ、今のような大韓民国と民主主義が可能になったということ！ これこそが最も重要な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のため、多くの国民は血の色の5月や熱い6月になると、限りなく胸が膨れ上がる。5. 18光州民衆抗争の凄絶な闘魂と、87年6月抗争のその熱かった叫び声が同時によみがえり、歴史の「躁うつ症」を経験したりもする。今日、私たちは偉大なキャンドル市民革命と国民の勝利について語っており、文在寅大統領も5. 18追悼式の場で現政府は5. 18民衆抗争やキャンドル市民革命を継承した政府だと宣言もしているが、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自ずと実現されたものではない。4. 19から釜山(プサン)・馬山(マサン)民主抗争(プマ抗争)と5. 18へ、5. 18から6月民主抗争へ、6月民主抗争から労働運動と市民社会の発展へ、脈々と引き継がれてきた私たち民草の闘いと抵抗の歴史があったからこそ、そして、その驚くべき歴史的経験に対する国民の共有があったからこそ、国民による、国民のための、国民のキャンドル革命が可能であったのだ。

2016年を生き、2017年を生きているすべての国民は、昨年の六ヶ月間(2016年10月29日～2017年4月25日まで計23回の汎国民キャンドル行動を進行：2016年10月27日に初めて朴槿恵政権退陣を求める平日のキャンドル集会が始まり、10月29日の第1次汎国民行動から、4月25日の第2次汎国民行動まで、実に1700万人余りが参加した。平

日のキャンドル集会や、全国各地で繰り上げられたキャンドル集会の参加者まで合わせると、延べ2万人は充分超えるだろう）、燃え上がったキャンドル集会を、これからもおそらく長きに渡って語らずにはいられないだろう。このキャンドル集会はそれだけ大きな事件であったし、韓国のすべての人々がキャンドル集会から大小の影響と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られたからである。毎週土曜日には多くの人々がソウルの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広場など全国の広場でのキャンドル集会の前後に数多くの大小の会合や知人との待ち合わせの予定を並行して入れたりもしたという、個人の生活と歴史的激変が調和をなしたその驚異的な季節を私たち皆が生き抜いたのである。そのようにして六ヶ月間続いたキャンドル集会は、その熱気と規模、成果と変革の程度から、キャンドル市民革命といっても全く遜色がないだろう。

では、何がキャンドル市民革命を可能にしたのだろうか？ 朴槿恵政権のそれまでの悪行と失政に対する深い失望、朴槿恵&崔順実(チェ・スンシル)ゲートに対する巨大な怒り、そして民主主義と国民主権の回復を望む人々の熱望が、偉大な変化を創り出したと見るべきであろう。また、国民の大多数を占めている庶民・中産層と労働者・農民・中小商工人も、一生懸命働きさえすれば食べては行けるような公正で暖かい社会に対する希望と、財閥・大企業・特権層・不動産金持ちだけの韓国ではなく、大多数の人々のための正義の韓国の実現に対する切なる期待が、全国民的な抗争へと昇華された故に、世界が驚いた主権者革命(=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可能になったのだろう。

昨今、韓国の大多数の人々が「ヘル(hell)朝鮮」と呼ばれる韓国で、激しい生活苦・不平等・両極化・不公正にあえいでおり、そのことは悲惨なことに、自殺率1位、出生率最下位、労働時間は最長、労働災害も最悪の水準という統計の中に克明に表れている。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国民のために使われるべき大統領という最高権力が、お門違いも甚だしく財閥総裁集団や崔順実とその娘(チョン・ユラ)一味などに対してのみ、不当な優遇と莫大な利益を与えることに悪用される一方で、大多数の国民の苦痛や不安は続いている状況だったことから、韓国の人々が「大爆発(big bang)」したのだと見るべきだろう。

3) 5.18と6月抗争を継承した「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継続されるべきである。

韓国社会のためにも、また、世界の市民社会がともにする世界次元での民主主義の発展のためにも、韓国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継続されるべきである。キャンドル革命は、終わる時まで終わったとは言えないものでもあるし、適当な終わりで締めくくられてもいけないからである。実際、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五つの意味から、今でも現在進行形にある。 1) 朴槿恵の弾劾と拘束を超え、朴槿恵政権においてあらゆる不法行為と悪行を犯した人々に対する真相究明と審判が終わっておらず、2) 今回の事態の共犯であり、主犯であり、朴槿恵政権の最大の積弊の一つである財閥の賄賂犯罪と政経癒着に対する審判と改革もまた終わっておらず、3) 文在寅政府が発足し努

力を傾けているものの、自由韓国党の事あるごとに足を引っ張る行動などにより、ヘル朝鮮・生活苦・不平等・両極化を解決できる良き政策が未だにしっかり実現されていないままであり、4) 韓国社会の安定性・公共性の確保と向上、働く人々(労働者・農民・中小商工人)が尊重される民主主義の確立が必ず必要であり、5) 最後に、第2の朴槿恵・崔順実ゲートを徹底的に予防し、拒否し、根絶することのできる公職社会の原則とシステムを根本的に確立する改革(検察改革・司法改革・言論改革・監査院改革・公職社会改革など)が必ず実現されるべきなので、そうなるこそ初めて今回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が完全に遂げられたと言えるのだろう。

民生問題にだけ絞ってみても、いまの韓国の人々は、常時の持続的な雇用であれば最初から正規職として採用するべきで、既存の非正規職も正規職に転換され、月給と毎月の所得は今より引き上げられ、職場や生活の中で甲乙の問題が無くなることを念願している。また、世界最悪の労働時間と労働災害の中で苦勞して稼いだお金が、教育費・住居費・医療費・交通費・通信費・ローンへの利子などにすべて消えてしまい、家計負債ばかりが増えてゆく重苦しい現実が、根本的に改善されることを切に願っている。そのためにも、各世帯の支出のほとんどを占めており、国民大多数にとって大きな心配となっている教育・住居・医療・交通・通信など公共分野における公共性がさらに高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即ち、韓国社会と国民の生活を維持する上で不可欠な公共部分全般が今より安定化し、国家の責任の下で公共性にそって(先進的な諸外国のように無償医療・無償教育・住居権の保障を実現する方向に)運用されるべきであり、さらに、先進的民主主義社会へと一層発展するためには、公共部門の拡大と拡張も(公共部門の雇用拡大と共に)着実に進められるべきであろう。

また、荒廃化しつつある地域の問題、農民の生存権と農村共同体の問題を考えるなら、現在の文在寅政府からは農業と農民を犠牲にする政策を展開するのではなく、農民・農業・農村問題に対して、国土の均衡ある発展、国民経済の均衡発展という憲法的価値に基づいて前向きに取り組んでいくよう求める。食料主権の実現のためにも、安全で健康的な食べ物を確保するためにも、地域の均衡発展のためにも、環境・エコロジック的価値の全国的実現のためにも、農民・農業・農村問題を積極的に解決する努力は欠かせない。世界史的展望としても、今後、食料主権と安全な食の問題は、今より一層重要性が増すだろうし、すでに韓国社会だけを取っても、いくつかの波動と苦痛が経験されている。そうであれば、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コア集団である農民たちの生存権保障と持続可能な農村共同体の発展は、文在寅政府と私たちの社会の核心的な課題に据えられるべきであろう。

我が国の憲法を見ると、農民・農業・農村問題の解決と発展保護は、国の重大な義務であることが分かる。 - 憲法第123条

- ① 国家は、農業及び漁業を保護・育成するために、農漁村の総合開発とその支援など必要な計画を樹立・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国家は、地域間の均衡ある発展のために、地域経済を育成する義務を負う。
- ③ 国家は、中小企業を保護・育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p>④ 国家は、農水産物の需給バランスと流通構造の改善に努めて価格の安定を図ることにより、農民・漁民の利益を保護する。</p> <p>⑤ 国家は、農民・漁民と中小企業の自助組織を育成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自律的活動と発展を保障する。</p> |
|---|

4) キャンドル市民革命により誕生した文在寅政府の役割

キャンドル市民革命を継承していると自ら公言する文在寅政府と政権与党は、李明博・朴槿恵政府とは完全に断絶される必要があり、肯定的な方向における確実な差別化を図るべきである。これまで李明博・朴槿恵政権の下で踏みにじられてきた民主主義と人権を再び回復し、大多数の国民の生活苦と不安が続いている現状を打開し、真の民主主義が実現され、この国の主人公である私たちの暮らしの問題が解決される国、セウォル号惨事、マーズ(MERS)事態、加湿器殺菌剤惨事、ありとあらゆる労働災害、労働者・農民・中小商工人の疎外の問題などの原因で私たち国民が空しく不当に殺されるような国ではなく、本当に安全な国、働く民草が主人公として生きることのできる国をつくるべきだろう。

また、南北関係の緊張と不要な対決のため、朝鮮半島と半島に生きる南北民衆の苦痛が続く国ではなく、和解と平和に満ちた国をつ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こそが韓国の人々が切実に発現させた「キャンドル市民革命」が求めている課題だと言える。その意味で、平昌平和オリンピックとこの間の南北対話の急進展は大変望ましいものであり、このような基調は必ず維持されることを願う。そして、自由韓国党勢力も、南北の和解と朝鮮半島の平和に限っては、どうか難癖をつけることを控えて欲しい。

2016年10月29日に起こり、全世界の注目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韓国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それ自体が偉大で完璧なものであったが、過去を振り返ると、それはかつての韓国の民衆抗争の歴史に起因しており、未来を見通してみると、未だ終わったわけではない。キャンドル市民革命と今回の韓国国民の勝利は、過去の抗争と犠牲に負うところがあり、また、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どんな形であれ続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終わりをしっかり見届けるまで終わったことにはならず、また、文在寅政府にだけその険しい役割をすべて押し付けて背負わせるべきではないので、私たちの抵抗と参加は今後も続くべきである。

実際に朴槿恵大統領に対する圧倒的弾劾と拘束・収監の後も、韓国のキャンドル市民革命は続いている。朴槿恵の退陣を超え、朴槿恵体制とこれまでの積弊を清算せよと求める国民の声も続いている。また、私たちは主権者の権利を拡大することと、より多くの民主主義を念願している。選挙年齢の引き下げ、参政権の拡張、有権者の表現の自由の拡大、国民発案制・国民リコール制・国民訴訟制の導入、国民による国会監視の拡大、国民の国政全般への参加の活性化など、参加民主主義と直接民主主義の

強化を求めているのである。また、朴槿恵・崔順実ゲートにより生々しく露呈した財閥・大企業を中心とした賄賂犯罪や政経癒着、そして、あらゆる形の財閥への優遇体制を清算することも極めて重要である。

より強固でしっかりとした民主主義は、民主的な政党、市民社会、労働組合、草の根NGO、農民会、中小商人会、青年会、学生会などが活性化され、そのネットワークが広がり強まるほど大きな力を発揮するという点では、文在寅政府の下でも韓国社会は着実に、民主的政党と政治勢力の活性化、市民社会と草の根NGOの発展、労働組合・農民会・商人会・青年会・学生会などの組織力・活動力が高まる方向に進むべきである。より多くの民主主義、より強い民主主義が、私たち国民が主人公となる社会をつくり、私たち国民の民生問題がしっかり解決される経済民主化と福祉国家をつくり出す肥やしとなるだろう。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년 미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부는 ‘말의 전쟁’을 전개하며 전쟁위험까지 불러일으켰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한국 문재인 정부는 그 사이에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외교를 전개해나갔다. 2018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및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평화외교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는 변함이 없고 비핵화의 길은 멀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평화와 연관 지어 그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²⁾

I.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세우고 국제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국제협력에서 핵심은 인식의 공유이다. 인식의 공유가 중요한 만큼, 한국은 북핵문제에 임하는 관련 당사국들과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공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시각은 금물이다. 물론 압박 일변도의 접근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단순한 자세도 경계할 일이다.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를 실현할 첫 번째 자세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는 포괄적 접근을 요하는 중대 사안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냉전구조 해체, 곧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수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방지와 북한의 핵 야망 포기가 당면 최대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셋째, 압박과 대화를 균형 있고 유연하게 전개하되 모든 수단은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비핵화 실현에 복무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포괄적 접근을 요하는 비핵화의 길을 제재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비핵화의 길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한국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보유국 지위 자처, 그리고 핵군축회담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비핵화는 관련국들의 확고한 의지, 충분한 의사소통, 그리고 비핵화를 유도할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포기 이행을 지켜보면서 대북 상응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및 문재인정부 등장 이후 조성된 작금의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다시 추진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이 발표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특별보고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0가지 제언」(2017년 6월 25일)의 6-7, 9-10항을 수정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근본문제에 접근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틀을 세우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 핵포기와 대북 안전보장을 병행 추진하는 포괄접근을 시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포괄 접근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 대립의 골이 깊은 관련국들이 상황 악화를 중단하고 대화의 방에 들어설 기회를 조성해야 한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대화국면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 혹은 6자회담의 길로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의 일차적 이해당사자인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해나가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평화 프로세스는 불가능하다.

포괄접근 구도는 관련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9.19 공동성명부터 2008년 말까지 전개해왔던 비핵화 과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국들(특히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조치를 적절하게 연결지어 이행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대북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현재의 정세가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관련 당사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동결, 불능화, 폐기 등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핵문제는 분단에서 기인하며 북한의 안보불안과 체제의 속성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및 일본과 공유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중 간 경쟁이 북한의 핵고도화를 정당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의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이 절실하다. 넷째, 북한이 IAEA의 구속성에 저항하는 경우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타의 국제기구의 참여도 고려해볼만하다. 예를 들어, 이란 핵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EU의 옵서버 참여를 통해 합의의 해석과 검증에 관한 객관성 시비를 다룰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국제감시체제를 수용하도록 유인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II. 한반도 비핵화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과정이다.

단계적 접근이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설정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 성과를 축적해 최종 목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단계적인 비핵화는 크게 3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미래와 현재의 핵으로부터 과거의 핵으로 향한다.

1단계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 추가 핵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는 관련 당사국들이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에 다시 나서도록 상호 신뢰조성 조치를 취할 때 만들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창 올림픽 기간중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한 것은 평가할만한 조치였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그것으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 비핵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비공식 1.5트랙에서 시작해 공식 당국간 회담으로 발전하도록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한국정부는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회담의 길로 들어설 때 본격적인 교류협력 의지를 천명한 것이 유용하다. 주목할 것은 핵동결상태에서 비핵화 회담을 일회성

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려면 대화와 동결에 대한 대가에 과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시설을 불능화(disabling)시켜 궁극적인 비핵화의 길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 불능화는 모든 핵 프로그램과 시설의 가동 중단을 의미한다. 이는 추가적인 핵능력 고도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완전한 핵 폐기로 들어서는 발판이다. 북한의 완고한 태도와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의지로 볼 때 핵동결과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는 것 자체도 힘든 과제이다. 더욱이 2008년 6자회담이 불능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불능화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능력은 경량화, 다중화에 이어 표준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장거리미사일이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미 본토 타격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만큼 북한이 불능화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데 관련국들이 비용과 이익의 조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능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불능화는 지금까지의 핵능력 강화의 관성(inertia)을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대내적으로 자원 집중의 수혜집단(당과 핵개발 관련 군부집단)의 반대가 클 것이다. 따라서 관련 당사국들의 소극적, 일방적, 제한적 협상전략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평화협정 협상, 대북 제재 완화,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의 카드를 활용하면서 양자·다자회담을 병행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북한이 핵 불능화에 응하고 장기적 이익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과 관련 당사국들의 과감한 대응조치에 북한이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일 때 전면 제재 등 다른 조치는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3단계는 북한의 과거 핵프로그램을 검증해 핵폐기를 달성하는 최종 단계로 상당한 시간을 요할 미래의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정상화, 남북한 간 재래식전력 감축, 국제기구의 개발협력과 함께 남북한 간 다양한 경제협력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꿈같은 이 구상은 철저한 동시행동원칙에 의거해 진행해야 하며 핵폐기 협상에서의 대가 또는 비용부담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개해나갈 때, 북한체제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상호관심사를 균형 있게 다루어 나간다는 협상 원칙을 공유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매몰되거나 일방적 접근은 협상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각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 비핵화를 향한 냉정하고 일관된 자세, 창의적이고 대담한 접근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Ⅲ. 국민의 대북위협 인식을 반영하고 국민합의에 바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신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평창 이후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구도를 확립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아직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6차례 핵실험과 잇달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이 같이 높아졌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 7월 여론조사³⁾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6%로서 2016년의 66.1%에 비해 높아졌고 '무력도발 없다'는 응답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 북한발 안보불안이 40%대를 유지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2017년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70.6%의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6년의 79.5%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북한의 잇달은 핵·미사일 고도화 조치를 감안한다면 위기의식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핵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진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다만, 안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정책 관심사에 경제협력(62.6%), 인도적 지원(43.3%)보다는 비핵화(86.3%), 평화협정 체결(77.9%) 등 안보 이슈가 두각을 보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민들의 부정적 북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의 대북의식 지형을 보면 북한을 경계하거나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39% 정도이며,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적 여론이 70%를 넘는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대화하고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많은 부담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진보와 보수 간에 극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2017년의 경우,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진보'는 36.8%가 '가능하다'고 답한데 반해, '보수'는 21.9%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지난 수년간 이러한 차이는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2017년 5월 9일 대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사회의 세대 간 진보-보수의 경향성은 매우 뚜렷하다. 특히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한국의 '중북세력' 척결을 주창한 보수후보를 지지한 반면, 20~30대 젊은층은 진보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북한인식의 차이는 자연히 대북정책의 이견으로 드러난다. 문재인정부는 이상과 같은 국민들의 북한 위협인식과 이념 격차를 고려하고 소모적인 갈등비용을 줄여 정책 타당성이 높은 최적의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V.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은 서로를 촉진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SIPRI 발표에 따르면, 2012-16년 사이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아시아대양주(43%)로서 2위 중동(29%)보다 압도적이다. 중국이 이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일본의 군사비 증대도 주목할 만하다. 미군의 전략이 전세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군비증강 역시 동북아 안정의 변수이다. 여기에 북핵문제는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군비경쟁을 촉진하는 요소-일종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 역내 안보협력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

3)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것으로서, 2017년의 경우 7월 3-28일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는데 표본오차는 ±2.8%(95% 신뢰수준).

다고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역내 안보협력은 부차적인 아젠다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40여 년 전 유럽에서 시작된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세계 대전 재발 방지와 진영을 초월한 범유럽 안보협력을 지향하며 출발했는데, 냉전 해체기에 제도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OSCE)⁴. CSCE의 경험에서 보듯이, 동북아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당면 과제는 단연 긍정적인 역내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1975년 8월 1일, ‘헬싱키 협정’ 체결까지 유럽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대화, 동·서독의 접촉, 그리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관계개선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그런 가운데 핵무기는 미소관계, 재래식무기감축은 미국, 소련, 그리고 중부유럽 국가들 사이의 상호균형군사력감축(MBFR) 협상에서 다뤄졌다. 이를 동북아에 적용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화,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역내 안보협력 형성에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다시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경우 재래식무기감축은 남북한 군사회담에서 추진할 일이다.

긍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조성과 관련해 CSCE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2차 세계대전과 베를린 사태 이후 단절되었던 서방국가들과 소련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와 서독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수교하였고, 서독은 나치 시기 과거사를 사죄하며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과도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태도가 역내 안보협력에 필수적이다. 나아가 동북아 냉전 구조의 일부인 미국, 일본과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도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향한 해결 과제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 북한의 국제체제로의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재천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북한과 역내 국가들 간 신뢰조성이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럼 비핵화 달성 이전에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불가능한가?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는 비핵화 이전에도 역내 안보협력이 가능하다. 여기에 북한도 참여시켜 고립주의 노선의 한계와 국제 규범을 준수할 때의 이익을 알려줄 수 있다. 사실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기후변화, 테러, 보건, 해상안보, 난민 등에 따른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의 제도화 요청이 그것이다. 다만, 비핵화의 가시적인 진전 없이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역내 안보협력은 선순환과 악순환 어느 방향으로든 서로를 촉진한다. 물론 비핵화를 위시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 역내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협력외교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접근도 유용하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양측인 남북관계와 국제협력이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이다.

4) 1994년 12월 5-6일 열린 부다페스타 정상회담에서 CSCE는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朝鮮半島非核化と東北アジア平和体制

徐輔赫（ソ・ボヒョク） 校授（ソウル大学校 統一平和研究院）

2017年、アメリカのトランプ行政府と北朝鮮の金正恩政府は「言葉の戦争」を展開し、戦争の危険まで呼び起こした。「ろうそく革命」によって登場した韓?の文在寅政府はその間で南北?話と朝鮮半島の緊張緩和のための平和外交を展開していった。2018年2月から3月の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の開催および北朝鮮の参加を契機に、平和外交は部分的な成果を上げているように見える。しかし、北朝鮮とアメリカの?決構?に?化はなく、非核化の道は遠いように思われる。本稿では今後の朝鮮半島非核化の道を提示する一方、朝鮮半島の非核化を東北アジアの平和と関連づけ、その展望を論議してみたい。

1. 非核化一平和体制構築の原則を立て、?際協力を誘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際協力における核心は認識の共有である。認識の共有が重要であるからこそ、韓国は北朝鮮の核問題に臨む関連当事国と少なくとも次の三つの原則を共有する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ず、朝鮮半島の非核化という原則を確固として堅持することである。北朝鮮の核能力の高度化と核放棄の可能性がないという判断の下で非核化が不可能だという悲観的見解は禁物である。もちろん圧迫一辺倒の接近で非核化が可能だという単純な姿勢も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核化という目標をあきらめないことが非核化を実現する第一の姿勢である。

第二に、朝鮮半島の非核化は包括接近を要する重大事案である。朝鮮半島の非核化は冷戦構造の解体、すなわち持?可能な平和体制の樹立と表裏一体をなしている。朝鮮半島における核拡散防止と北朝鮮の核への野望の放棄が当面の最大の課題であることは確かである。しかし、この問題が、朝鮮戦争以降持続している北朝鮮とアメリカ、日本の敵対関係の清算、南北の軍事的信頼の構築、そして停戦体制の平和体制への転換と組み合わせであるという事実を否認するならば、非核化は不可能である。

第三に、圧迫と会話をバランス良く柔軟に展開しつつも、すべての手段はそれ自体が善ではなく、非核化の実現に服務するという認識が重要である。包括接近を要する非核化の道を制裁一辺倒で接近するのは非核化の道をさらに困難にするだけである。

北朝鮮の核能力の高度化と核保有?としての地位の自任、そして核軍縮会談の主張などを鑑みた時、今後、非核化には、関連国の確固たる意志、十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そして非核化を誘導する積極的なイニシアチブが必要である。これと関連して、北朝鮮の核放棄の履行を見守りながら対北朝鮮相応措置を検討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態度は非核化を不可能にするということ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トランプ行政府および文在寅政府の登場後につくられた昨今の情勢は朝鮮半島非核化の道をもう一度推進する最後の機械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文在寅政府は朝鮮半島の分断という根本問題に接近し、持続可能な平和の枠組みを立てる方向

で接近している。そのために韓国は、アメリカと北朝鮮を同時に説得し、核放棄と対北朝鮮安全保障を並行して推進する包括接近を試みていくであろう。しかし、複雑で難しい包括接近は現実的に段階的に展開するしかない。対立の溝が深い関連国が状況悪化を中断して会話の部屋へ入る機械をつくらなければならない。平昌オリンピック以後も南北の対話局面を維持し、朝米対話あるいは六者会合の道へと広げていく必要がある。朝鮮半島の平和の一次的利害当事者である韓国がその役割をつとめているが、アメリカと北朝鮮の呼応なくして平和プロセスは不可能である。

包括接近の構図は、関連国が2005年の9・19共同声明で明らかにした内容を土台にし、その後の情勢変化を反映させ、再樹立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である。9・19共同声明から2008年末までに展開された非核化の過程は、北朝鮮の非核化と関連国（特にアメリカ）の政治、軍事、経済的措置を適切に連結して履行し、非核化の進展にしたがって朝米・朝日関係の正常化、対北朝鮮経済協力、朝鮮半島の平和体制、東北アジアの安保協力などに関する実務協議を展開するものであった。

しかし、過去の失敗から教訓を得る必要があり、さらに現在の情勢が過去と大きく異なっ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に、関連当事国が非核化のための凍結、不能化、廃棄などの対象と範囲を明確に規定し、それに対する情報と認識を共有する必要がある。第二に、北朝鮮の核問題は、分断に起因しており、北朝鮮の安保不安と体制の属性も関連しているため、これに対する問題意識を中国、ロシアはもちろん、アメリカおよび日本と共有することにも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に、米中間競争が北朝鮮の核高度化を正当化する要素として作用し得るということを認識し、北朝鮮の逸脱を制御するためのメカニズム開発が切実である。第四に、北朝鮮がIAEAの拘束性に抵抗する場合に対応する方案を講じ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意味で、その他の国際機構の参加を考慮してみるのもよいだろう。例えば、イラン核協議に対するノウハウがあるEUのオブザーバー算加を通じ、合意の解釈と検証に関する客観性の是非を扱うこともできる。何よりも北朝鮮が非核化という目標を再確認し、国際監視体制を受け入れるよう誘引する措置が切実である。

II. 朝鮮半島の非核化は段階的接近が必要な過程である

段階的接近とは、朝鮮半島の非核化の現過程において適切な手つづきを設定し、それに見合う措置を取り、その成果を蓄積し、最終目標に進むことをいう。段階的な非核化は大きく三つの段階を?ると予想されるが、逆説的にも北朝鮮の未来と現在の核から過去の核へ向かう。

第一段階は、北朝鮮の追加的な核・ミサイル開発を中断させ、追加核能力の高度化を阻止することを目標にする。この段階は、関連当事国が非核化を目標に再び出すよう相互の信頼を造成する措置を取る時につくられるであろう。これと関連して、平昌オリンピック開催期間中の韓米合同軍事演習を延期したことは評?できる措置であった。この段階においては国際社会の対北朝鮮制裁が避けられないが、それによって人道的支援と北朝鮮住民の経済生活に悪影響が生じないようにし、非核化のモメンタムを生か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特に、北朝鮮とアメリカの会談が、非公式1.5トラックから始まり、公式当局間会談へと発展するよう、活発な疎通がなされるべきであろう。この時韓?政府は、人道的問題の優先解決の意志を明らかにし、北朝鮮が非核化会談の道に入る時に本格的な交流協力の意志を明らかにするのが有用である。注目すべきことは、核凍結状態において非核化会談を、一過性のものでなく、持続性を持つものにしていくた

めには、対話と凍結に対する代価に果敢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ある。南北間経済協力に関する本格協議に入り、人道的支援と共に社?間接資本への投資も検討できるであろう。

第二段階は、北朝鮮の核プログラムと施設を不能化（disabling）し、究極的な非核化の道を整えることを目標にする。北朝鮮の核不能化はすべての核プログラムと施設の稼働の中断を意味する。これは追加的な核能力の高度化の可能性を遮断すると同時に、完全な核廃棄への足場となる。北朝鮮の頑固な態度と持続的な核能力強化への意志を鑑みると、核凍結と非核化会談を再開すること自体も難しい課題である。さらに、2008年の六者会合が不能化を成し遂げられずに中断した点を鑑みれば、不能化はとても重要な山場になると予想される。北朝鮮の核能力は?量化、多種化に続いて標準化段階に入っており、長距離ミサイルが東アジア地域はもちろん、アメリカ本土への打撃も可能になった。北朝鮮が不能化に?り出し得る強力な動機を提供するための関連国の費用と利益の調整が重要な理由がここにある。

不能化のためには高度な交渉が必要である。北朝鮮にとって不能化は、これまでの核能力強化の慣性（inertia）を中断させることであるため、対内的に資源集中の恩恵集団（党と核開発に関連する軍部集団）の反対が大きいであろう。したがって、関連当事国の消極的、一方的、制限的交渉戦略は成功が難しいであろう。平和協定交渉、対北朝鮮制裁緩和、北朝鮮との経済協力などのカ?ドを活用し、二者・多者間会談を並行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そうした時においてのみ、北朝鮮が核不能化に応じ、長期的利益に対する展望を持つ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もしも韓国と関連当事国の果敢な対応措置に北朝鮮が消極的であったり、非協調的である時、全面制裁などの他の措置はその時になって検討しても遅くないであろう。

第三段階は、北朝鮮の過去の核プログラムを検証し、核廃棄を達成する最終段階で、相当な時間を要する未来の課題である。北朝鮮とアメリカ?日本の関係の正常化、南北間の在来式戦力の縮小、国際機構の開発協力と共に南北間の多様な経済協力も拡大していくであろう。現時点で夢のようなこの構想は、徹底した同時行動原則に基づいて進めなければならず、核廃棄交渉における代価または費用負担に対する柔軟性を発揮しなければ失敗に直面するであろう。

以上のような非核化プロセスを展開していく際、北朝鮮体制の実体をありのままに認定し、相互の関心事をバランス良く扱っていくという交渉原則を共有することが必須である。北朝鮮体制に対する道徳的判断に埋没したり、一方的な接近は明らかに交渉を妨げるであろう。各国指導者の、朝鮮半島問題に?する?史的認識、非核化に向けた冷?で一貫した姿勢、創意的で大?な接近が切実な理由がここにある。

III. 国民の対北朝鮮脅威認識を反映し、国民合意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

文在寅政府は「新朝鮮半島平和構想」を明らかにし、平昌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北朝鮮と対話の扉を開いた。これを基盤に、平昌以降は、非核化と平和?制、そして南北関係発展の好循環構図を確立するために努力するであろう。朝鮮半島の平和と南北関係の改善に対する国民の期待も高まった。しかし、このような期待はまだ安定した発展の軌道に?れずにいるのが実情である。北朝鮮の持続的な核開発とミサイル試験発射が国民の対北朝鮮認識を悪化させてきたためである。

北朝鮮の6回の核実験と相次ぐ長距離ミサイルの試験発射、それにとまなう国際社会の対北朝鮮制裁、韓?民の安保不安が同時に高まった。ソウル大学校統一平和研究院の2017年7月の世論

調査において、北朝鮮の武力挑発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回答が70.6パーセントで、2016年の66.1パーセントに比べて高くなり、「武力挑発はない」という回答より2倍高かった。南北関係が良かった2000年代初め、北朝鮮発の安保不安が40パーセント台を維持していた時期と比較すると、現在の韓国民の危機意識が深刻であることが分かる。

特に北朝鮮の核兵器に対する脅威は非常に敏感な事案になった。2017年の調査では、北朝鮮の核兵器に対して脅威を感じている?民は70.6パーセントであった。2016年の79.5パーセントよりは多少低い結果ではあるが、北朝鮮の相次ぐ核?ミサイルの高度化措置を鑑みれば、危機意識が低くなったとは言い難い。同時に核放棄に対する懐疑的な見解と核武器支持世論が高まったことも留意すべき点である。ただし、安保状況が悪化するにしたがい、国民の対北朝鮮政策の関心事として、経済協力（62.6パーセント）や人道的支援（43.3パーセント）より、非核化（86.3パーセント）、平和協定締結（77.9パーセント）など、安保 이슈が頭角を見せた。

北朝鮮の継続する挑発によって国民の否定的な北朝鮮認識が高まったのは?然である。韓国民の対北朝鮮意識の地形を見ると、北朝鮮を警戒したり敵とみなす人々が39パーセント程度であり、北朝鮮政権との対話と妥協は可能ではないとの懐疑的世論が70パーセントを越える。北朝鮮政権に対する不信が非常に高い?況において、韓国政府が北朝鮮を相手に対話し、交渉を推進していくのに多くの負担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特に北朝鮮政権を相手に対話と交渉ができるかをめぐり、進歩と保守の間に明らかな異見が存在する。2017年の場合、北朝鮮政権との対話と妥協は可能かどうかを問う質問において、「進歩」は36.8パーセントが「可能だ」と答えたのに反し、「保守」は21.9パーセントだけがそのように答え、大きな差を見せた。北朝鮮政権に対するこのような認識の差異は、韓国社会において進歩と保守を分ける最も?力な要因で、ここ数年間、このような差は?化なく持?してきた。2017年5月9日、大統領選挙の結果で見られたように、韓国社会の世代間における進歩—保守の傾向性は非常に明確である。特に北朝鮮をどのように見るかという部分において、50代と60代以上の年齢層は韓国の「従北勢力」 別決を主唱する保守候補を支持した反面、20~30代の若年層は進?候補を支持する傾向が強かった。このような北朝鮮認識の差異は自然に?北朝鮮政策の異見としてあらわれる。文在寅政府は、以上のような?民の北朝鮮脅威認識と理念の格差を考慮し、消耗的な葛藤費用を減らし、政策妥?性の高い最適な代案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IV. 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と東北アジア安保協力は互いを促進する

北朝鮮の核問題が悪化する中、東アジアの軍備競?は世界最高水準となっている。2017年、SIPRIの発表によれば、2012年から2016年の間に武器輸入を最も多く行った地域がアジアオセアニア（43パーセント）で、2位の中東（29パーセント）に比べて圧倒的である。中国がこれを先導しており、韓?、日本の軍事費?増大も注目に値する。米軍の戦略が全世界に影響を及ぼすという点で、アメリカの軍備増強もまた東北アジア安定の変数である。ここに北朝鮮の核問題は域内安定を妨げ、軍備競争を促進する要素—一種の定数—として作用している。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なくして域?安保協力は不可能に見える。だからといって、完全な非核化が達成される時まで域内安保協力は副次的なアジェンダなのだろうか。これと関連しては、40年余りにヨーロッパで始まった域内多者安保協力の協力から教訓を探ってみるべきであろう。

1970年代初めから始まった欧州安全保障協力?議（CSCE）は、世界大戦の再発防止と陣営を

超越した汎欧州安保協力を指向して出た。冷戦解体期における制度化をへて、今日に至っている（OSCE）。CSCEの枠から見られるように、東北アジア安保協力の制度化のための当面の課題は、断然肯定的な域内安保環境をつくることである。1975年8月1日、「ヘルシンキ宣言」の締結まで、ヨーロッパではアメリカとソ連の対話、東西ドイツの接触、そして自由陣営と共産陣営の関係改善が同時に展開した。そのような中、核兵器は米ソ関係、在来式武器の縮小はアメリカ、ソ連、そして中部ヨーロッパ国家の間の相互均衡兵力削減（MBFR）交渉で扱われた。これを東北アジアに適用すれば、アメリカと中国の対話、南北の関係改善が、域内安保協力の形成への肯定的な環境づくりに緊要である。そして北朝鮮の核問題は再び六者会合で、朝鮮半島の場合、在来式武器の縮小は南北軍事交渉で推進すべき問題である。

肯定的な域内安保環境づくりと関連してCSCEの事例から得ることができるもう一つの教訓は、第二次世界大戦とベルリン事態以降断絶していた西側諸国とソ連との外交関係が正常化していったという事実である。フランスと西ドイツはアメリカの牽制にもかかわらず、ソ連と交渉し、西ドイツはナチ時代の過去事を謝罪し、ソ連と東ヨーロッパ共産国家とも関係を正常化した。同じくアジアでも過去史に対する日本の誠実な態度が域内安保協力の必須である。さらに東北アジアの冷戦構造の一部であるアメリカ、日本と北朝鮮の敵対関係の清算も域内多者安保協力に向かう解決課題である。

もちろん北朝鮮の核問題の完全な解決なくして北朝鮮の国際社会への編入は可能ではないであろう。北朝鮮が非核化への目標を再び明言し、その道に進む具体的な行動を示す時、北朝鮮と域内国家間の信頼づくりが可能となり、その土台の上で域内多者安保協力の可能性も高まるであろう。

それでは非核化を達成するまで東北アジアの安保協力は不可能なのだろうか。非伝統的な安保分野においては非核化以前であっても域内安保協力が可能である。ここに北朝鮮も加させ、孤立主義路線の限界と国際規範を遵守した際における利益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実際、非伝統的な安保分野において多者安保協力の必要性はすでに高まっている状態である。気候変化、テロ、保健、海上安保、難民などにともなう人間の安保増進のための域内協力の制度化要請がそれである。ただし、非核化の可視的な進展なくして北朝鮮が参加する域内安保協力は制限的にならざるを得ない。

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と域内安保協力は好循環と悪循環のいずれの方向にも互いを促進する。もちろん非核化をはじめとした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を再稼動して域内安保協力を進ませる方向に進む協力外交が必要である。場合によっては多者安保協力を通じて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を促進する接近も有用であるため、それに対する対策もなくてはならないであろう。その過程で南北の対話を活性化してこそ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の両軸である南北関係と国際協力が好循環し得るであろう。

제2세션

동북아평화체제 구축방안

일본헌법 평화주의의 세계사적 의의와 과제

시미즈 마사히코 (일본체육대학·헌법학)

들어가며

1. 일본국 헌법제정의 배경과 두 가지의 평화주의

1. 세계의 흐름

① 서구 근대 입헌주의 이후의 흐름

- 18세기의 시민혁명 → 근대 헌법의 탄생 (자유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 보장)
- 20세기의 사회혁명 → 현대 헌법의 탄생 (사회권 · 국가에 의한 자유보장)

→시민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에 세계 입헌주의의 역사가 "강요됨"

② 전쟁 위법화의 흐름

- 1920년대 미국의 전쟁 비합법화 (outlawry of war) 운동
-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의한 아시아 민중 2000 만명의 희생
- 후기의 흐름 (二 2 ①②)

→세계(특히 아시아)의 민중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강요"

2 일본인의 생각

① 이제 전쟁은 싫다는 생각

- 태평양 전쟁에 의한 310만 명의 희생

→전쟁을 싫어하는 분위기로 일본의 민중이 '이제 전쟁은 싫다'는 의식 고양

② 민중의 헌법에 대한 생각

- 마츠모토위원회, 보수 정당 등의 헌법 초안
- 사의헌법부터 헌법연구회까지 민중의 헌법초안

→GHQ는 메이지 헌법과 다르지 않은 안을 부정하고, 민중의 안의 영향을 받음

3 일본국 헌법의 두 가지 평화주의

- 헌법 9조 ~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추구, 폭력(전쟁)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함

- 헌법 전문 ~ 평화적 생존권

...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함」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동일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의 추구, 구조적 폭력 (국내 외의 사회 구조에 의한 빈곤 · 기아 · 억압 · 소외 · 차별 등)이 없는 상태를 목표함
전쟁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을 권리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국민이 전쟁도 빈곤도 없는 상태에서 살 권리

二 일본국 헌법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9조

1 헌법학계의 9조 해석

① 전쟁의 포기 (9조 1항)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A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침략 전쟁을 포기 ← 1928년 부전조약의 해석

· B설... 자위 · 침략의 구별이 무리이므로, 자위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전쟁 포기 ← 먼저 일본의 전쟁의 반성

② 전력 불보유 (9조 2항)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갑설... 「목적」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 자위력 보유는 허용된다

· 을설... 「목적」은 1항전체 → 자위력 보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1항과 2항 해석의 조합

· 다수설... A설 + 을설 (9조 2항 전면포기설, 「무력없는 자위권」론)

· 소수설... A설 + 갑설 (한정포기설), B설 + 을설 (9조 1항 전면포기설)

④ 정부의 9조 해석

· 1항... A설

· 2항... 「전력」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넘는 것」

→ 「실력」은 헌법상 보유할 수 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경찰 이상 군대 미만의 조직)

2 전쟁 위법화 와 9조

① 전쟁 위법화 가운데의 9조 1항

1919년 국제연맹규약

1928년 부전조약 ←1920년대 미국의 전쟁 비합법화 (outlawry of war) 운동

1945년 UN헌장

· 과거 정전론 · 무차별 전쟁관

→침략 전쟁의 제한

→침략 전쟁의 포기

→ 「자위전쟁」의 제한

→더욱더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B설로 가면 전쟁위법화의 최첨단)

② 전쟁 위법화 가운데의 9조 2항

· 과거 정전론 · 무차별 전쟁관

→ 민간인 · 포로의 보호 (제네바 협약)

→ 필요 최소한의 공격

→ 무기 제한 (생물 무기, 화학 무기, 지뢰, 클러스터 폭탄 등)

→ 더욱더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을설로 가면 전쟁위법화의 최첨단)

3 헌법의 평화주의와 유엔 헌장

① 일본국 헌법과 유엔헌장 ~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행사에 대한 생각

· 헌장 2조 4항...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 헌법 9조 1항...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일본국 헌법은 유엔 헌장과 연속면과 단절면이 있음

② 집단적 자위권 (유엔헌장 51조)에 대한 생각

·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가 동맹국과 함께 싸울 권리 (예 : 일미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

· 그러나 이것은 1944년의 던바튼 옥스 제안에는 없었다

→ 미국의 참여로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설립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

③ 집단 안전 보장 (유엔헌장 42조)에 대한 생각

· 유엔군에 의해 국제사회가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거라는 생각

· 대 과시즘 전쟁이라는 제 2 차 세계 대전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됨

三 일본국 헌법의 평화적 생존권 ~ 전문

1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학설

① 평화적 생존권이란

· 1962년 헌법학자 · 호시노 야스사부로 씨가 제창

· 1973년 나가누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인

② 적극적 설의 각종 권리 내용

· 9조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 위반은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설

· 9조 위반으로 국민의 생명·자유가 위협되면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설

③ 평화적 생존권론의 의의

· 평화문제를 「정책」이 아닌 「권리」로 → 다수결로 빼앗을 수 없다

· 권리주체의 확대 (각종 소송에 있어서의 기지 주변 주민으로부터 전국의 시민으로)

· 전쟁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가담하지 않을 · 죽이지 않을) 권리로

④ 평화적 생존권의 과제

· 헌법상의 권리인가 재판상의 권리인가

- 재판규범성을 인정받을 경우 특정 개인에 한정할 것인가 국민 전체로 확대할 것인가
- 권리침해의 범위 (군대보유나 전쟁수행, 타국의 전쟁지원, 세계의 빈곤문제)

2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판례

① 나가누마 소송 1심 판결 (1973 년 삿포로 지방 법원)

- 전세계의 국민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인권 그 자체임을 선언
- 헌법 제3장에 개별적인 기본적 인권의 형태로 구체화 됨을 규정하고 있다
- 자위대는 위헌

② 햐쿠리 기지 소송 항소심 판결 (1981년 도쿄 고등 법원) 등

- 평화라는 것은 이념 내지는 목적으로서 추상적 개념
- 구체적인 소송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금지 소송판결 (2008년 나고야 고등 법원, 2009년 오카야마 지방 법원)

- 평화적 생존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
- 이라크에서의 항공 자위대의 활동은 헌법 9조 위반 (나고야)
- 징병거부권, 양심적병역거부권, 군수노동거절권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 (오카야마)

④ (참고) 한국의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판례

-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위헌 소송에서 헌법 재판소 판결 (2005 년) ...원고패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와 37조 1항 포괄적기본권)에서 평화적 생존권 자체는 인정
- 2007년 정부의 전시동원훈련의 위헌확인소송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2007년) ...원고패소, 평화적 생존권도 인정하지 않음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권리·운동

① 경위

- 2003년 이라크 전쟁
- 2006년~2010년 스페인 법률가를 중심으로 평화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증진 결의 채택
-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 초안
- 2016년 유엔총회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 채택

②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 초안 (2012년)

- 총 14조
- 권리주체...개인, 인민
- 국가...평화에 대한 권리에 의무를 진다
- 무력행사 · 위협의 포기와 핵무기 폐기를 추구
-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 인간의 안전보장...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상 · 양심 · 의견 · 표현 · 신앙 · 종교의 자유

-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세계에 사는 권리
- 포괄적 평화 교육 · 인권 교육에 대한 권리
- 양심적 거부의 권리
- 민간 군사 기업 · 경비 기업의 제한
- 압제에 대해 저항 · 반대할 권리
-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권리
- 안전 · 청결 · 평화적 환경에 대한 권리
- 피해자 · 취약한 입장 그룹의 권리
- 난민 · 이주자에 관한 권리

③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 (2016년)

· 찬성 131개국, 반대 34개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기권 (19 개국)

· 제 1 조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이 촉진 및 보장되고 충분한 발전이 실현되도록 평화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 2 조 국가는 평등과 무차별, 정의와 법치를 존중, 실시 및 증진하고 사회 내부와 사회 사이의 평화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제 3 조 국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특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국제기구, 지역 기관, 국가기관, 지방기관 및 시민 사회는 이 선언의 실행에서 지원하고 원조 할 것이 장려된다.

· 제 4 조 평화를 위한 교육의 국제 및 국가 기관은 관용, 대화, 협력 및 연대의 정신을 모든 인간 사이에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대학은 교육, 연구, 졸업 후 연수 및 지식의 보급에 중사함으로써 평화를 위해 교육 한다는 중대하고 보편적인 임무에 기여해야 한다.

· 제 5 조 이 선언의 어떠한 내용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이 선언의 제 규정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제반 국가에 의해 비준되고 관련 국제 및 지역 문서에 따라 이해된다.

4 유엔의 평화에 대한 권리와 일본국 헌법의 평화적 생존권

① 공통점

- 권리로서의 평화
- 구조로서의 평화

② 다른점

· 유엔의 평화에 대한 권리...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 교육을 언급, 유엔 헌장 상의 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전제

· 헌법의 평화적 생존권...국가 등의 언급 없음, 간소한 조문, 9조의 평화주의와 연동

四 일본에 있어서 평화적 생존권 · 평화에 대한 권리의 효용

1 전체

- 헌법을 근거로 재판소가 인정함 or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 헌법상의 권리 or 재판상의 권리
- 권리침해의 범위 (군대 보유와 전쟁수행, 타국의 전쟁지원, 세계의 빈곤문제)

2 재판소에 미치는 영향

-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헌 · 위법 판결
- 권리 실현을 촉구하는 판결

3 국회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등의 불법적인 전쟁에 협력하는 법률제정은 위헌 · 위법으로
-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향한 입법의 책무

4 정부에 미치는 영향

- 전반...미국 등의 불법적인 전쟁에 협력하는 국가행위는 위헌이며, 구조적 폭력의 해소를 향한 책무
- 방위성...조선 · 중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변경
- 외무성...유엔 총회 결의 등의 대응에 제한
- 북한 · 중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변경, 동아시아 평화 지대 실현에 노력
- 문부과학성...평화 교육의 책무

결론

- 2012년 4월 자민당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 과 관련하여
- ...9조 개정에서 국방군이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며 평화적 생존권 삭제
- 2017년 5월 이후 아베수상 · 자민당의 9조 개헌론과 관련하여
- ...자위대 위헌론이 있는 것에 대해 군수 방위 ·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부인
- 해외 파병의 금지 등 제도 해소
- 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9조 2항의 「공문화」 「사문화」
- 위헌인 「전쟁법」의 정당화
- 자위대의 「공공성」 획득 (야간비행 · 토지수용 · 징용 · 산학공동연구 등에 「공공성」)
- 일한의 과제
- ...한국전쟁의 휴전으로부터 종전까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군축, 비무장지대화

【시미즈 마사히코 프로필】

1966년 효고현 출생. 메이지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박사 후기과정 단위취득 만기퇴학. 삿포로학원 대학법학부 교수 등을 거쳐, 일본체육대학 체육학부 교수. 전문은 헌법학. 연구 주제는 평화주의, 감시사회론. 민주주의과학자협회 법률부회 이사, 일본민주 법률가협회 상임이사, 전쟁을 하지 않는 1000 명의 위원회 사무총장대행, 9조의회 간사.

第2セッション

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構築方案

日本国憲法の平和主義の世界史的意義と課題

清水雅彦(日本体育大学・憲法学)

はじめに

一 日本国憲法制定の背景と二つの平和主義

1 世界の流れ

① 西欧近代立憲主義以降の流れ

- ・ 18世紀の市民革命→近代憲法の誕生（自由権・国家からの自由の保障）
 - ・ 20世紀の社会革命→現代憲法の誕生（社会権・国家による自由の保障）
- 市民革命を経験していない日本に世界の立憲主義の歴史が「押しつけ」

② 戦争違法化の流れ

- ・ 1920年代のアメリカの戦争非合法化(outlawry of war)運動
 - ・ 日本のアジア侵略によるアジア民衆2000万人の犠牲
 - ・ 後記の流れ（二2①②）
- 世界（特にアジア）の民衆が二度と戦争をするなと「押しつけ」

2 日本人の考え

① もう戦争はイヤだとの考え

- ・ 太平洋戦争による310万人の犠牲
- 厭戦気分による日本の民衆がもう戦争はイヤだとの意識高揚

② 民衆の憲法の考え

- ・ 松本委員会、保守政党などの憲法草案
 - ・ 私擬憲法から憲法研究会までの民衆の憲法草案
- GHQは明治憲法と変わらない案を否定し、民衆の案の影響を受ける

3 日本国憲法の二つの平和主義

- ・ 憲法9条～戦争の放棄と戦力の不保持
- …消極的平和(negative peace)の追求、暴力(戦争)のない状態をめざす
- ・ 憲法前文～平和的生存権
- …「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
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
- 「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
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 …積極的平和(positive peace)の追求、構造的暴力（国内外の社会構造による貧困・飢餓

・抑圧・疎外・差別など)のない状態をめざす

戦争の加害者にも被害者にもならない権利

日本国民だけでなく全世界の国民が戦争も貧困もない状態で暮らす権利

二 日本国憲法の制度的保障としての9条

1 憲法学界における9条解釈

① 戦争の放棄 (9条1項)

・「日本国民は、……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A説…「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の侵略戦争を放棄←1928年不戦条約の解釈

・B説…自衛・侵略の区別無理故、自衛戦争含む一切の戦争放棄←先の日本の戦争の反省

② 戦力の不保持 (9条2項)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甲説…「目的」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自衛力保持は許される

・乙説…「目的」は1項全体→自衛力保持も許されない

③ 1項と2項解釈の組み合わせ

・多数説…A説+乙説(9条2項全面放棄説、「武力なき自衛権」論)

・少数説…A説+甲説(限定放棄説)、B説+乙説(9条1項全面放棄説)

④ 政府の9条解釈

・1項…A説

・2項…「戦力」は「自衛のための必要最小限度の実力を超えるもの」

→「実力」は憲法上保有できる(自衛隊は「軍隊」ではない、警察以上軍隊未満の組織)

2 戦争違法化と9条

① 戦争違法化の中での9条1項

1919年 国際連盟規約

1928年 不戦条約 ←1920年代米国の戦争非合法化(outlawry of war)運動

1945年 国連憲章

・かつての正戦論・無差別戦争観

→侵略戦争の制限

→侵略戦争の放棄

→「自衛戦争」の制限

→さらにこれを押し進めると？(B説に立てば戦争違法化の最先端)

② 戦争違法化の中での9条2項

・かつての正戦論・無差別戦争観

→文民・捕虜の保護(ジュネーブ諸条約)

- 必要最小限の攻撃
- 兵器の制限（生物兵器、化学兵器、地雷、クラスター爆弾など）
- さらにこれを押し進めると？（乙説に立てば戦争違法化の最先端）

3 憲法の平和主義と国連憲章

- ① 日本国憲法と国連憲章～武力による威嚇と武力行使の考え
 - ・ 憲章2条4項…「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
 - 憲法9条1項…「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 日独伊と戦った連合軍（United Nations）が国連（United Nations）に、広島と長崎への核
 - 日本国憲法には国連憲章との連続面と断絶面がある

- ② 集団的自衛権（国連憲章51条）の考え

- ・ 攻撃を受けていない国が同盟国と共に闘う権利（例：日米安保条約や韓米相互防衛条約）
- ・ しかし、これは1944年のダンバートン・オークス提案にはなかった
- アメリカの関与で認めてしまったためNATOやワルシャワ条約機構成立へ

- ③ 集団安全保障（国連憲章42条）の考え

- ・ 国連軍により国際社会が軍事力で平和を守る考え
- ・ 対ファシズム戦争という第二次世界大戦の経験から考えられた

三 日本国憲法の平和的生存権～前文

1 平和的生存権に関する学説

- ① 平和的生存権とは

- ・ 1962年に憲法学者・星野安三郎（ほしの・やすきぶろう）氏により提唱
- ・ 1973年の長沼（ながぬま）訴訟1審判決で承認

- ② 積極説の各種権利内容

- ・ 9条（戦争の放棄と戦力の不保持）違反は平和的生存権侵害になるとする説
- ・ 9条違反で国民の生命・自由が脅かされたら平和的生存権侵害になるとする説

- ③ 平和的生存権論の意義

- ・ 平和の問題を「政策」ではなく「権利」に→多数決で奪えない
- ・ 権利主体の拡大（各種訴訟における基地周辺住民から全国の市民へ）
- ・ 戦争の被害者にも加害者にもならない（加担しない・殺さない）権利へ

- ④ 平和的生存権の課題

- ・ 憲法上の権利か裁判上の権利か
- ・ 裁判規範性を認めた場合、特定の個人に限定するか、国民全体にまで広げるか
- ・ 権利侵害の範囲（軍隊の保持や戦争遂行、他国の戦争支援、世界の貧困問題）

2 平和的生存権に関する判例

① 長沼訴訟1審判決（1973年札幌地裁）

- ・全世界の国民に共通する基本的人権そのものであることを宣言
- ・憲法第3章の個別的な基本的人権の形で具体化され、規定されている
- ・自衛隊は違憲

② 百里（ひゃくり）基地訴訟控訴審判決（1981年東京高裁）など

- ・平和ということが理念ないし目的として抽象的概念
- ・具体的訴訟における違法性の判断基準になりえない

③ 自衛隊のイラク派兵差止め訴訟判決（2008年名古屋高裁、2009年岡山地裁）

- ・平和的生存権の具体的権利性を認める
- ・イラクでの航空自衛隊の活動は憲法9条違反（名古屋）
- ・徴兵拒絶権、良心的兵役拒絶権、軍需労働拒絶権等の自由権の基本権（岡山）

④（参考）韓国における平和的生存権に関する判例

- ・龍山から平澤への米軍基地移転協定の違憲訴訟での憲法裁判所判決（2005年）
- …原告敗訴、しかし大韓民国憲法10条（人間の尊厳と幸福追求権）と37条1項（包括的基本権）から平和的生存権自体は認める
- ・2007年の政府による戦時動員演習の違憲確認訴訟での憲法裁判所判決（2007年）
- …原告敗訴、平和的生存権も認めず

3 国際社会における平和への権利論・運動

① 経緯

- ・2003年 イラク戦争
- ・2006年～2010年 スペインの法律家を中心に平和への権利に関する宣言採択
- ・2008年～ 国連人権理事会で平和への権利促進決議採択
- ・2012年 国連人権理事会諮問委員会の平和に対する権利の宣言草案
- ・2016年 国連総会で平和への権利宣言採択

② 国連人権理事会諮問委員会の平和に対する権利の宣言草案（2012年）

- ・全14条
- ・権利主体…個人、人民
- ・国家…平和に対する権利に義務を負う
- 武力行使・威嚇の放棄と核兵器廃絶の追求
- 平和的手段による紛争解決
- ・人間の安全保障…恐怖と欠乏からの自由
- 思想・良心・意見・表現・信仰・宗教の自由
- ・大量破壊兵器のない世界に住む権利
- ・包括的平和教育・人権教育への権利
- ・良心的拒否の権利
- ・民間軍事会社・警備会社の制限

- ・ 圧政に対する抵抗・反対する権利
- ・ 持続可能な発展に関する権利
- ・ 安全・清潔・平和的環境への権利
- ・ 被害者・脆弱な立場のグループの権利
- ・ 難民・移住者に関する権利

③ 国連総会で採択された平和への権利宣言（2016年）

- ・ 賛成131か国、反対34か国（アメリカ、日本、韓国など）、棄権（19か国）
- ・ 第1条 すべての人は、すべての人権が促進及び保障され、並びに、発展が十分に実現されるような平和を享受する権利を有する。
- ・ 第2条 国家は、平等及び無差別、正義及び法の支配を尊重、実施及び促進し、社会内及び社会間の平和を構築する手段として、恐怖と欠乏からの自由を保障すべきである。
- ・ 第3条 国家、国際連合及び専門機関、特に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は、この宣言を実施するために適切で持続可能な手段を取るべきである。国際機関、地域機関、国家機関、地方機関及び市民社会は、この宣言の実施において支援し、援助することを奨励される。
- ・ 第4条 平和のための教育の国際及び国家機関は、寛容、対話、協力及び連帯の精神をすべての人間の間で強化するために促進されるものである。このため平和大学は、教育、研究、卒後研修及び知識の普及に取り組むことにより、平和のために教育するという重大で普遍的な任務に貢献すべきである。
- ・ 第5条 この宣言のいかなる内容も国連の目的及び原則に反する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ものとする。この宣言の諸規定は、国連憲章、世界人権宣言及び諸国によって批准される関係する国際及び地域文書に沿って理解される。

4 国連の平和への権利と日本国憲法の平和的生存権

① 共通点

- ・ 権利としての平和
- ・ 構造としての平和

② 異なる点

- ・ 国連の平和への権利…国家等の責務を規定、教育に言及、国連憲章上の自衛権行使の容認を前提
- ・ 憲法の平和的生存権…国家等の言及なし、簡素な条文、9条の平和主義と連動

四 日本における平和的生存権・平和への権利の効用

1 前提

- ・ 憲法を根拠に裁判所が認めるor国際法上の権利として国内で効力を有する
- ・ 憲法上の権利or裁判上の権利
- ・ 権利侵害の範囲（軍隊の保持や戦争遂行、他国の戦争支援、世界の貧困問題）

2 裁判所への影響

- ・ 権利侵害に対する違憲・違法判決
- ・ 権利実現を促す判決

3 国会への影響

- ・ アメリカなどの違法な戦争に協力する法律制定は違憲・違法に
- ・ 構造的暴力の解消に向けた立法の責務

4 政府への影響

- ・ 全般…アメリカなどの違法な戦争に協力する国家行為は違憲に、構造的暴力の解消に向けた責務
 - ・ 防衛省…朝鮮・中国に対する敵視政策の変更
 - ・ 外務省…国連総会決議などでの対応に枠
- 朝鮮・中国に対する敵視政策の変更、東アジア平和地帯実現へ努力
- ・ 文部科学省…平和教育の責務

おわりに

- ・ 2012年4月の自民党「日本国憲法改正草案」との関係で
- …9条改正で国防軍が集団的自衛権も行使へ、平和的生存権の削除
- ・ 2017年5月以降の安倍首相・自民党の9条改憲論との関係で
- …自衛隊違憲論があることによる自衛隊≠戦力・軍隊、専守防衛・集団的自衛権行使否認・海外派兵の禁止など歯止め解消
- 後法優先の原則による9条2項の「空文化」「死文化」
- 違憲の「戦争法」の正当化
- 自衛隊の「公共性」獲得（夜間飛行・土地収用・徴用・産学共同研究などに「公共性」）
- ・ 日韓の課題
- …朝鮮戦争の休戦から終戦へ、北東アジアの非核地帯化、軍縮、非武装地帯化へ

【清水雅彦プロフィール】

1966年兵庫県生まれ。明治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単位取得満期退学。札幌学院大学法

学部教授などを経て、日本体育大学体育学部教授。専門は憲法学。研究テーマは平和主義、監視社会論。民主主義科学者協会法律部会理事、日本民主法律家協会常任理事、戦争をさせない1000人委員会事務局長代行、九条の会世話人。

제3세션

한일시민평화운동의 과제와 협력방안

일본 평화 운동의 현재와 한일 시민 연대의 과제

총집결행동실행위원회

오다가와 요시카즈

1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1) 강해지는 아베 정권의 헌법 9조 개헌 책동

① 2012년 12월 총선에서 탄생한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의 정권과는 달리,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아베 정권이 일본회의 등 복고적 개헌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극우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지구규모의 군사 동맹으로 변질된 일미안보조약의 존재가 있다.

아베정권은 2014년 7월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각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헌에 발을 디뎠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견해는 "타국에 가해진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으로 위치 지어져 있었다.

이 내각의 결정과 2015년 4월의 일미 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안보 법제 (전쟁법)를 2015년 9월에 강행 통과시켰다.

이것들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정치를 실행한다는 입헌주의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었고, 시민들도 헌법학자 등 전문가도 헌법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

②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3일에 열린 개헌세력의 집회에 나온 비디오 메시지와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명시와 2020년의 개헌시행을 목표로 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자위대의 위헌 상태 해소”가 이유로 되어 있고, 해석 · 입법 개헌을 뒤쫓아 ‘합헌화’하고 해외에서의 전쟁에 참가하는 자위대에 보증 문서를 주는 것이다.

만일 이 개헌이 실행되면 헌법 9조가 후세와 세계에 공약한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은 공허해진다.

이상과 같은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해 전쟁법의 폐지, 9조 개헌 저지, 입헌주의의 회복과 헌법을 살리는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

아베 9조 개헌 NO! 전국시민행동이 결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규모로 서명 추진 체제가 만들어져 최근의 국정선거에서 총 투표 수의 과반수에 필적하는 3000만 명을 목표로 개헌 반대 서명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2) 급속히 진행되는 일미 군사 일체화

① 군사 · 경제면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미국의 군사전략 재검토(재조정)의 영향을 오키나와가 가장 강하게 받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의 4분의 3이 집중된 오키나와에 1800미터의 활주로 2개와 강습 상륙함도 해안가에 댈 수 있는 군항을 갖고 있으면서, 설비 수명 200년의 최신예 거대기지를 추가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인접시설에 핵무기 저장이 가능한 탄약고나 군사 훈련 시설의 기능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오키나와 미해병대 기지를 ‘전략적 출격 거점’으로 강화 고정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가나가와현 · 요코스카 기지에는 새로운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 증강되어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이와쿠니 기지의 확장 및 기능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타격군의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② 2015년 4월에 합의된 ‘일미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미군사 동맹 강화가 확인되어 ‘끊어지는 부분이 없는 공동’을 위해 평시부터 동맹조정 메커니즘의 설치를 확인했다. 이 조정 메커니즘은 전쟁법 성립후 2015년 가을에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군사 동맹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장비일체화’도 가속되고, 자위대의 오스프레이(V-22)나 F35의 구입, 미사일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의 배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쟁법 시행 후 공동의 군사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을 이륙해서 북한에 위협행동을 행한 B1 전략폭격기의 호위에 훈련명목의 자위대 전투기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이러한 기지 강화에 대해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 기지는 만들게 두지 않는다, 후텐마 기지, 오스프레이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싸움이 섬전체로 전개되어 전국에서 지원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신기지 예정지인 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2월 4일에 실시된 시장선거는 오키나와 현민의 목소리를 권력적으로 탄압하려는 아베정권과의 치열한 싸움이 되었다. 결과는 기지건설 반대후보가 석패하는 유감스러운 결과가 되었지만, 시민의 60%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2017년 가을에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사재선을 목표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3) 핵무기 금지 조약을 외면하는 아베 정권

① 2017년 7월 7일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제조, 취득, 보유, 저장, 사용 및 사용위협 등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약의 채택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일본, 한국 등은 불참했다. 또한 처음에는 조약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북한도 “미국의 불참 ”을 구실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조약의 체결에는 지금까지 56개국이 서명하고 5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의 채택은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비동맹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년간의 노력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세계 반핵 평화 운동, 두 세력의 합류라고 불린다.

가장 큰 증거가 2017년 연말에 ICAN(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다.

② 2018년 2월에 미국 ·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핵정책지침 “핵태세검토(NPR)”를 공표했다.

그 안에서는 핵무기를 “핵 · 비핵공격 쌍방의 억제”로 위치 짓고,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것을 명기하며, 핵무기를 더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소형 핵탄두 화와 각 순항 미사일의 개발을 내세웠다.

국제 사회의 핵무기 금지 운동에 도전하는 것 같은 미국 정부의 NPR에 대해 일본 정부는 “높이 평가한다”고 재빨리 코멘트했다. NPR은 핵무기를 “필요할 때 동북아시아 등에도 배포”하겠다고 하여, 이 지역에서의 핵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③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수억 명의 목표를 내세우는 “히바쿠샤(피폭자) 국제서명”을 주요하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515만 명을 넘는 서명이 모였다. 또한 약 1800개 지자체장 중 1016명이 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힘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에 핵무기 금지조약 서명 · 비준을 재촉하는 노력이 피폭자를 선두로 끈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

2 헌법 9조와 한반도, 동북아시아와의 관계

①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헌법은 한반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20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저지를 최대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점에서 보아도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실현, 영구적 평화주의는 헌법의 기둥이다.

이러한 헌법을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고 하는 보수파의 존재와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의 변경, 특히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의 해석 개헌이 반복되어 왔다.

그 발단은 1950년 8월 경찰예비대의 창설이었다. 직전의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미국이 참전했고, 일본점령을 위해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한반도에 보내지자, 국내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겼다고 하며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되었다.

1954년 7월, 미국의 압력 하에 일본이 스스로 방어 노력을 형성하는 자위대가 설치되어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실력조직이 마련됐다. 그 전년에 북한과 미국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1954년에는 일미쟁의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어 일본이 자국 방위를 위한 군비를 추진하는 경과가 있었다.

이 경과와 근본에는 “반공의 방과제로서의 일본”(1948년 1월 6일 로얄 육군장관)이라는 위치가 있다.

② 냉전이 종결된 후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피를 흘리는 동맹”이라는 요구에 압력을 높여 1992년 PKO법 성립으로 이어진다.

자국방어를 위한 실력조직에서,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다가온 이 때에, 무기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에 한정되는 등으로 하는 “PKO5원칙”이 확인되어 합헌화 되었다.

그 후,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맞닥뜨려, 전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비전투 지역에서의 활동에 한정해, 미군과 무력행사를 같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위대가 파견되게 되었다. 세계적 규모로 자위대가 미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③ 이러한 경과위에, 2014년, 2015년의 전쟁법이나 헌법 9조 개헌 움직임이 있다.

중동 등 일본에서 떨어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쟁 참여와, 중국의 군사·경제의 대두에 대한 대항을 다시 강화하는 쌍방의 노림수로 자위대의 군대화가 도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구입을 결정한 이지스 어쇼어는 5년 후 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의 북한의 미사일 방위에 즉시 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에 지대함 미사일 부대의 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월 하순에 보도되었지만, 그 목적은 중국군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미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통해 일본에 확대억제를 제공한다”고 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대는 “일본 및 그 주변 바다 공역”의 방어 전략을 “주체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월 아베총리는 “전수방위는 방위 전략으로서는 어렵다”, “먼저 공격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 입장에서 자위대 장비의 강화안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위대의 주체적인 “방위력 장비의 강화”의 구실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치 짓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3 원수폭 금지 운동과 한반도, 동북아시아

한국전쟁 때 미국은 원폭사용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때마침 “핵무기 금지와 국제관리”를 요구하는 4개 항목의 결의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회의에서 행해져, 이것에 찬성하는 서명이 요청되었다. 이 서명에는 세계에서 5억 명의 찬성이 전해져 미국이 한반도에서 원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는 힘이 되었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1954년 3월에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수폭실험의 “죽음의 재”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들이 방사능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원수 폭 금지 서명 운동이 확산되어 1년간 3360만 명이 동참했다.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후 원수폭 금지 운동으로 계승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일본에서 시민이 참가하는 평화운동에 영향을 주어 왔다.

4 운동의 공통 과제

(1)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시작된 것을 매우 환영하고 그것을 북미 대화, 더 나아가 6자 회담 등의 개최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대화 거부 입장을 보였다가 패럴림픽 종료 후 한일 군사 훈련의 재개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재촉한 아베총리에 대한 일본 국내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공문서 위조 혐의나 데이터 위변조 문제 등으로 공지에 몰린 상황도 크게 활용해서 아베 정권 타도 운동과 손을 잡고 투쟁을 진행한다.

그 때, 20년 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90일에 미군 사상자 52,000명, 한국군 490,000명”, “민간인을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던 것에 유의해서 한반도 및 주변에서의 현실적인 위협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

(2)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쟁하는 나라로 폭주하는 걸 정지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를 가속하여 아베 정권은 헌법 9조 개헌과 전쟁법의 구체화,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의 당면 과제는 3000만 명 서명을 성공시켜서 아베 정권의 9조 개헌 발의를 저지하고, 나아가 헌법을 지키고 살리는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야당의 공동투쟁으로 국정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또한 주일 미군, 자위대의 쌍방의 군사적 부담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현민의 투쟁과 공동으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단념시키고 후텐마 기지 철거, 해병대의 철수를 목표로 올해 가을 지사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다.

(3) 핵무기 금지 조약의 서명, 비준 노력

재미 일본 대사관의 미국 의회 발언에서, 오키나와에 핵 저장고 건설에 대해 “그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진술했던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 내에서의 핵저장 ‘가능성’을 생성하는 것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보유에 구실을 주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아도 핵무기 금지 조약의 서명, 비준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해서, 실현 가능한 정부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히바쿠사(피폭자) 국제 서명 운동에 노력을 가속한다.

(4) 역사의 수정에 반대하고 계승해서, 속죄하는 정치로 회귀

메이지 유신 150년인 올해 초, 아베 총리는 “막부말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아시아에도 몰려 왔습니다. 그 커다란 위기감이 일본인을 분발하게 해”, “일본인이 가진 힘을 결집 해서 근대화를 단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선조들은 독립을 지켜 내고 국난이라고도 부를 법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인권 억압 등의 일본 군국주의의 측면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시선이 향하고 있지도 않다.

그 아베총리 등의 정치적 자세에 고무되어,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량의 항의 엽서를 보내는 등의 극우 행동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폭주를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대국화를 진행하는 것과, 역사의 수정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노력을 계속한다.

(5)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에 위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빈곤과의 싸움을 확장

1944 년 5 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ILO(국제 노동기구) 총회는 “세계의 영원한 평화는 사회 정의를 기초로 해야만 설립할 수 있다”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협하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목적에 관한 선언”을 실시했다.

그 필라델피아 선언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글로벌 경제 하에서 격차와 빈곤이 심각해졌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 옹호, 최저 노동 기준의 확립과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은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에 대항하는 국민 운동의 기반이 된다. 그 점을 공유해서 빈곤과의 싸움을 확장해 간다.

이상

第3セッション

韓日市民運動の課題と協力方案

日本平和運動の今と日韓市民の連帯の課題

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

小田川義和

1 日本で起きていること

(1) 強まる安倍政権による憲法9条改憲策動

① 2012年12月の総選挙で誕生した安倍政権は、それまでの政権とは異なり、戦争する国づくりを露骨に進めている。その背景には、安倍政権が日本会議などの復古的改憲を声高に叫ぶ極右勢力を支持基盤にしていることと、地球規模の軍事同盟に変質した日米安保条約の存在がある。

安倍政権は、2014年7月に、集団的自衛権行使を容認する閣議決定をおこなうという解釈改憲にふみこんだ。それまでの日本政府の見解は、「他国に加えられた武力攻撃を阻止することをその内容とするいわゆる集団的自衛権の行使は、憲法上許されない」とするものであり、自衛隊は「自衛のための必要最小限度の武力」と位置づけられていた。

この閣議決定と、2015年4月の日米新ガイドラインを具体化する安保法制＝戦争法を2015年9月に強行成立させた。

これらは、憲法の範囲内での政治を行うという立憲主義を大きく損なうものであり、市民からも憲法学者などの専門家からも憲法違反が強く指摘された。

② 安倍首相は、2017年5月3日に行われた改憲勢力の集会へのビデオ・メッセージと、読売新聞のインタビューで、憲法9条への自衛隊の明記と2020年の改憲施行を目指す考えを明らかにした。

「自衛隊の違憲状態の解消」が理由とされており、解釈・立法改憲を後追いで「合憲化」し、海外での戦争に参加する自衛隊にお墨付きを与えるものである。

仮に、この改憲が実行されれば、憲法9条が後世と世界に公約した「戦争の放棄、戦力の不保持、交戦権の否認」は空洞化する。

以上のような安倍政権の暴走に対し、戦争法の廃止、9条改憲阻止、立憲主義の回復と憲法をいかに政治の実現をめざす市民の運動が大きく展開されている。

安倍9条改憲NO！全国市民アクションが結成され、全国各地でも自治体規模に署名推進体制が作られ、近年の国政選挙での投票総数の過半数に匹敵する3000万人を目標に、改憲反対の署名を、今展開している。

(2) 急速に進む日米の軍事的一体化

① 軍事・経済面での中国の台頭も意識したアメリカの軍事戦略の見直し（リバランス）の影響を、沖縄が最も強く受けている。

在日米軍基地の4分の3が集中する沖縄に、1800メートルの滑走路を2本もち、強襲揚陸艦も接岸できる軍港を持つ、耐用年数200年の最新鋭の巨大基地をさらに建設しようとしている。隣接施設の核兵器彫像可能な弾薬庫や軍事訓練施設の機能強化も図られている。沖縄の米海兵

隊基地を「戦略的出撃拠点」として強化・固定化する動きである。

沖縄だけでなく、神奈川県・横須賀基地には新しい原子力空母やイージス艦が増強されて機能強化が図られ、岩国基地の拡張、機能強化も進められている。海兵隊のみならず、空母打撃軍の強化も行われている。

② 2015年4月に合意された「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新ガイドライン）」では、日米軍事同盟の強化が確認され、「切れ目のない共同」のために、平時からの同盟調整メカニズムの設置が確認された。この調整メカニズムは、戦争法成立後の2015年秋に具体化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軍事同盟強化の動きの中で、在日米軍と自衛隊の「装備の一体化」も加速し、自衛隊のオスプレイやF35の購入、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地上配備型迎撃ミサイル）の配備などが進められている。

また、戦争法の施行後、共同の軍事行動が繰り返されており、例えば、グアムを離陸して北朝鮮への威嚇行動をおこなったB1戦略爆撃機の護衛に、訓練名目の自衛隊戦闘機が参加し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

③ このような基地強化に対し、沖縄では「辺野古に基地は作らせない、普天間基地、オスプレイの即時撤去」を求めるたたかいが高まる形で展開され、全国からの支援行動も継続されている。

新基地予定地の名沖縄県名護市で2月4日に行われた市長選挙は、沖縄県民の声を権力的に弾圧しようとする安倍政権との熾烈なたたかいとなった。結果は、基地建設反対の候補が惜敗する残念な結果となったが、市民の6割が基地建設に反対という世論状況に変化はない。2017年秋には、沖縄県知事選挙が予定されており、新基地建設反対の知事再選をめざす取り組みが焦点となっている。

(3) 核兵器禁止条約に背を向ける安倍政権

① 2017年7月7日に国連で、核兵器禁止条約が122か国の賛成で採択された。

条約は、核兵器の開発、実験、生産、製造、取得、保有、貯蔵、使用と使用の威嚇などのあらゆる活動を禁止している。

この条約の採択に、アメリカの核の傘の下にある日本、韓国などは参加しなかった。また、当初は条約に賛成の立場を示していた北朝鮮も「アメリカの不参加」を口実に参加をとりやめた。2017年9月から開始された条約の調印では、これまでに56か国が調印し、5か国が批准している。

核兵器禁止条約の採択は、軍事同盟に参加しない非同盟諸国を中心にした長年の取り組みと、「核兵器のない世界」を求める世界の反核平和運動の二つの力の合流だと言われる。その最大の証が、2017年年末にICAN（核兵器廃絶国際キャンペーン）にノーベル平和賞の受賞である。

② 2018年2月にアメリカ・トランプ政権は、新たな核政策指針「核態勢見直し(NPR)」を公表した。

その中では、核兵器を「核・非核攻撃の双方の抑止」として位置づけて、通常兵器の攻撃にも核兵器で対応することを明記したこと、核兵器をより使いやすくするための小型核弾頭化や各巡航ミサイルの開発を打ち出した。

国際社会の核兵器禁止の動きに挑戦するようなアメリカ政府のNPRに対し、日本政府は「高く評価する」と、いち早くコメントした。NPRでは、核兵器を「必要な時には北東アジア

などにも配備」としており、この地域での核軍拡競争と核戦争の危険性を高めることは確実である。

③ これらの状況をふまえ、日本国内では、2020年までに世界で数億人の集約目標を掲げる「ヒバクシャ国際署名」の取り組みが重視され、これまでに515万人をこえて集約されている。また、約1800の自治体首長の内、1016名がその署名に賛同している。これらの運動の力を背景に、核兵器禁止条約への署名・批准を日本政府に迫る取り組みが、被爆者を先頭に粘り強く進められている。

2 憲法9条と朝鮮半島、北東アジアとの関係

① 1947年5月3日に施行された日本国憲法は、朝鮮半島などアジア全域で2000万人以上の犠牲者を出した日本軍国主義の復活阻止を最大の目的に制定された。その点からしても、国民主権、基本的人権の実現、恒久平和主義は憲法の柱である。

このような憲法を「占領軍による押し付け憲法」とする保守派の存在と、アメリカの日本占領政策の変更もあって、とりわけ憲法9条の平和条項の解釈改憲が繰り返されてきた。

その発端は、1950年8月の警察予備隊の創設であった。直前の6月に勃発した朝鮮戦争に「国連軍」としてアメリカが参戦し、日本占領のために駐留していた米軍が朝鮮半島に送られ、国内の治安維持に「空白」が生じたとして日本の再軍備が開始された。

1954年7月、アメリカの圧力のもと、日本自らの防衛努力を形にする自衛隊が設置され、武力攻撃に対処する実力組織が設けられた。その前年に米朝の休戦協定が締結され、1954年には日米争議防衛援助協定が締結されて、日本が自国防衛のための軍備を進めるという経過があった。

この経過の大本には、「反共の防波堤としての日本」（1948年1月6日、ロイヤル陸軍長官）との位置づけがある。

② 冷戦が終結した後の1991年に勃発した湾岸戦争は、アメリカから日本に対する「血を流す同盟」への圧力を高め、1992年のPKO法成立につながる。

自国防衛の実力組織から、海外で武力行使する組織への「変化」が迫られたこの時に、武器使用は要員の生命等の防護のための必要最小限度のものに限られるなどとする「PKO5原則」が確認され、合憲化された。

その後、2003年のイラク戦争に際し、戦闘が現に行われていない非戦闘地域での活動に限定し、アメリカ軍との武力行使との一体化を行わないとの「条件」で、自衛隊が派遣されることになった。世界的規模で、自衛隊がアメリカ軍を補完する役割を持つことになった。

③ これらの経過の上に、2014年、2015年の戦争法や、憲法9条改憲の動きがある。

中東など、日本から離れた地域でのアメリカの戦争への参加と、中国の軍事・経済の台頭に対する対抗を再強化する双方の狙いで、自衛隊の軍隊化が企図されている。

例えば、日本が購入を決定したイージス・アショアは、5年後の配備が予定されており、今の北朝鮮のミサイル防衛に即応するものではない。沖縄本島に、地対艦ミサイル部隊の配備を検討し始めた2月下旬に報じられたが、その目的は中国軍への対抗と言われる。

日米新ガイドラインでは、アメリカが「核戦力を含むあらゆる種類の能力を通じ、日本に拡大抑止を提供する」とされる一方で、日本に対する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自衛隊は「日本及びその周辺海空域」の防衛作戦を「主体的に実施」することされている。

2月に安倍首相は「専守防衛は防衛戦略としては苦しい」、「先に攻撃したほうが圧倒的に有

利になる」と国会で答弁した。その立場で自衛隊装備の強化策が検討されはじめており、護衛艦の空母への改造検討を否定していない。

このような自衛隊の主体的な「防衛力装備の強化」の口実として、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を位置づけていることは否めない。

3 原水爆禁止運動と朝鮮半島、北東アジア

朝鮮戦争の際、アメリカは原爆使用の用意があることを表明した。折しも、「原子兵器禁止と国際管理」を要求する4項目の決議がスウェーデンのストックホルムの会議で行われ、これへの賛同署名が呼びかけられた。この署名には、世界で5億人の賛同が寄せられ、アメリカの朝鮮半島での原爆使用の手をしばる力になった。

その後、日本では、1954年3月にアメリカが太平洋ビキニ環礁で実施した水爆実験の「死の灰」で被災した漁船員が放射能症で死亡するという事件を契機に、原水爆禁止署名運動が広がり、1年間で3360万人の賛同を集めた。様々な団体市民が共同する取り組みは、その後の原水爆禁止運動に引き継がれたばかりにとどまらず、その後の日本における市民参加の平和運動に影響を与え続けてきた。

4 運動の共通の課題

(1) 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の対話による平和的解決を

平昌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韓国と北朝鮮の直接対話が始まったことを強く歓迎し、それを米朝対話、さらには6か国協議などの開催など、対話による問題解決を求める運動を強めることが喫緊の課題である。

とりわけ、対話否定の立場を示し、パラリンピック終了後の日韓軍事演習の再開をムンジュエン韓国大統領に迫った安倍首相に対する日本国内での批判を高める。

公文書偽造疑惑やデータ改ざん問題などで追い詰めている状況も大いに活用し、安倍政権打倒の運動とも結んで取り組みを進める。

その際、20年前に米・クリントン政権が、「最初の90日でアメリカ軍の死傷者52,000人、韓国軍490,000人」、「民間人を含めれば100万人以上」との推計を行っていたことにも留意し、朝鮮半島および周辺での現実的な危険性についての認識共有にも力点を置く。

(2) 日本の軍事大国化、戦争する国への暴走をストップ

戦争する国づくりを加速させる安倍政権は、憲法9条改憲と戦争法の具体化、そして軍事大国化を同時に進めている。

日本国内での当面の課題は、3000万人統一署名を成功させて安倍政権による9条改憲発議を阻止し、さらに憲法を守りいかす政治の実現のために政治の転換をめざす市民と野党の共闘で国政選挙に勝利することにある。

また、在日米軍、自衛隊の双方が軍事的負担の押しつけを強めている沖縄で、県民のたたかいと共闘し、辺野古新基地建設を断念させ、普天間基地撤去、海兵隊の撤退をめざして今年秋の県知事選挙に勝利することにある。

(3) 核兵器禁止条約の署名、批准の取り組み

在米日本大使館がアメリカ議会の意見聴取に対して、沖縄への核貯蔵庫建設について「その提

案には説得力がある」と述べ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や中国を念頭に、日本国内での核貯蔵の「可能性」を作り出すことで核抑止力を強めようとするのが、北朝鮮の核保有に口実を与えるという悪循環がおきている。

この点からしても、核兵器禁止条約の署名、批准をもとめる取り組みを進め、実現できる政府をめざす必要がある。

ヒバクシャ国際署名を運動の柱に、取り組みを加速させる。

(4) 歴史の修正に反対し、引き継ぎ、償う政治への回帰

明治維新から150年の今年の年頭、安倍首相は、「幕末、植民地支配の波はアジアにも押し寄せました。その大きな危機感が日本人を奮い立たせ」、「日本人の持てる力を結集し、近代化を一気に推し進めることで先人たちは独立を守り抜き、国難とも呼ぶべき危機を克服」したと述べた。

そこには朝鮮半島の植民地化と人権抑圧などの日本軍国主義の側面は一言も触れられず、目が向けられていない。

その安倍首相などの政治姿勢に活気づき、例えば慰安婦問題に言及した教科書を採択した学校に大量の抗議ハガキが送られるなどの極右の行動も起きている。

北朝鮮の暴走を最大限利用して軍事大国化に進むことと、歴史の修正はメダルの表裏の関係ともなっていることを直視して取り組みを続ける。

(5) 一部の貧困は社会全体にとって危険との認識を共有した貧困とのたたかい

1944年5月、アメリカ・フィラデルフィアで開かれたILO（国際労働機関）の総会は、「世界の永続する平和は、社会正義を基礎としてのみ確立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労働は、商品ではない」、「一部の貧困は、全体の繁栄にとって危険である」などを内容とする「目的に関する宣言」をおこなった。

そのフィラデルフィア宣言を改めて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グローバル経済のもとで格差と貧困が深刻化した。

その点で、労働者の権利擁護、最低労働基準の確立と社会保障制度の拡充は、戦争する国づくりと対抗する国民運動の基盤となる。その点を共有し、貧困とのたたかいを広げていく。

以上

제3세션

한일시민평화운동의 과제와 협력방안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한일 평화연대의 중요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상임활동가 박석진

1. 서언

한반도가 오랫동안 길게 드리웠던 전쟁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의 대화와 진전이 그것이다. 올 초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용했고 이후 남북대화는 급속도로 진전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은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북이 핵무력의 건설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까지 상정했으며 지난해 북미간의 대결국면에서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해 온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입장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로 가득하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않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전략을 수립하고 북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연습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도 했다. 북의 비핵화와 북미대화 의지 표명에도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두고 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북미간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아 일본의 아베정부는 급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을 공언하며 소위 보통국가화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16년 말 한일 간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는 한국이 미일 MD에 사실상 편입된 것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실질적 가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다. 평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의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평화 및 평화운동의 개념

평화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이지만 사전적 의미

에서는 ‘인간집단(종족, 국가, 국가군) 상호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된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통은 이를 직접적 폭력이 부재하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지칭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가 부재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 규정한 바 있다. 갈통이 말한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는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로 인한 반평화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 등 광의적 평화개념까지 언급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언급되는 평화 또는 평화운동의 내용에는 사전적 의미의 내용에 국한해 언급하기로 한다.

사전적 의미의 평화의 개념에서 보면 평화운동은 ‘인간 집단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어와 통제 나아가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식과 관련해서도 상이한 방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힘을 통한 평화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지향하는 방식이기도하고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가 우리사회를 더 평화롭게 해오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한 각 국가권력의 노력이 세상을 더 큰 전쟁과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 비폭력적 방식에 의해 평화상태를 추구하려는 방향과 관련한 노력이 존재한다. 필연적으로 국가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온갖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순진하다거나 이상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같은 평화운동은 진전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러 반평화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현장에서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하에서 언급할 평화운동의 내용이기도 하다.

3. 한국평화운동의 특징과 현황

한국에서 평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진영의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중반경으로 확인된다. 높은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며 전쟁의 위기가 상시적인 사회에서 이처럼 평화운동이 뒤늦게 시작된 주된 원인은 한국전쟁의 미종식과 분단이라는 한반도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남북한을 합해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지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된 3년간의 전쟁을 통해 남과 북은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되었고 종식되지 못한 전쟁의 연장상태인 분단이라는 현실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회현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은 북한이라는 절대적인 적의 위협을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활용하며 시민사회를 억압했고 이러한 분단 상황을 자신의 권력 유지 및 강화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했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이러한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국가의 안보정책에도 일정한 파열구를 냈고 국가의 안보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환경이 형성되었다.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은 분단이라는 한반도적 특수성과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평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통일운동이 먼저 시작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사회운동의 주요한 역량을 담당했던 학생운동조직이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문익환 목사 등 종교계와 재야의 주요인사들이 이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본격화되었다. 국가보안법이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통일운동은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들어 통일운동은

정부차원의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으로 이어지며 통일운동은 중요한 성과를 목전에 두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와 이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반복적인 안보정책으로 회귀했고 지난 10여년의 시간동안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통일운동도 대폭 위축되었다.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등 급속도로 남북관계가 진전하고 있다. 이후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통일운동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진전될지가 주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관련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평화라는 큰 틀에서는 통일운동과 연관되지만 통일을 주된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운동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평화운동이 태동하고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 F-15K 도입 반대운동, 이라크전 파병반대운동과 2000년대 중반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F-15K 도입 반대운동은 도입과정에서 미국의 외압과 부정, 성능상의 결함과 경제적 비용 문제 등이 대중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북한에 대한 공격적 무기 도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통일운동과 구별되는 평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 지칭되었던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의 전진기지 및 거점기지화 해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통일운동과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었다.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은 한반도 영역 이외의 사안에 한국 평화운동이 관심을 갖고 행동한 경우였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으나 당시 2차 북핵위기 국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도 담겼다는 점에서 한국내 상황과의 연관성도 존재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북 대응능력 강화와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목적을 가진 정부와 해군의 무분별한 군사력 건설 정책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으나 보다 복합적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 비민주주의적 요소가 주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의 요소가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 2000년대 초반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두 여중생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의 촛불시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지만 종속적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한미간에 협의에 의해 주한미군기지 반환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에 주목한 일련의 대응활동도 시민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주목했으나 주둔군 지위협정의 불평등한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평화운동은 통일운동과의 연관성은 갖지만 안보정책의 비민주성에 대한 저항, 시민의 평화적 생존권, 환경문제 등 기존 통일운동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담으며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는 반핵이라는 평화운동적 요소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의제로 한 통일운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이며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한 최

대 현안이기도 하다. 과정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북한의 핵무력(핵무기와 그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는 직접적 당사자인 북미와 한국 그리고 이해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간에 협상과 파국을 반복하며 한반도 전쟁위기의 기본적인 원인요소로 존재해왔다. 1993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핵사찰 문제로 불거진 위기(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지원과 중유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로 봉합되었으나 2001년 부시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에 북한은 2002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의 핵동결 상태를 감시해 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어 2003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2차 북핵위기)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이 치닫자 중국의 중재로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2005년 9월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싶었으나 성명에 합의한 내용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은 북한이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며 BDA(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을 터뜨리고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파기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며 본격적인 핵 무력 개발의 길로 들어섰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 지난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통일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노정했다. 북미 간에 진행된 협상의 의제가 북의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및 북미간 국교정상화로 전개되고 있을 때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년 북이 핵무력 건설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어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함과 더불어 핵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의 운동세력도 입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반핵의 관점에서 북미협상의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전 세계의 비핵화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까지 나아가겠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경로의 측면에서 큰 이견이 있지는 않으나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만의 핵 포기가 불공평하며 북한의 핵포기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포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연대활동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따로 집회나 기자회견이 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를 통해 북측이 북미대화의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이견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

이상에서 한국 평화운동의 특징과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언급했다시피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은 분단이라는 한반도적 특수성에 기인해 평화운동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후 평화운동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하에

서는 통일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들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1) 한미동맹의 재조정 및 극복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와 관련해 우선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재조정 또는 극복의 문제이다.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서도 확인되듯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요 주체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간의 종속적 군사동맹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될 때마다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지속해왔다. 1991년 말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상호 불가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으나 그 다음해에 미국은 북핵 문제를 들고나와 한반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었다. 2000년 남북 간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자 그 다음해인 2001년 부시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대북 적대정책과 고립·압박정책을 강행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와 압박에 몰입했다. 작년 9월에는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북한 측 국제공역까지 침투하는 무력시위를 전개했는데 북이 이에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결국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북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 미국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남북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코퍼전략이라 불리우는 제한적 타격전략을 검토하고 북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비밀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지속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미국 측 대표로 온 부통령은 천안함을 찾아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한국이 마련한 북과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긴 분단의 과정에서 북한의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북 역시 반평화적인 군사행동과 반통일적인 행동들을 했다. 그런 점에서는 남측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이 서로의 위협을 내치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문제는 미국이 남북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의 주요한 행위자로 작용하며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군사적인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한국에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군이 갖는 기형적 구조는 단지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대에 대한 지휘의 문제는 군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군사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북과의 협상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의 주요 내용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 군사력의 전개와 이를 한국군이 어떻게 지원할지를 숙달하는 것이다. 이 군사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수립하는 작전계획에 맞춰 진행된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전략 수립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운전석에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앞당긴다는 방침은 긍정적이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보다 8배가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기상조라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안나오길 바란다.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16 세계 군비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남한의 국방비는 평균 301억달러이며 북한의 국방비는 35억달러로 남한이 약 8.5배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여러 불평등한 문제들도 조정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용산미군기지 오염사례처럼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책의 요구 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올 해 한미 간에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도 주요한 사안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과의 민간교류 강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활성화되었던 남북 간의 민간교류는 2008년 금강산에서 6·15공동행사 이후 사실상 단절되었으며 2016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대화의 양상을 보아야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대 세습과 북핵 개발 등으로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만 남북한 민간교류는 상호간이 적대감을 희석하고 이후 상호간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전 정부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수반한 남북한 민간교류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3) 평화 군축운동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과급력이 달라지겠지만 평화를 위한 군축운동도 주요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전작권 환수 등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전 정권보다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전력의 구성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Kill Chain)이나 대량보복(KMPR) 등 공세적 무기체계의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이전 노무현 정부 때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안보에 취약하다는 보수층의 인식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강화를 통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군비증액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군비증액은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어야 할 정부예산의 낭비만 초래했을 뿐 평화를 증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적절한 군사비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남북한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4) 무기도입 및 방산비리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방산비리 또는 무기도입비리(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될 수 있다. 방산비리가 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무기들이 생산되거나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뇌물, 특혜 등을 의미한다면 무기도입비리는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특정 무기가 주요하게 검토된다는 점에서 소요단계에서의 비리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F-15K 도입 비리 등을 들 수 있다)는 국민 대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이며 그 비리 규모도 경우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정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작동하는 무

기도입비리는 외국산 도입 무기의 대부분이 미국 군수업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거론되는 무기체계의 소요 부분과 관련한 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

5) 평화운동의 전문성 강화와 정부정책에의 관여

언급한 동맹의 재조정이나 군축,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무기체계 도입 문제는 정부 차원의 국방정책이나 군사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 현재 국방부가 제기하는 위협분석과 군사력 평가 그에 따른 적정 군사력 건설과 그에 따른 비용 판단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무기검증소요위원회가 지식경제부에 설치되었으나 이후 국방부로 이관되며 무력화되어 버렸다. 이후 국방부 외 차원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의 전문위원이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화운동이 이 구조에서 일정 역할을 하려면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과 관련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인식을 가진 인적 풀을 형성해야 하며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역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6) 군사기지 주변 시민과의 연대

군사기지 및 군사훈련장은 군대가 시민과 생활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 한국사회에서 민과 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군대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동안 주로는 미군기지의 건설이나 이전과 관련해 평화운동이 집중했으나 이제는 한국군 기지나 훈련장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수원이나 광주, 대구 등지에서 군 공항의 이전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로는 정부와 군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강행이 갈등의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군사기지의 이전과 건설은 인근 시민들의 삶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역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후 평화운동이 주목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된다.

7) 평화교육의 확충과 대결적 안보담론의 극복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내용을 주로 하는 국가주의적 안보담론이 지배했으며 이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관련된 내용의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전쟁을 재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의 대결적 안보담론의 뿌리가 한국전쟁임을 상기하면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가 주도해 설립한 용산의 전쟁기념관에는 여전히 냉전적이고 반복적인 기록들이 가득하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전시물의 주된 의도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매년 2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이 곳을 찾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초중고 학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반평화적 인식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쟁기념관의 전시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시정이 필요하다. 또 한국전쟁 당시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과 관련한 기행사업도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전쟁의 위협성과 더불어 군대라는 조직이 갖는 양면성과 위협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강한 군대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안보담론에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 국제평화연대의 강화

북핵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국제적 사안으로 확장되었다.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력 확장 및 한미일 3국 군사동맹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위기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국제평화운동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대응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일 평화연대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절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5. 한일 평화연대의 중요성

1)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둘러싼 상황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립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기본적인 요인을 구성한다면 일본 아베정부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안보법제를 통해 자위대의 군사력을 확장하고 나아가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평화위협 요소이다.

일본 아베정부는 최근 적 기지 공격능력 구축을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으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수십 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작년 9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은 중국의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유발하기도 했다. 아베정부는 이 같은 일본 군사력 확장의 주요 근거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주되게 활용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올 초 추경예산을 통해 2,345억엔(한화 약 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방위비 지출을 결정했는데 주된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로써 2017년에 일본이 지출한 방위비는 총 5조 3596억엔, 한화 약 52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 아베정부는 나가사키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했는데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한 최초의 훈련으로 평가되었다. 나가사키가 2차대전 당시 미국이 투하한 원폭의 피해지역임을 떠올리면 아베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자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지난 2016년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의 체결로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 한미 간 그리고 미일간 상호방위조약과 군수지원협정 및 군사비밀보호협정 등 군사동맹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마지막 한 번의 완성을 위한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리고 작년 주한미군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본격적인 가동을 의미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주요한 매개가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의 구축

이었으며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가함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되어 온 미일 MD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31일 있었던 한중간의 사드 합의(공식 명칭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는 한국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불참여를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자국의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실제 경제적·군사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북핵문제에 중국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국과의 협상에 나섰고 다음과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한중간 사드 합의 주요 내용>

- 한국은 중국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중국은 사드 반대를 재천명한다
- 동시에 중국은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며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희망하며 이후 군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사드문제를 해결해나간다
- 중국은 미국 MD 구축 및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천명하고 한국은 그간 한국정부가 밝힌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국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

다소는 외교적인 수사가 동원된 이 합의문에서 중국이 주목하는 ‘한국이 표명한 입장’은 한중간 합의가 있기 하루 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을 의미한다. 소위 ‘3NO원칙’으로 불리는 이 입장은 사드 추가배치 하지 않으며,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한다.

클린턴 정부 당시 미 국방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이어 부시정부에서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현재 미국의 안보관련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클린턴 정부 당시부터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추진을 본격화해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제도화가 진전되고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그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장애물을 만난 셈이 된다. 한중간 사드 합의가 있자마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해 한중간 합의에서 밝힌 한국정부의 입장을 주권포기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3NO원칙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이행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한중간 사드 합의는 한미동맹의 미국이 가져가려는 한미동맹의 확장에 일종의 ‘제한선(limit line)’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간의 사드 합의로 사드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하다. 그러나 여전히 사드

는 한반도에서 그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못했으며 주변국의 군비증액과 군사적 갈등요소로 남아있다. 한중간 사드 합의가 있는 직후인 작년 12월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시기는 한미일이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때와 일치해 사실상 주한미군 사드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사드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드 배치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지 못하고 추진함으로써 중대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했으며 성주 소성리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금도 성주 소성리의 사드 기지 입구에는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평화운동이 여전히 사드 문제에 연대해야 할 이유들이 다.

2) 한일 평화연대 현황과 과제

동북아의 신 냉전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북핵문제의 진전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한일간의 평화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황 파악의 제한성으로 한일간 평화연대의 다양한 전개를 다 거론할 순 없으나 주요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는 한국 내 미군기지 건설 및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평화적·반인권적·반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는 2007년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현황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일본 및 오키나와의 평화활동가들과 연대를 시작했다. 2008년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 미군기지의 반평화성과 환경오염 문제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일본, 오키나와,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관련한 내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5월에 열리는 오키나와 5·15 평화대행진에 한국참가단을 구성해 참여해오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2007년부터 일본의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와 매년 평화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류회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 미군기지 및 미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다.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교류회이다 보니 한국과 일본의 주둔국 지위협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처음에는 한일 변호사들만의 모임의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평화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한일만의 연대는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평화연대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나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 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는 2015년 한국에서 'No Wars, No Nukes'를 슬로건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GPPAC는 2014년에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 구축을 위한 요소'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한국의 참여연대와 일본의 피스보트 등이

주요한 참가단위이다.

평화의 바다 섬들의 연대는 한국의 강정, 대만, 오키나와, 이시가키 등 군사기지 및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거나 건설 중인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평화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이다. 2014년 한국의 제주 강정마을에서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오키나와, 2016년에는 대만, 작년에는 오키나와현 내의 이시가키섬에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한일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또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나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의 바다 섬들의 연대가 주되게는 한국과 일본 및 오키나와 등지의 군사기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 GPPAC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큰 틀의 주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소중한 연대활동이지만 답사와 상황 공유, 심포지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례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후 각 네트워크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일본의 군사화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요한 안보 및 평화 현안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개되길 기대해본다.

5. 결론

이상에서 한국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한일 평화연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평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도 없고 일부 사안에서는 평화운동 내 이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가 조심스러웠다. 이후 토론과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평화운동의 과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여러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제출된 내용을 추려 정리해 본 것이다. 그 중에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과제에서 우선 순위로 언급한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극복은 사실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평화·통일운동의 화두였으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동맹국에게도 예외없는 자국 이기주의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주요하게 언급해보았다.

한일 평화연대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찾을 수 없어 활동을 하며 진행했던 일과 주변의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한 몇 가지 사례들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해 본 것이다. 이후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를 위해 보다 자세한 조사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언과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가 평화로 향할지 반대로 대립과 갈등, 전쟁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도 평화로 향한 방향타를 굳게 잡고 있는 것, 그것이 평화활동가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평화로 향하는 길에 함께 할 수 있길 희망한다.

韓国の平和運動の課題と韓日平和連帯の重要性

ひらかれた軍隊のための市民連帯(Civilian Military Watch)

常任活動家 パク・ソクチン

1. 序言

朝鮮半島が、長い間暗く覆われていた戦争の危機の影から抜け出す兆しが現れている。平昌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始まった南北間の対話と進展がそうである。今年初め、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は「新年の辞」を通じて、北朝鮮が平昌オリンピックに参加できるとの意思を表明した。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は即座にこれを受け入れ、その後、南北対話は急速に進展した。南北の首脳会談が合意され、北は米国との対話への意志を表明した。何よりも北朝鮮は、文在寅大統領が派遣した特使に対し、朝鮮半島の非核化への意志をはっきりと伝えた。北が核武力の建設を憲法に明示し、国家の戦略的目標とまで想定したことや、昨年、米朝間の対決局面において核は交渉の対象ではないと明言してきたことを踏まえれば、破格な立場変化といわざるを得ない。

そうであっても、朝鮮半島をめぐる軍事安保情勢は、依然として不安定な要素に満ちている。南北対話が進められている間も、米国は北に対する制裁と圧迫を緩めることなく、平昌オリンピックが終われば大規模な韓米合同軍事演習を実施すると公言した。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戦略を立て、北との全面戦を想定した軍事演習を秘密裏に進めたりもした。北による非核化と米朝対話への意志表明に対しても、米国は、表面的には肯定的に捉えるとしながらも、北朝鮮の非核化の意志を見守るという態度を示している。今後の米朝間の対話が容易ではないだろうという展望が出てくるのはそのためである。

一方、日本の安倍政府は、北朝鮮による核と弾道ミサイル開発を問題視しながら、軍事力を急速に拡張している。日本の平和憲法の改正を公言し、いわゆる「普通の国」化への道に本格的に踏み入っているのである。更に、2016年末に日韓の間で締結された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は、米国の主導する日米韓の三角軍事同盟を加速化している。昨年行われた、星州(ソンジュ)郡の韶成(ソソン)里における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サード(THAAD)の配備は、韓国が日米MD(ミサイル防衛)に事実上組み入れられ、日米韓三角軍事同盟が実質的に稼働しはじめ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とも言え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韓国と日本の平和運動活動家たちがお互いの状況を共有

し、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膝を交える場はいつにも増して大切になっている。平和のための連帯と実践の方策がつけ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

2. 平和と平和運動の概念

平和という言葉は、私たちの日常生活でも広く使われている広義の概念ではあるが、事典的意味としては、「人間の集団(種族、国家、国家群)相互間に武力衝突が起きていない状態」と定義される。ノルウェーの平和学者ヨハン・ガルトゥング(Johan Galtung)は、このように直接的暴力が不在である状態を消極的平和、暴力の発生する構造が不在である状態を積極的平和と規定している。ガルトゥングによる積極的平和の概念には、政治的抑圧や経済的搾取、社会的差別に因る反平和的状况や社会的構造など広義的平和概念まで言及されているが、本稿で平和や平和運動について言及する際は、事典的意味の内容に限定して述べることにする。

事典的意味としての平和の概念から見ると、平和運動は「人間の集団間の武力衝突が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制御と統制、さらに武力衝突の可能性をなくすための一連の活動」と定義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その方法に関連しても異なる方向が存在するのだが、一つは、力を通じた平和である。ほとんどの国が目指すあり方でもあり、私たちの社会において一般的に通用している論理でもある。しかし、力を通じた平和によって私たちの社会がより平和になりは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歴史的経験からすでに確認されており、相手よりも大きな力を持つための各国家権力の努力が、世界をもっと大きな戦争と危険に追い込んでい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これに対し、相互尊重に基づいた対話と妥協、非暴力的な方法によって平和な状態を追求しようとする方向に関わる努力が存在する。必然的に、国家の安全保障政策に批判的にならざるを得ない立場であり、あらゆる弾圧の対象とされることを引き受け、多くの国民から発せられるナイーブだとか理想論だという非難も甘受しながらも、このような平和運動は進展されてきたのであり、現在でも多くの反平和的な状況が繰り返される現場の中で進行している。それは、以下に述べる平和運動の内容でもある。

3. 韓国の平和運動の特徴と現況

韓国において平和運動という名で市民社会陣営の活動が展開しはじめたのは、1990年代の初めから中盤頃だと確認される。軍事的緊張の高い状態が維持され、戦争の危機が常に存在する社会で、このように平和運動の始まりが立ち遅れることになった主たる原因は、朝鮮戦争の未終息と分断という朝鮮半島の特殊性に起因する。南北で合計500万人以上の軍人と民間人が命を失ったり負傷したり行方不明になった3年間の戦争で、南と北は和解することのできない敵同士と規定されたのであり、終息なき戦争の延長状態としての分断の現実、安保という名の下で推進される国家レベルの政策に対して異議を唱える社会現象を許しはしなかった。長い間、韓国社会を支配していた権威主義的国家権力は、北朝鮮という絶対的な敵の脅威を時折適切に活用しながら

市民社会を抑圧し、このような分断状況を自らの権力の維持と強化のための主要な題材として活用した。1980年代の民主化闘争は、社会全般に及ぶ民主化とともに、これら一方的で強圧的な国家の安全保障政策にも一定の破裂口を開けることで、国の安保政策とは違った声を出せるような最低限の社会環境が形成された。

韓国での平和運動は、分断という朝鮮半島の特殊性と切り離しては説明し難い内容を含んでいる。その点、平和運動の一つの領域と見られる統一運動が先に始まったのは、必然的な過程であったとも言える。1980年代の後半に、当時の韓国社会運動の主要な力量を担っていた学生運動組織が統一運動の前面に立ち、文益煥(ムン・イクファン)牧師など宗教界や在野の主要人物らが主導的に乗り出すことで本格化した。国家保安法が威勢を張っていた状況下で、統一運動は過酷な弾圧の対象になったりもしたが、北朝鮮に対する太陽政策を打ち出し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府に入ると、統一運動は政府レベルの運動へと拡張されていった。2000年の南北首脳会談と6・15共同宣言、そして2007年に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府の10・4宣言へと続き、統一運動は重要な成果を目前に控えていたが、2008年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続く朴槿恵(パク・クネ)政府の登場により、韓国は再び反北的な安保政策へ回帰してしまった。その10年余りの間、南北関係は破綻し、統一運動も大幅に萎縮した。最近、北朝鮮の平昌オリンピックへの参加をきっかけに、北朝鮮が南北首脳会談を提案し、文在寅政府が対北朝鮮特使を派遣するなど、南北関係は急速に進展している。以後、政府レベルでの南北関係の進展に応じて、統一運動もまた活発になり得るという展望も出てはいるが、朝鮮半島の非核化問題をめぐる朝米間の葛藤と対立がどのように進むかが重要なファクターとして残っている。関連内容は、後述することにする。

統一運動が展開される過程で、平和という大きな枠組みでは統一運動とつながっているものの、統一を運動の主たる目標としては設定していないという点で統一運動とは区別される、一連の平和運動が胎動し取り組まれた。代表的には、2000年代初めのF-15K戦闘機の導入反対運動やイラク戦への派兵反対運動、2000年代半ばの平沢(ピョンテク)米軍基地拡張反対運動、そして今も進行中の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反対運動などを例として挙げるができる。F-15Kの導入反対運動は、導入の過程で、米国からの外圧や不正、性能上の欠陥や経済コストの問題などが大衆的に問題提起されたが、北朝鮮に対する攻撃的兵器を導入することが朝鮮半島の平和を脅かすということに注目したという点で、統一運動とは区別される平和運動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平沢米軍基地拡張反対運動は、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と呼ばれていた米国の軍事戦略が、韓国を東北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前進基地及び拠点基地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になり、周辺国との軍事的葛藤を深める要素になる点に注目したことで、統一運動とは区別される側面があった。イラク戦への派兵反対運動は、朝鮮半島の領域以外の事柄に対して、韓国の平和運動が関心を持って行動したケースだった。米国が展開する名分なき戦争に韓国軍が動員されることに反対というのが主な理由だったが、当時、朝鮮半島第2次核危機の局面で、派兵を通じた韓米同盟の強化により北の核問題を解決すると主張した盧武鉉政府への反論内容も含まれていたという点で、韓国

内の状況との関連性も存在していた。済州海軍基地反対運動は、北への対応能力の強化と大洋海軍の建設という目的を持った政府と、海軍の無分別な軍事力建設政策が、朝鮮半島周辺の軍事的対立を深めることになることになると反対した運動だったが、これはより複合的な要素を含んでいた。特に、推進する過程で地域住民の意思を無視して強行された非民主性が重要な問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建設の過程で発生した環境破壊という要因が問題提起の対象となった。その他、2000年代初めに、米軍の装甲車に二人の女子中学生が轢き殺された事件に触発された大規模なろうそくデモは、不平等な韓米関係に対する国民的抵抗であったが、従属的な韓米同盟に対する問題提起だったという点で、平和運動と見ることができる。2000年代半ばに、韓米間の協議により在韓米軍基地が返還される過程で確認された、基地の環境汚染問題に注目した一連の対応活動も、市民の平和的生存権の保障という側面に注目しているが、駐屯軍の地位協定における不平等な要素への問題提起も含まれていたため、平和運動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韓国の平和運動は、統一運動との関連性を持ちつつも、安保政策の非民主性に対する抵抗、市民の平和的生存権、環境問題など、既存の統一運動の中では提起されなかった諸問題を取り入れながら拡張される様相を示している。

北の核問題は、反核という平和運動の要素と、朝鮮半島の非核化及び平和体制を議題とする統一運動の要素が複合的に作動する問題であり、現在の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にかかわる最大の懸案でもある。関連する過程を振り返ると、1990年代初頭にまでさかのぼる北朝鮮の核武力(核兵器とその運搬体である弾道ミサイル)の開発問題は、直接の当事者である米朝と韓国、そして利害当事国である中国、ロシア、日本との間で、交渉と破局が繰り返されながら、朝鮮半島での戦争の危機の根本的な原因要素として存在してきた。1993年に北朝鮮の寧辺(ヨンピョン)の核施設に対する核査察問題により浮上した危機(北朝鮮1次核危機)は、1994年に軽水炉原子力発電所支援と重油支援を中心とする米朝間のジュネーブ合意で封じられたが、2001年、ブッシュ政権は北朝鮮を「悪の枢軸」と規定し、このジュネーブ合意を一方的に破棄した。これに対し北朝鮮は、2002年のジュネーブ合意以後、北朝鮮の核の凍結状態を監視してきたIAEA(国際原子力機関)の査察団を追放し、続けて2003年には核拡散防止条約(NPT)からの脱退を宣言した(2次核危機)。北の核をめぐる米朝間の対決が激しくなると、中国の仲裁によって南北と米国、中国、ロシア、日本が参加する6者協議が開始され、2005年9月、米国による北朝鮮体制の保障と、北朝鮮による核放棄を規定した9・19共同声明で解決の糸口が見つかるかと思いきや、内容に合意した声明のインクが乾きもしないうちに、米国は、北朝鮮が違法な資金洗浄(マネー・ロンダリング)をしているとしたBDA(バンコ・デルタ・アジア)事件を提起した。そして、北朝鮮の口座を凍結する措置が取られたことによって、共同声明は実質的に破棄されてしまった。以後、北朝鮮は2006年10月に1次核実験を行い、本格的に核武力開発の道に入った。

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南北と米国を中心とした長い駆け引きが続いている間、韓国の統一運動と平和運動は、基本的には軍事的緊張を緩和させ、相互の対話と妥協を通じた問題解決を促し続け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しかし、北朝鮮や朝鮮半島非核化に対する態度においては、運動の中で一定の違いが露呈した。米朝の間で進められた交渉の議題として、北による核の放棄と、それに相応する米国の対北朝鮮敵対政策放棄と米朝国交正常化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うちは大きな意見の相違がなかったのだが、2012年に北が核武力の建設を憲法に明示し、続いて2013年には、核と経済の並進路線を国家の戦略的目標として設定するとともに、核は交渉の対象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示すことになることになると、韓国の運動勢力においても立場の変化が生じたのである。反核の視点から、米朝間の交渉の議題に朝鮮半島の非核化が含まれるべきだとする見解と、朝鮮半島の非核化とともに全世界の非核化も同時に議論されるべきだという見解があった。前者は、朝鮮半島の非核化と米朝国交正常化を通じて朝鮮半島に平和体制を構築し、それを踏み台に統一へ進むべきだという主張に基づいている。後者の場合は、経路の側面では大きな相違はないが、朝鮮半島の非核化、つまり北朝鮮だけの核の放棄は不公平であり、北朝鮮による核の放棄の後に、米国による対北朝鮮敵対政策の放棄が続く保障はないという認識に基づいていたように見える。このような立場の違いは、北の核開発や米国の対北敵対政策にかかわる一連の連帯活動の中で論争の対象になることもあれば、場合によっては、意見調整がつかず集会や記者会見が別々に開かれる要因になることもあった。最近、文在寅政府の対北特使を通じて、北側によって、朝鮮半島の非核化を米朝対話の議題として議論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立場が示されたことにより、このような意見の相違は調整可能になってくるだろうと思われる。

4. 韓国の平和運動の課題

以上で、韓国の平和運動の特徴と現状を概略的に考察してみた。先に触れたように、韓国での平和運動は、分断という朝鮮半島の特殊性に起因し、平和運動の一つの領域といえる統一運動が先に始まった後、平和運動の多様な領域へと広がるといった様相を示した。以下では、統一運動との関連性の中で、韓国の平和運動の課題を述べてみたい。以下では、統一運動との関連性の中での韓国平和運動の課題について言及したい。

1) 韓米同盟の再調整及び克服

韓国の平和運動の課題に関連してまず提起したいのは、韓米同盟の再調整、または克服の問題である。最近、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状況からも確認されている通り、米国は朝鮮半島における戦争危機の主要な主体である。朝鮮戦争を契機に形成された韓米間の従属的軍事同盟は、南北間の和解と統一の雰囲気造成されるたびに、それを妨害する役割を持続してきた。1991年末、南と北が和解と協力、相互不可侵を主要な内容とする南北基本合意書に合意したが、その翌年に米国は北朝鮮の核問題を持ち

出して、朝鮮半島を戦争局面へと追い込んだ。2000年に、南北首脳会談が初めて実現し南北関係が急進展を見せると、翌2001年、ブッシュ政権は北朝鮮を「悪の枢軸」と規定し、大々的な対北敵対政策と孤立・圧迫政策を強行して、南北関係を破綻させた。現在の状況を見てみよう。トランプ政府は就任直後から、アメリカ優先主義と力による平和を主張し、北朝鮮に対する経済的・軍事的制裁と圧迫に没頭した。昨年9月には、戦略爆撃機を動員して北朝鮮側の国際空域まで浸透する武力威嚇を展開しており、北朝鮮がこれに軍事的に対応していたとすれば、朝鮮半島で全面戦が発生する恐れもあった危険極まりない行為だった。そのような過程を通して、北朝鮮は結局、核武力の完成を宣言する段階にまで至った。最近、北が非核化の意思を表明し、米国との対話に乗り出す意志を示したことに対し、今後の米国の反応を見なければならぬだろうが、南北間の対話が行われている間も、米国は北朝鮮に対して「鼻血(ブラッディ・ノーズ)作戦」と呼ばれる制限的打撃戦略を検討し、北との全面戦を想定した秘密軍事演習を進めるなど、南北対話に水を差す行為を続けた。平昌オリンピック開幕式に米国側代表として参加した副大統領は、哨戒艦・天安(チョナン)号を訪ね脱北者たちと共に北朝鮮への非難に熱中し、韓国が用意した北との席を退け出ていってしまった。

長い分断の過程で、北朝鮮に問題がなかったと話しているのではない。北も反平和的な軍事行動と反統一的な行動を見せた。その点では、南側政府も同様である。南と北が互いの脅威を内政と政権維持の手段として活用した例は数え切れないほど多い。問題は、米国が南北とともに、朝鮮半島の平和にとって主要なアクターとして作動し、問題をより複雑で難しく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しかも米国は、軍事領域において、歴史的にも構造的にも、韓国に対して優位の地位が保障されている。戦時における韓国軍の指揮権を米軍が有しているという歪んだ構造は、単に指揮権を誰が持つのかという問題だけ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軍隊に対する指揮の問題は、軍をどのように構成し、軍事戦略をどう策定するのかに関わるからである。北との交渉で問題になるだろうと予想されていた韓米合同軍事演習キー・リゾルブ(Key Resolve)の主な内容は、有事の際、朝鮮半島に投入される米軍事力の展開と、それを韓国軍がどのように支援するのかを熟達するものである。この軍事演習は、韓米連合司令部が策定する作戦計画に合わせて行われる。米国が韓国の軍事戦略樹立の主導権を握っ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では、韓国が北朝鮮との関係の中で主導的に問題を紐解くことができず、「運転席」に長く座っていることも難しい。そのような点で、文在寅政府が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を早めるとした方針は、肯定的なものとして評価できる。韓国の国防費が北朝鮮の国防費の8倍を超えるような状況を踏まえ、これ以上、時期尚早だとか、準備が足りないという話は出てこないことを願う(米務省が発行した2016年の世界の軍備レポートによると、2004年から2014年までの11年間、韓国の国防費は平均301億ドルであり、北朝鮮の国防費は35億ドルで、韓国が約8.5倍の国防費を支出していると表れている)。

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とともに、韓米同盟の色々な不平等問題も調整を経て克服さ

れるべきである。在韓米軍の治外法権的地位を保障する韓米間の在韓米軍地位協定(SOFA)の改正が行われるべきで、龍山(ヨンサン)米軍基地の汚染のケースのように、返還される米軍基地の環境汚染問題に対して持続的に問題提起と責任者処罰、帰国防止策の要求運動に取り組まねばならない。今年、韓米間で進められることになる防衛費の分担金交渉で、韓国が支払う防衛費分担金の大幅な縮小や廃止を求める運動も重要な案件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2) 北朝鮮との民間交流の強化

金大中、盧武鉉政府の時期に活性化されていた南北間の民間交流は、2008年の金剛山での6・15共同行事以降は事実上断絶し、2016年には南北経済協力の象徴であった開城(ケソン)工業団地まで閉鎖されてしまった。現在進んでいる南北間の対話の様子を見守る必要があるが、文在寅政府は発足後の初期から北との民間交流を活性化させたいとの意志を示している。3代世襲や核開発などにより、北朝鮮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が大衆的に広がってはいるが、南北の民間交流は相互の敵対心を和らげ、以後の相互間の平和的關係を形成する上で不可欠な要素である。以前の政府での経験に基づき、南北朝鮮の政治・軍事的状況の変化にも持続性を担保するための法的・制度的メカニズムづくりを伴った南北の民間交流運動が展開されるべきである。

3) 平和軍縮運動

南北關係の進展の度合いによって波及力は変わってくるだろうが、平和に向けた軍縮運動も主要な課題である。文在寅政府は北朝鮮の脅威と、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などへの対応を理由に、以前の政権より大幅な国防費の増額を進めている。そして、軍事戦力の構成も、北に対する先制攻撃(Kill Chain)や韓国型大量反撃報復作戦(KMPR)など攻勢的兵器システムの構築に重きを置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現象は、かつての盧武鉉政府にも現れた現象である。安保に弱いと保守層から認識されていることを意識して、軍事力強化を通じた自主国防を追求する過程で軍備増額が伴われた。しかし、このような軍備増額によっては、福祉など市民の暮らしに直結する社会的インフラ建設に投入されるべき政府予算の浪費がもたらされただけで、平和の増進には失敗した。適切な軍事費に対する市民社会レベルでの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り、南北の軍備縮小を促す運動を展開せねばならない。

4) 兵器導入と防衛産業での不正に対する監視と統制

防衛産業関連の不正または兵器導入関連の不正(厳密に言えば、両者は区別できる。防衛産業の不正は、軍が必要とする物品や武器の生産・納品過程で発生するリベートや賄賂、特惠などを意味し、武器導入での不正は、国防政策や軍事戦略が策定される過程で特定の武器が主要に検討されるという点で所要段階での不正だといえる。代表的に、F-15K戦闘機の導入不正などを挙げることはできる)は、国民のほとんどが問

題の深刻性を認めている、韓国社会の代表的な積弊の一つであり、その不正の規模も場合によっては天文学的な金額にのぼる。文在寅政府の下で一定の成果を出し得る領域ではあるが、国防政策や軍事戦略の策定過程で起こってくる武器導入不正については、外国産の導入兵器のほとんどが米国の軍需メーカーからのものであり、容易ではない領域だ。そういった点で、国防政策の策定過程で議論される兵器システムの所要部分関連領域に対する市民社会からの監視と介入が必要である。

5) 平和運動の専門性強化と政府政策への関与

前述した同盟の再調整や軍縮、軍事力建設に関連する一連の兵器システム導入の問題は、政府レベルでの国防政策や軍事戦略の変化を伴う。現在、国防部から提起されている脅威の分析と軍事力への評価、それに伴う適切な軍事力の建設、それに伴うコストの判断について、客観的に検証できるような機構が存在しない。李明博政府当時、武器所要検証委員会が知識經濟部の中に設置されたことがあるが、後に国防部に移管され形骸化されてしまった。今後、国防部の外部レベルで再構成される必要があり、そこに市民社会からの専門委員の参加が保障されるべきである。このことは、軍に対する文民統制という側面からも重要な意味を持つ。平和運動がこの構造の中で一定の役割を果たせ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国防政策と軍事戦略に関連する領域で専門的な認識を備えた人材プールをつくる必要があり、関連市民社会団体もまた専門性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軍事基地周辺の市民との連帯

軍事基地と軍事訓練場は、軍隊と市民の生活が出会う接点となるので、韓国社会で民と軍がどのように相互作用し、軍隊が市民の生活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を確認できる領域である。これまでの平和運動は、主として、米軍基地の建設や移転に関する部分に集中されたが、これからは韓国軍の基地や訓練場の領域にまで広げることが必要である。最近、水原(スウォン)や光州(クァンジュ)、大邱(テグ)などで、軍の空港の移転にまつわる葛藤が深まっている。そこでは政府と軍当局の一方的な政策決定と強行が、葛藤を引き起こす主な理由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軍事基地の移転や建設は、近隣市民の生活と生存に直接影響を及ぼすものであり、その必要性や妥当性に関する綿密な検討が必要である。以後、平和運動が注目すべき領域と判断される。

7) 平和教育の拡充と対決的安保言説の克服

冒頭で述べたように、韓国社会では長い間、反北的な内容をメインとする国家主義的安保の言説が支配的であったと言え、それは今でも強力な力をもって作動している。その克服のためには、市民の間で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中心とする認識が広げ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った点で、市民社会団体が関連内容の講座や教育プログ

ラムを継続的に進める必要がある。また、朝鮮戦争を再評価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現在の対決的安保言説の根が朝鮮戦争にあることを想起すれば、その重要性を計り知ることができる。特に、国防部の主導で設立されたソウル龍山所在の戦争記念館には、依然として冷戦的で反北的な記録が溢れており、歴史的な事実の歪曲もざらにある。何よりも、展示物の主な意図が「力を通じた平和」というメッセージを含んでいる。毎年200万人を超える来館者が戦争記念館を訪ねており、その半分以上は、小中高の学生だという点で問題は深刻である。この社会の中で、青少年に反平和的な認識を形成させる主要な空間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ある。戦争記念館の展示のあり方に対する市民社会からの問題提起と是正が必要だ。また、朝鮮戦争当時の軍隊による民間人虐殺事件に関する紀行事業も重要な意味を持つ。戦争の危険性ととともに、軍隊という組織の持つ両面性と危険性を認識する過程は、強い軍隊が平和を保障するのだという安保言説に対して、問題意識を芽生えさせ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8) 国際平和連帯の強化

北朝鮮の核問題を契機に、朝鮮半島の平和問題は国際的な懸案へとその意味が拡大した。北の核問題に加え、日本の軍事力拡大と日米韓3国の軍事同盟体制の構築などに関する問題は、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軍事的危機を拡大し深化させる主要な要素である。関連して、韓国と日本などの国際平和運動諸団体との持続的な連帯や対応も重要な課題である。日韓平和連帯に関連する詳細については、次の節で述べることにする。

5. 韓日平和連帯の重要性

1) 日本の軍事力拡張と韓米日三角軍事同盟をめぐる状況

北の核をめぐる米朝間の政治・軍事的葛藤と対立が朝鮮半島の戦争危機の基本的要因を構成するというなら、日本の安倍政府が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改正と安保法制を通じて自衛隊の軍事力を拡大し、さらに米国が継続的に韓米日軍事同盟体制の構築を試みていることは、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平和にとってもう一つの脅威である。

日本の安倍政府は最近、敵の基地への攻撃能力の構築を念頭に置いた長距離巡航ミサイルの開発に着手しており、米国のステルス戦闘機F-35数十台を追加購入する案も検討している。また日本は、米国との合同軍事演習にも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が、昨年9月に米国の戦略爆撃機と日本航空自衛隊の戦闘機が東シナ海上空で実施した合同演習は、中国の大規模な海上軍事演習の誘発にもつながった。安倍政府は、このような日本の軍事力拡大の主要な根拠として、北朝鮮の核と弾道ミサイルの脅威を主に活用している。安倍政府は今年の初め補正予算により、2,345億円(約2兆2千億ウォン)規模の防衛費の追加支出を決定したのだが、その主な理由として、北朝鮮の弾道ミサ

イルへの対応のための費用だ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た(これにより、2017年に日本が支出した防衛費は計5兆3,596億円＝約52兆5千億ウォンに達した)。また、昨年末、安倍政府は長崎県で北朝鮮のミサイル攻撃を想定した避難訓練を実施したのだが、これは武力攻撃事態を想定した初めての訓練と評価された。長崎が第2次大戦当時、米国が投下した原爆の被害地であったことを思い起こすと、安倍政府が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を自国でどのように活用しているのか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

米国主導の韓米日三角軍事同盟は、2016年末の日韓軍事情報保護協定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の締結から、その端緒が設けられた。韓米間、そして日米間の相互防衛条約や軍需支援協定と軍事秘密保護協定など、軍事同盟の制度的メカニズムが設けられていた状態で締結された日韓の軍事情報保護協定は、韓米日という三角軍事同盟の最後の一つの軸を完成させるための信号弾のようなものだった。そして、昨年行われた在韓米軍のサード(THAAD)の朝鮮半島への配備は、韓米日三角軍事同盟の本格的な稼動を意味した。これは米国が推進する韓米日三角軍事同盟の主要な媒介が、日米を中心とす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MD)の構築であり、在韓米軍サードの朝鮮半島への配備は、韓国が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に参加するということはもちろん、2000年代の初頭からすでに構築されてきた日米MDに実質的に組み入れられるという結果を意味したからである。

ところがここで、問題が発生した。昨年10月31日にあった韓中間のサード合意(公式名称は「韓中関係改善に関連する両国間協議の結果」)は、韓米日の三角軍事同盟に対する韓国の不参加という意味を含んでいたからである。周知の通り、中国は在韓米軍サードの朝鮮半島への配置を自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重大な脅威と見なして、決然と反対の立場を表明しながら、実際に経済・軍事的な方法で韓国に致命的な圧力を行使した。その状況を受け、韓国政府は中国との関係改善や北朝鮮の核問題に中国の政治力が必要だという判断の下、中国との交渉に乗り出し、次のような合意に至った。

〈サードに関する韓中合意の主要内容〉

- ・ 韓国は、サード問題に対する中国の立場と憂慮を認識し、韓国に配備されたサードが第三国を標的としないことで、中国の戦略的な利益を損なわないと表明する。中国は、サード配備反対を改めて明言する。
- ・ 同時に、中国は、韓国が表明した立場に留意しつつ、関連する問題が適切に処理されることを希望し、双方は軍事当局間の協議を通してサード問題を解決してゆく。
- ・ 中国は、米国のMD構築、サードの追加配備、韓米日の軍事協力などに対する憂慮を表明し、韓国はそれまで政府として明らかにしてきた立場を改めて説明した。
- ・ 両国は、韓中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を発展させ、全ての分野の交流協力を正常な発展軌道へと早期に戻していく。

多少は外交的な修辭が駆使されたこの合意文の中に書かれた、中国が注目した「韓国が表明した立場」とは、韓中間の合意の前日に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が国会で明らかにした内容を意味する。いわゆる「3NO原則」と呼ばれるこの立場は、サードの追加配備を行わず、米国のMDに参加せず、韓米日3国間の安保協力が軍事同盟には発展しないとされた内容を指す。

クリントン政府当時、米国国防省アジア担当選任補佐官を務め、ブッシュ政権でも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全保障会議アジア選任局長を務めたマイケル・グリーン(現在、米国の安全保障関連のシンクタンクである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副所長)は、クリントン政府当時から米国が韓米日三角軍事同盟の推進を本格化してきたと言う。そのような点から見ると、米国は、日韓の軍事情報保護協定を通じて韓米日三角軍事同盟の制度化が進展し、在韓米軍サードの朝鮮半島配備によってその稼動が本格化される時点で、障害物に遭ったことになる。韓中サード合意がなされるや否や、ハーバート・マクマスター・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保補佐官が「康京和と外交部長官の発言が確定的なものとは捉えていない」とし、「韓国がそれら三つの領域で主権を放棄するかについては懐疑的」だとして、韓中合意で明らかにした韓国政府の立場を主権放棄の行為と規定した。今後、3NO原則にかかわる韓国政府の履行が容易ではないだろうことを示唆する部分である。そうではあるとしても、韓中サード合意は、米国が向かおうとする韓米同盟の拡大に対し、一種の「制限線(limit line)」を設定したものと見ることができる。

韓中間のサード合意により、サード問題は一旦は水面下へ沈んだように見える。しかし、依然として、サードは朝鮮半島におけるその軍事的有効性が立証されていないまま、周辺国の軍備増額や軍事的葛藤の要素として残っている。韓中サード合意の直後である昨年12月、中国とロシアは合同ミサイル迎撃演習を実施したのだが、この時期は、韓米日が韓国と日本周辺の海域でミサイル警報演習を実施していた時と一致したため、事実上、在韓米軍サードと日本を狙ったものと解釈された。また、サード問題は、前政府によって一方的に推進されたサード配備の決定を、文在寅政府が正すことのないまま追認したことで、民主主義への重大な毀損をもたらし、星州(ソンジユ)韶成(ソソン)里の住民の平和的生存権を侵害している。今もなお星州の韶成里では、住民と平和活動家による抵抗が続いている。平和運動が引き続きサード問題に連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そのためでもある。

2) 韓日平和連帯の現況と課題

東北アジアに新冷戦をもたらすだろうと予想されていた韓米日三角軍事同盟と北朝鮮核問題の進展に、重大な変化が感知されている。現在、日韓間の平和連帯はこれまで以上に重要な意味を持つ。状況把握に限りがあるため日韓平和連帯の多様な展開をすべて取り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が、いくつか主要な事例を挙げてみたい。

韓国基地平和ネットワークは、韓国内の米軍基地建設と拡張の過程で発生する反平和的・反人権的・反環境的な諸問題に対するモニタリングと実践的対応を模索するために構成されたネットワークである。韓国基地平和ネットワークは、2007年に日本の本土と沖縄の米軍基地の現状に関するフィールドワークを通じて、日本と沖縄の平和活動家たちの連帯をはじめた。2008年、東アジアの米軍基地の反平和性と環境汚染問題をテーマとするシンポジウムを沖縄で開催して以来、これまで毎年、日本、沖縄、韓国で交互に関連内容の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いる。2009年からは、毎年5月に開催される沖縄5・15平和大行進にも、韓国参加団を組織して参加してきた。

韓国の進歩的な弁護士団体である「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の集い」（民弁）の米軍問題研究委員会は、2007年から日本の自由法曹団沖縄支部と、毎年、平和交流会を開催している。この交流会で主に扱っているテーマは、東北アジアでの軍事的緊張の解消と平和の定着、米軍基地と米軍による住民被害と対策に関する内容である。弁護士が中心となった交流会であるだけに、韓国と日本の駐屯国地位協定の法的問題についての議論も活発に行われている。最初は日韓の弁護士だけの集まりという性格が強かったが、最近では平和活動家たちも一緒に参加する形へと発展してきた。

日韓だけの連帯ではないが、韓国と日本の状況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平和連帯も進められている。東アジア平和国際会議や、武力紛争の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GPPAC) 東北アジア委員会などがそうである。東アジア平和国際会議は、2015年に韓国で「No Wars, No Nukes」をスローガンに、朝鮮半島での戦争の終結と東アジアでの核セキュリティ、日本の平和憲法守護が、東アジアの平和へと向かう第一歩であるというテーマで行われた。GPPACは2014年に「核兵器のない東北アジアを構築するための要素」というテーマでカンファレンスを開催した。韓国の参与連帯や日本のピースボートなどが主要な参加主体である。

平和の海 島の連帯は、韓国の江汀(カンジョン)、台湾、沖縄、石垣など、軍事基地と原子力発電所が存在、或いは建設中である地域の現状を共有し、代案を模索する平和活動家たちのネットワークである。2014年に韓国済州島の江汀村で初の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2015年には沖縄、2016年には台湾、昨年は沖縄県の石垣島で行われた。

他にも、平和をテーマにした様々な日韓の交流とネットワークが存在し、進行中であらうと思われる。韓国基地平和ネットワークや民弁の米軍問題研究委員会、平和の海 島の連帯の場合、主としては韓国と日本と沖縄などの軍事基地の問題に注目し、GPPACは東北アジア及び東アジアの平和という大きな枠のテーマに注目していると思われる。すべて貴重な連帯活動であるが、フィールドワークや状況の共有、シンポジウムなどを主な内容とする毎年の行事を中心に進められている状況である。今後、各ネットワーク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通じて、日本の軍事化や朝鮮半島の戦争危機の状況、韓米日の三角軍事同盟など、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主要な安全保障や平和

問題の懸案に共同で対応する準備が整えら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5. 結び

以上、韓国の平和運動の現状と課題、そして日韓平和連帯の状況について垣間見てきた。韓国の平和運動についてはまだ体系的に整理された資料もなく、また、一部の事柄をめぐっては平和運動内の意見の相違も存在するため、整理には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今後の討論と議論を通じて修正・補完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韓国の平和運動の課題は、最近、韓国社会で色んな討論会やシンポジウムなどに提出された内容からピックアップして整理したものである。中には私の所属する団体で現在取り組んでいる事業も含まれている。課題として優先的に言及した韓米同盟の再調整と克服は、実は韓国社会の中では長い間、平和・統一運動の争点となっていたものであり、目新しい内容ではない。ただ、北朝鮮の核問題が新たな局面を迎えており、米国のトランプ政府が米国優先主義を掲げ、同盟国に対しても例外なく自国のエゴイズムを押し付けている状況下で、再び焦点を当てられ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の判断から主として取り上げた。

日韓平和連帯についても総合的にまとめられた資料が見当たらず、活動の中で取り組んだ内容や周りの平和活動家がかかわったいくつかの事例の概要を簡単にまとめてみたものだ。今後、韓日平和運動の連帯のために、より詳細な調査と整理が必要だろうと思われる。

序文と本文でも触れたが、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の軍事安保情勢が急変している。その変化が平和に向かってゆくのか、それとも対立と葛藤、戦争へと進んでゆくのかは、今のところ予断を許さない。しかし、どのような条件であっても平和の方向へと舵をしっかりと握っていること、それこそが平和活動家の任務ではないかと思う。厳しい条件の中で活動している韓国と日本の平和活動家たちが肩を組み合って平和へ向かう道のを共に歩めるよう願っている。

한일 시민평화선언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급격한 정세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래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불과 한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치질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지지하는 한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세계사적인 평화의 흐름 속에서 정작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을 쫓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국내외의 숭한 희생을 낳았던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는 「개헌」을 책동하고 있다.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양국 시민이 연대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고,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노력을 함께할 것을 서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관계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모든 협력을 다 한다. 대화의 여건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한미군사연습은 중지 내지는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과 북한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해 효율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2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화해 협력이 구체적 결과를 이루기 위해, 당사자인 남북한의 노력을 존중한다. 남북한은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 함께 휴전 상태를 진정한 평화협정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는, 핵공격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무력에 의한 평화」보다 나은 현실적 안전보장책이다. 원폭의 참화를 체험하고 평화헌법을 가지게 된 일본은 동아시아의 비핵 평화를 주도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일본의 시민은 평화헌법을 지켜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연대의 행동을 이어 나간다.

4 일본은 과거 아시아 침략전쟁이 가져온 수많은 살상과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해결만이 일본과 한반도의 화해,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

5. 오늘 한일시민평화회의의 성과를 계승하여 오는 4월 21일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13일

한반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평화시민회의 참가자 일동.

日韓市民の平和宣言

朝鮮半島を中心に、東北アジアの情勢が急激に変化している。

つい昨年未まで、朝鮮半島での戦争勃発の可能性は朝鮮戦争以来最高の水準にまで達し、朝鮮半島における戦争は直ちに周辺国の日本・中国・ロシアをはじめ全世界の災いへと転じ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た。

しかし、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金正恩労働党委員長の特使の韓国訪問からわずか一ヶ月の間に、南北首脳会談から米朝首脳会談の開催までが決定されるなど、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政治秩序に画期的な変化が起こっている。私たちは平和を支持する日韓の市民として、このことを大いに歓迎する。

このような世界史的な平和の流れの中で、日本の安倍政権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で米国に従い「戦争のできる国」へ転換し、アジア太平洋戦争によって国内外に数多の犠牲を生んだ教訓をもとに戦争放棄と戦力不保持をうたった平和憲法9条を廃棄する「改憲」を策動している。

私たちは、朝鮮半島から始まった平和の流れを引き継いで、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体制の構築を目指し、両国の市民が連携して、日本の平和憲法を守り、東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に向けた努力を共に傾けることを確認しあい、次のように宣言する。

1. 朝鮮半島の平和を恒久化し、東アジアの平和を構築するために、米国と北朝鮮は対話を通じた解決に真摯な努力を傾ける。当事国である韓国はもちろん、関係国である日本・中国・ロシアはあらゆる協力を尽くす。対話の条件づくりをより促進するために、韓米軍事演習については、中止ないしは段階的縮小を進める。朝鮮半島の非核化のために、韓国と北朝鮮、日本、米国、中国、ロシアによる6カ国協議の再開など、有効な方策について真剣に議論する。

2. 南北間の対話と和解・協力が具体的な成果を遂げられるよう、当事者である韓国と北朝鮮による努力を尊重する。南北朝鮮は休戦協定の調印国である米国・中国とともに休戦状態を真の平和協定体制へと発展させるために努力する。

3. 戦争放棄と戦力不保持をうたう日本の平和憲法9条は、核攻撃の報復を招きかねない「武力による平和」に優る現実的な安全保障策である。原爆の惨禍を体験し平和憲法を持つに至った日本には、東アジアの非核平和を主導する義務と使命がある。日本の市民は平和憲法を守るために、国内外での広範囲な連帯行動を続けてゆく。

4. 日本は、かつてのアジア侵略戦争がもたらした数多くの殺傷と被害に対する真の謝罪と解決こそが、日本と朝鮮半島の和解と東アジアの恒久的平和の実現へ進む道であることを認め、自ら問題解決に全力を尽くす。

5. 本日の日韓市民平和会議の成果を踏まえ、2018年4月21日、歴史的な南北・米朝首脳会談に先立ち、朝鮮半島内の戦争危機の終息と恒久的平和体制の構築を促すための「朝鮮半島平和大会」を開催する。

2018年3月13日

朝鮮半島平和と日本平和憲法守護のための日韓平和市民会議参加者一同